

발간등록번호

11-1380644-000103-01

가축질병 T0023462
현장방역지도 수첩

2007. 10.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난 '00, '0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03 ~ '04년에 이어 '06.11 ~ '07.3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준 질병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농가·관련단체·정부 등이 합심하여 강력한 방역조치로 조기종식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미 FTA 타결 등에 따른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우리 주변국에서는 해외악성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 필요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방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03년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신고조치로 발생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었듯이 질병 발생시 조기신고 및 질병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는 양축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질병발생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조치 능력배양을 위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긴급 방역조치 사항 등을 담은 『가축질병 현장방역지도 수첩』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주요 가축질병별로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에서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과 주요 가축전염병의 개요, 축종별 질병감별진단요령,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를 숙지하여 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방역으로 질병 전파를 막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7. 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장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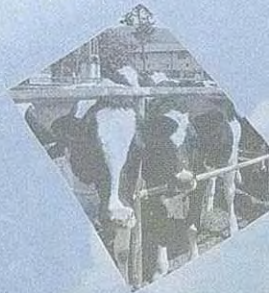
Contents

I.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 행동지침	7
1. 구제역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8
2. 구제역·HPAI 발생 시 긴급행동 체계도	11
3. 구제역·HPAI 발생 시 표준대응요령	12
4. HPAI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13
5. 소브루셀라병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16
6. 소브루셀라병 방역요령	20
7. 전염성해면상뇌증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21
8. 돼지열병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24
II. 주요 가축전염병 개요	29
1. 구제역	30
2. 조류인플루엔자	37
3. 브루셀라병	46
4. 전염성해면상뇌증	53
5. 돼지열병	59
III.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71
1. 소 질병 감별 진단 요령	72
2. 돼지 질병 감별 진단 요령	83
3. 조류 질병 감별 진단 요령	90

IV.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103
1.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104
2. 전염병 전파차단	106
가. 정액매개 전파가능 전염병	106
3. 소독실시	112
가. 소독제 성분별 적용대상 및 특징	116
나. 조류인플루엔자 적용가능 소독제의 국내 허가제품	117
다. 구제역 적용가능 소독제의 국내 허가제품	121
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126
5.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 요령	128
6. 황사 발생 시 농장의 방역관리	129
7. 가축별 예방접종 요령	130
※ 부록	135
1. 가축방역 관련 법규	136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136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49
2. 가축방역 관련 기관 연락처	163
가. 농림부 · 검역원 · 시도가축방역기관	163
나. 지방자치단체 주소록	168
다. 가축방역지원본부	178
라. 축산관련 단체	181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 행동지침





I. 주요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 행동지침

1. 구제역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 의심축 발견 시 신고 (p30, p135, p147 참조)

- 신고절차 : 의심축 발견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 구제역 임상증상 〉



유두에 백색의 수포, 수포 파열후의 가피 형성



돼지의 콧등에 생긴 수포

< 의심축 신고 >



관할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긴급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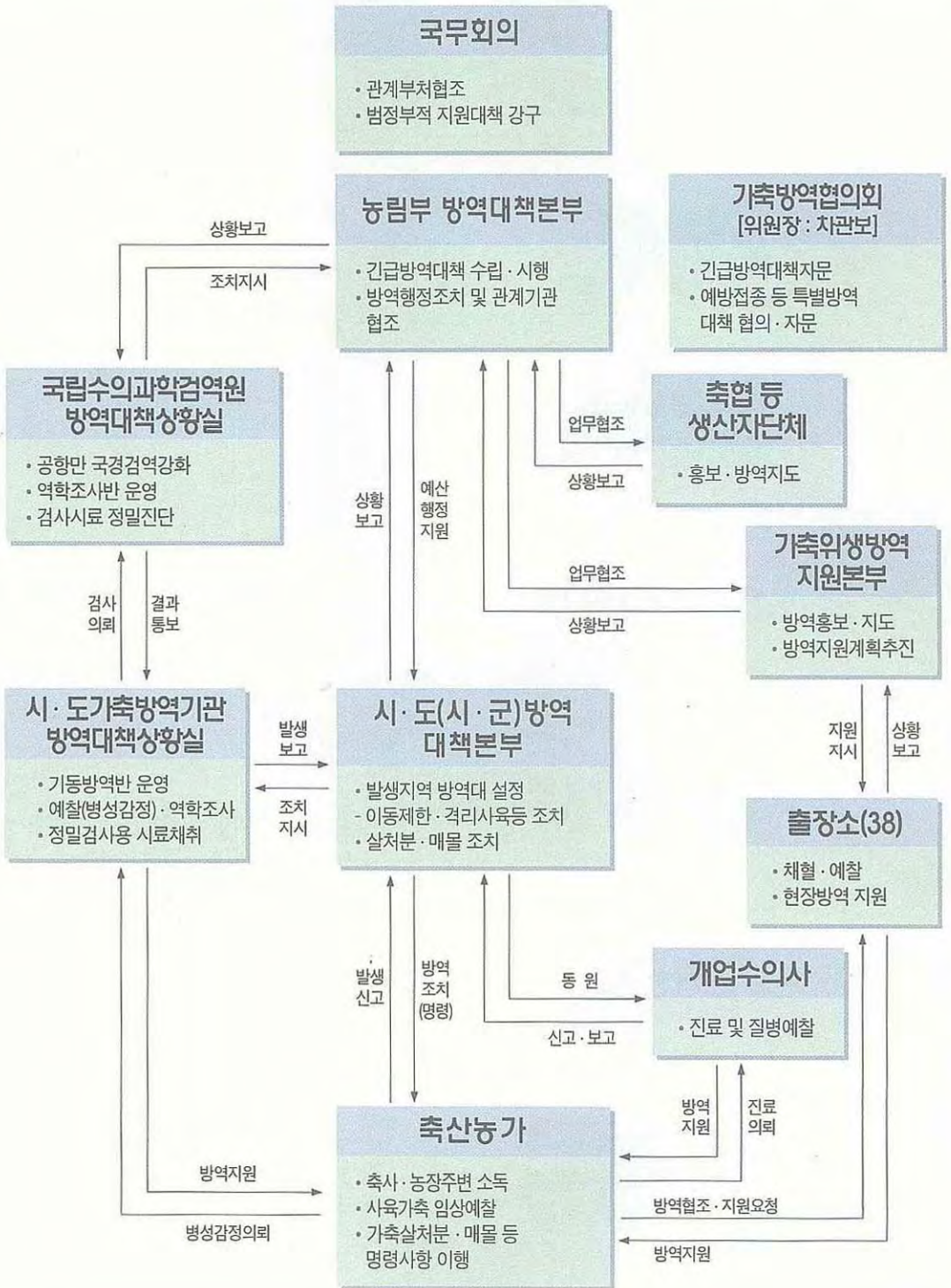
-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 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p140 참조)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p110 참조)
 - 동력분무기나 휴대용 분무기가 있으면 설치한다.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급적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p140 참조)
- 농장에 사람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소독을 실시한다. (p140 참조)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사료, 퇴비, 분변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방충, 방서시설을 확인·설치하고 배수구를 폐쇄한다.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인계한 후 가능한 한 시료 채취 등에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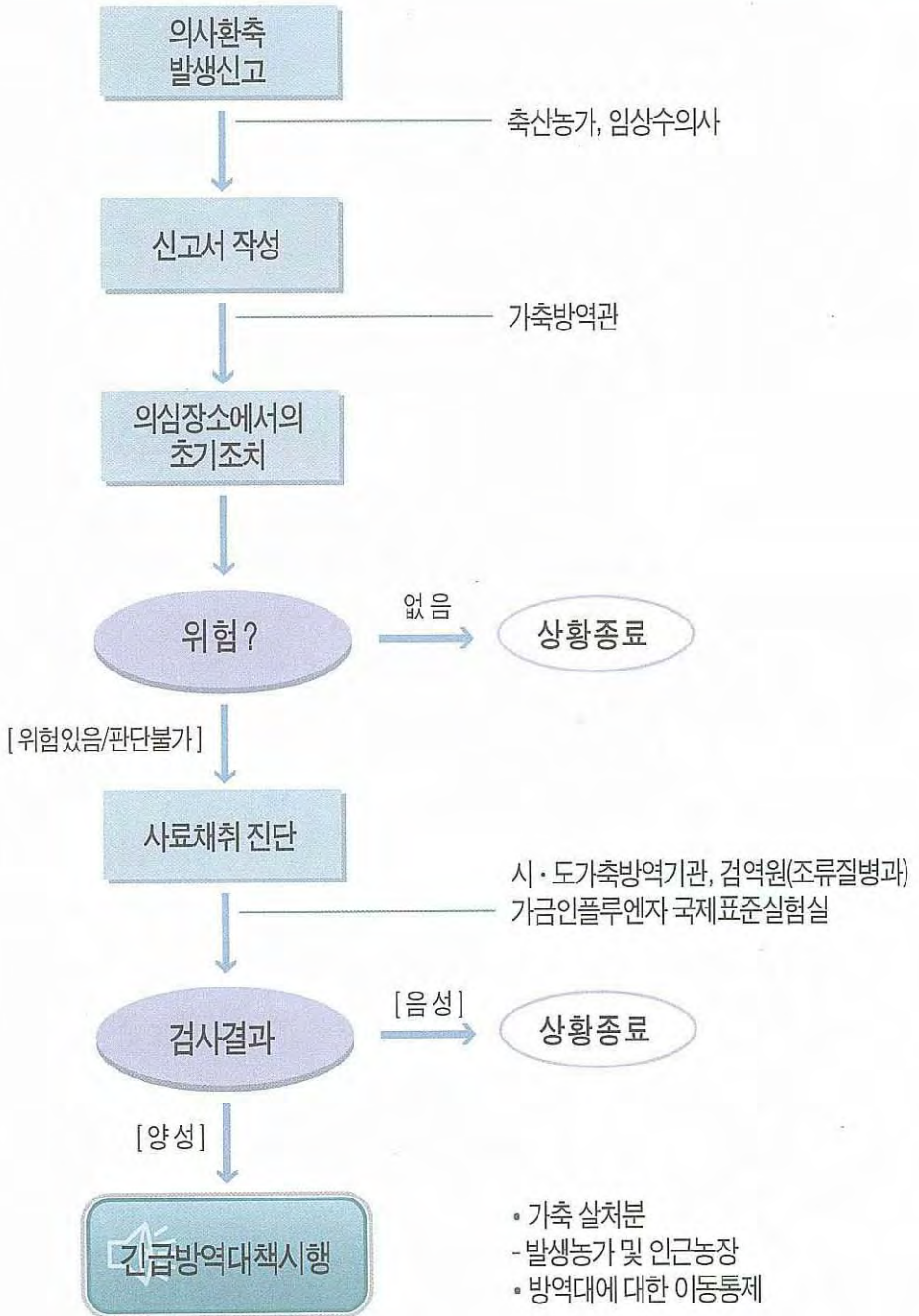
사후조치

- 농장을 떠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 가방, 차량 등 기타 휴대한 기구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군 후 진료를 중단하고 귀가한다.
-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 발을 씻고 목욕을 한 후에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 검사결과가 구제역이 아니라고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는다.
- 구제역으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2. 구제역·HPAI 발생 시 긴급행동 체계도



3. 구제역 · HPAI 발생 시 표준대응요령



4.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 의심축 발견 시 신고

(p38, p135, p147 참조)

- 신고절차 : 의심축 발견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



안면부 심한 부종, 괴사



닭벼슬 출혈, 다발성 괴사



닭다리 정맥이 청색증



발병초기 침울, 줄음

< 의심축 신고 >



관할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

긴급 조치사항

-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 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p140 참조)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p110 참조)
 - 동력분무기나 휴대용분무기가 있으면 설치한다.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에 사람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소독을 실시한다.(p140 참조)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알, 사료, 퇴비, 계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배수구를 폐쇄한다.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인계한 후 가능한 한 시료 채취 등에 협조한다.

■ 사후조치

- 농장을 떠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가방, 차량 등 기타 휴대한 기구·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이나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군 후 진료를 중단하고 귀가한다.
-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과 목욕을 실시한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는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을 사육자하는 사람 등과 만나지 않는다.
- 구제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최종 접촉일 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소브루셀라병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 의심축 발견 시 신고

(p48, p135, p147 참조)

- 신고절차 : 의심축 발견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 소브루셀라병 임상증상 〉



임신말기에 유·사산을 일으킴

〈 의심축 신고 〉



관할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긴급 조치사항

- 유산·조산 또는 사산을 한 소는 즉시 격리하고, 브루셀라병 검사를 의뢰한다.
- 유산한 장소와 유산 태아·태반, 후산물은 소독 후 소각 및 매몰 처리하도록 한다.(p144 참조)
- 농장주에게 반드시 손 및 의복 등을 소독하여 축주자신 및 동거소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 수의사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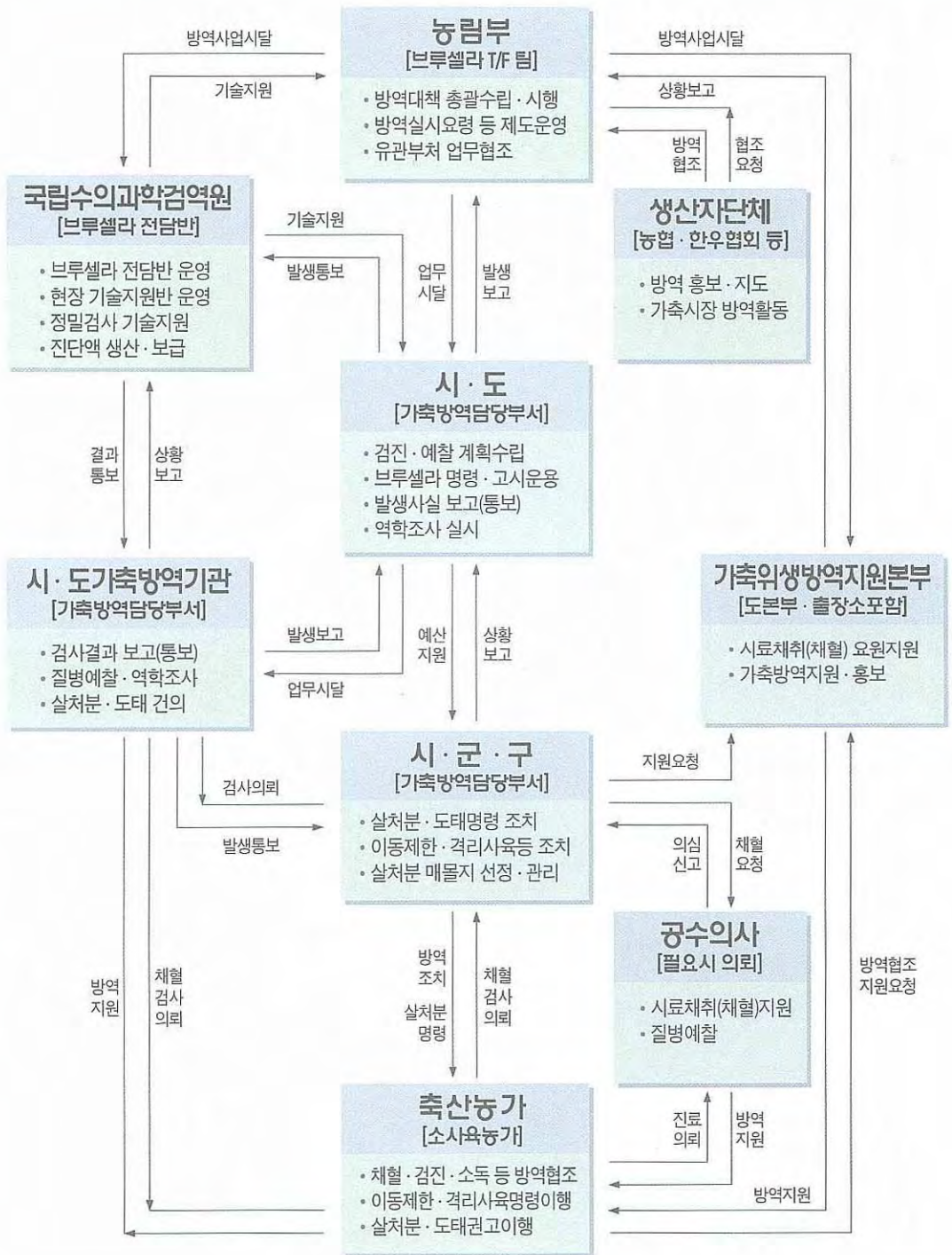
-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다루는 관련 수의사는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 태반, 생식기 분비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수의사는 개인 보호 장구(보호복, 보호안경, 보호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 중 피부가 베이거나 찰과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응급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작업에 사용한 기구 등은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멸균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용한 보호 장구를 즉시 세척·소독하고, 손·얼굴 등을 비누로 세척하고 샤워를 하도록 한다.

■ 브루셀라균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 임신축의 자궁 내에는 많은 양의 균이 존재하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가능한 개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궁을 개방할 때에는 소독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개체별로 장갑을 교체·사용한 후 폐기하고 기구는 소독한다.
- 검체를 채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검체수거용 기구의 외부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검체는 1차 수거용기(비닐 지퍼 백 등 외부와 차단이 가능한 용기)에 밀봉하여 담고, 라벨을 붙인 후 2차 수거용기(플라스틱 통 등 외부 충격에 강한 용기)로 포장한다.
- 2차 수거용기와 검체의뢰서에 '생물학적 위해물질(Biohazard)' 표기를 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 각각의 1차 수거용기들을 2차 수거용기에 담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진제로 채워 검체 이송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2차 수거용기의 겉 표면은 0.1%~0.5% 차아염소산 용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고 검체의뢰서와 함께 최종 포장용기에 담도록 한다.

6. 소브루셀라병 방역요령



7. 전염성해면상뇌증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 의심축 발견 시 신고

(p54, p135, p147 참조)

- 신고절차 : 의심축 발견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 소해면상뇌증 임상증상 〉



민감하고 · 흥분 불안



기립불능의 징후



두부 이상 선회운동



후지 이상 보행장애

〈 의심축 신고 〉



관할지 읍·면장, 시장, 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긴급 조치사항

-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신경증상을 나타낸 소는 즉시 격리하고, 농장내의 모든 건강 동물을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격리하여 이동을 금지시킨다. (p140 참조)
- 농장주에게 농장 내에 머물도록 한다.
- 농장의 가축수송차량, 집유차 및 기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p110 참조)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p110 참조)

- 농장 내에 있는 축주, 관리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가능한 한 환축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물건의 반출을 금지시킨다.
- 가축이 폐사한 경우 폐사축을 현장에 보존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축사내외, 물건, 사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전염성해면상뇌증 소독방법

적용대상	권장처리방법	소독제
가연성 물질, 기름, 남은 가검물시료, 배설물	소각	-
일회용이 아닌 의복, 의료용구 및 부검도구 등 실험기구	134~138℃에서 18분이상, 132℃에서 1시간 고압 증기 멸균 또는 2%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시간 이상 침적	차아염소산 나트륨
축사, 기구, 집	2%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소독한 후 세척, 소독 반복	차아염소산 나트륨
기계류, 자동차	2%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으로 소독한 후 세척, 소독 반복	차아염소산 나트륨
사람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1N 수산화나트륨으로 수세*	수산화나트륨
폐사축, 살처분한 가축	소각 또는 소독 후 조심스럽게 매몰	

8. 돼지열병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 행동수칙

☐ 의심축 발견 시 신고

(p59, p135, p147 참조)

- 신고절차 : 의심축 발견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 돼지열병 임상증상 〉



초기 : 눈 충혈·기침



초기 : 발열·포개어 잠



후기 : 귀·몸 붉은 반점



후기 : 수양성 설사

〈 의심축 신고 〉



관할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긴급 조치사항

- 임상증상을 나타낸 돼지는 즉시 격리하고, 농장내의 모든 건강 동물을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이동을 금지시킨다. (p140 참조)
- 농장의 가축수송차량, 집유차 및 기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p110 참조)
- 농장 내에 있는 축주, 관리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가능한 한 환축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물건 반출을 금지시킨다.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사료, 퇴비, 분변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p140 참조)
- 가축이 폐사한 경우 폐사축을 현장에 보존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p140 참조)

II

주요 가축전염병 개요





II. 주요 가축전염병 개요

1. 구제역(FMD)

정의

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 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 전염병이다.

병인체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있다.

전파방법

-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첫째,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전파이다.
- 둘째,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 접촉 전파이다.
- 셋째,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km, 바다를 통해서서는 25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 구제역 전파방법



📦 잠복기간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보통 2내지 8일 정도로 매우 짧으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입상증상

• 소의 특징적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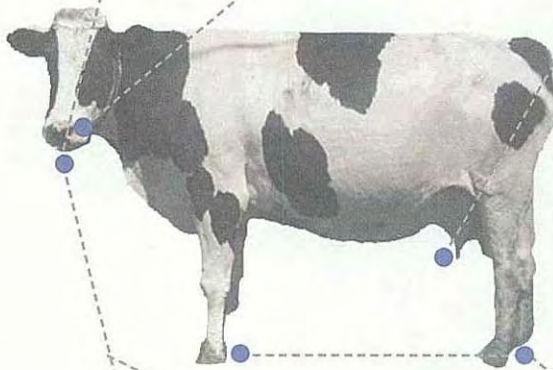
거품 섞인 침흘림



코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에 생긴 백색의 수포와 수포 파열 후의 가피 형성



혀에 생긴 궤양



윗잇몸 주변의 궤양



앞발굽 사이의 수포 형성과 뒷발굽 사이의 궤양과 기피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이 나타난다.
- 발병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수포가 생기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 수포는 발굽의 지간부와 제관부, 유두 등에서도 관찰된다. 수포는 곧 파열되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폐사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다.
- 성우의 경우 폐사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이 초래되기도 한다.
-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파행을 보이고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 특히 젖소에서는 산유량이 50% 정도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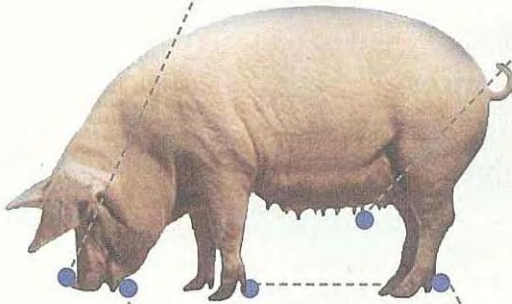
● 돼지의 특징적 증상



돼지의 콧등에 생긴 수포



돼지의 유방에 생긴 수포 및 파열로 인한 상피탈락



발굽 사이의 수포, 궤양



수포가 터져
돼지의 허에 생긴 궤양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은 파행으로,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닌다.
-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한다.
- 입 주변의 수포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콧잔등에는 큰 수포가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 새끼 돼지에서의 폐사율은 50% 정도이며 때로는 성돈도 폐사한다.

진 단

- 구제역 진단방법으로는 동물체내에 구제역 바이러스의 존재유무를 검색하는 항원진단법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 결과 형성된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항체진단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항원진단법으로는 수포액, 수포형성 상피세포 또는 인후두부위 채취액 등을 검사시료로 하여 세포배양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분리법, 중합효소연쇄반응(PCR)법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법 및 항원 검출용 ELISA 검사법 또는 보체결합반응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 항체진단법으로는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 여부를 검출하는 혈청중화시험법, 항체검사용 ELISA 검사법 및 보체결합반응 등이 주로 이용된다.
- 현재 국내에서는 바이러스분리법, PCR 검사기법, ELISA검사법 및 혈청중화시험 등이 구제역의 확정 진단에 활용되고 있으며, 2002년 구제역 발생현장에서는 신속 진단을 위한 간이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방역대책

-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 발생 시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각 시·도, 시·군에 신고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한다.

2. 조류인플루엔자

정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 Virus, AIV)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어 사료 섭취 감소, 급격한 산란율 저하 및 폐사를 나타내는 조류 질병임.(야생조류 및 오리 등은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원인체

-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금류(닭, 칠면조, 오리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며,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음.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혈청형이 16가지, N혈청형이 9가지 종류가 있으며 산술적으로 존재 가능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144가지(16×9)이며, 혈청형은 H3N2, H9N2 등으로 나타내고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
-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약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HPAI는 OIE List 질병으로 분류되고,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HP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신란율 저하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국가간 축산물의 교역에서 중요시되는 질병임.
- AI 발생국가로부터 축산물(양계산물)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HPAI가 지닌 위험성 때문이며, HP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HPAI 발생국으로부터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OIE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정의

1	2	3
폐사율이 75% 이상	H5, H7형이 아닌 경우	H5 혹은 H7형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주령 SPF 닭의 8수중 6수 이상 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 미만 폐사• 세포변성(C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포변성(CPE)• HA염기서열이 고병원성 특성 지님

전파방법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인 접촉임. 사람의 발, 사료 차, 기구, 장비, 계란 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됨.
-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함.

-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 분변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음.
-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 특히 청둥오리나 가창오리와 같은 물새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야생조류에서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집오리나 거위에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동절기 북방철새에 의해 국내 텃새들이 감염되고 이로 인해 농가의 닭·오리 등이 감염되는 전파경로가 우려되는 만큼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에 주의해야함.
-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방법



입상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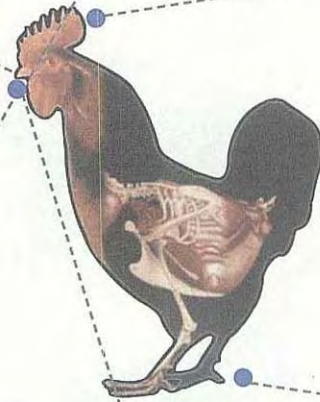
닭벼슬과 육수의 출혈과 다발성 괴사



안면부의 심한 부종/괴사



닭벼슬과 육수의 심한 괴사



발병 초기의 침울과 졸음 증상



안면부의 심한 부종과 괴사



닭다리 정갱이 부위의 심한 피하출혈(청색증)

- 닭이나 칠면조는 특히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으며, 야생 조류나 야생 오리류 등은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내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100%까지 폐사하게 됨.
- 처음에는 계사입구 또는 감염 시작 지점에서부터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닭이 침울하게 줄다가 급격히 폐사수가 증가하고, 이때 폐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뚜렷이 관찰되며 보통 폐사 시작부터 50%의 폐사율이 나타나기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됨.
-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 (swelling)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 심급성(peracute)으로 폐사할 경우 전혀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가 나타나기 전에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음.
-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약간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데 사료섭취량 감소가 나타난 1~2일 후부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냄.
- 육용오리의 경우도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함과 동시에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이면 의심해야함.

부검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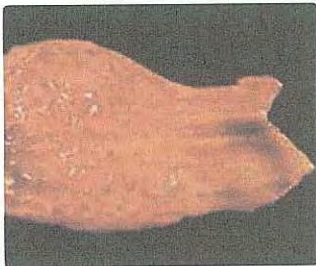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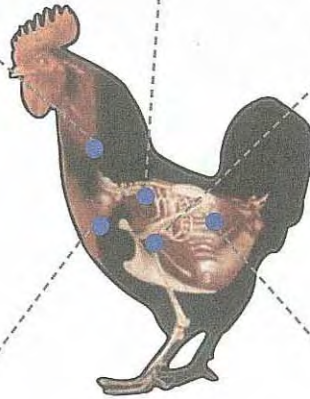
기관점막의 반상출혈



부종증상을 보이는
폐의 단면 소견



심장외막지방의 점상출혈



선위 점막의 점상출혈



검게 보이는 양측의 맹장
사이에 있는 소장의 출혈증상

-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통상적으로 안검의 심한 충·출혈, 기관 내 소량의 출혈소견과 점액 또는 카탈성 삼출물 저류, 폐의 충·출혈, 심장의 점상출혈, 선위 점막의 경미한 출혈소견, 신장 종대 및 요산염 침착이 나타나며, 간장의 심한 유약과 작은 괴사반점 그리고 췌장의 흰색 괴사가 특징적임.
- 외국에서 발생한 HPAI와 달리 국내의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골격근의 반상 출혈 소견이 종종 관찰되기도 하며, 산란중인 닭에서는 심한 난포의 파열과 충혈 및 출혈이 항상 동반됨.
-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도 닭과 같이 난포의 파열, 위축, 충·출혈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며, 난포파열에 따른 난황의 복강 내 저류로 복막염이 동반되기도 함.
- 육용오리에서는 간장의 종대와 유약, 폐의 충·출혈, 비장의 종대와 흰색 괴사반점, 췌장의 다발성 괴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남.

잠복기간

- 닭에서의 HPAI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OIE에서는 최대잠복기를 21일(3주)로 정하고 있음.
- 계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짐.

진단과정



국내·외 발생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03년 12월부터 '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530여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 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음.
- * '06년 11월부터 '07년 3월까지 전국 5개 시·군 총 7건 발생

- 외국의 경우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60개국에서 발생

방역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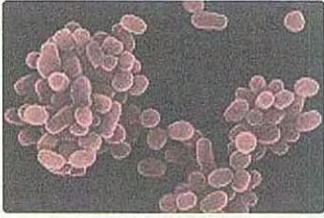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을 위한 전략으로는 조기신고에 의하여 발생농장의 감염 동물 살처분 등 신속한 오염원 제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염·위험·경계 지역의 설정(zoning) 및 오염요인에 대한 강력한 이동통제, 오염 대상물건 및 농장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 실시와 함께 감염축을 신속히 검색하기 위한 능동예찰(active surveillance) 등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방역정책 등을 핵심개념으로 들 수 있다.
- 초동방역이 실패하여 HPAI가 전국적으로 확산 또는 만연되거나 방역체계가 허술하여 살처분 정책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경우 또는 홍콩과 같이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에서 HPAI가 전파되어 오는 것과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살처분 박멸정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가 위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이다.

3. 브루셀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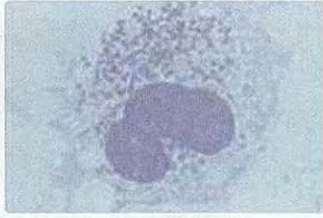
정의

- 브루셀라병이란 Brucella 속 균에 의해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암소에서는 불임증 및 임신 후반기 유·사산을 일으키고 수소에서는 고환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OIE 지정전염병임.
- 전염성 유산(contagious abortion) 또는 Bang's disease로도 불리며, 한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여 유량감소·체중감소가 일어나고, 유·사산, 불임 등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되어 축산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힘.
- 이 질병은 사람(주로 축산업 관련 종사자 : 농장·도축장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채혈요원, 실험실 근무자 등)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에서 나타나는 임상증상과는 달리 사람에서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임.
- 발열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파상열(undulant fever)이라고 불리며, 지중해의 말타섬에서 사람 감염사례가 처음 발견되어 말타열(Malta fever)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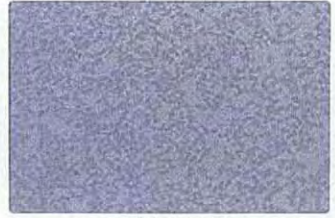
병원체의 특징



〈전자현미경 사진〉



〈대식구내 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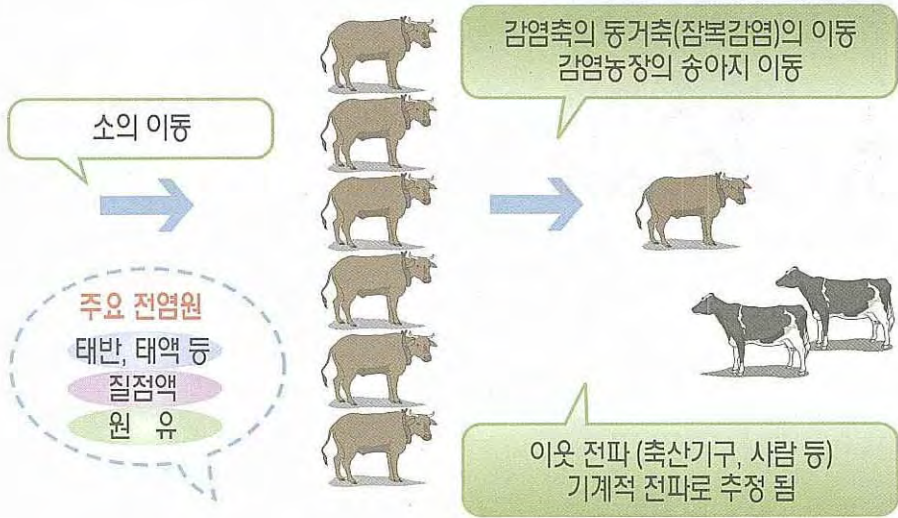
〈그람 염색〉

- 브루셀라균은 6종류가 있으며, 이 중 *Brucella abortus*가 주로소에서 브루셀라병을 일으키며 세포내 기생하는 그람음성균이며 운동성이 없고 숙주의 대식구내에서 생존 증식함.
-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으로서 초대배양 할 때는 5~10%의 이산화탄소를 요구함.
- 브루셀라균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약품에 쉽게 사멸하며, 우유속의 브루셀라균은 저온살균법으로 사멸됨.

〈브루셀라균 종별 감수성 동물〉

구분	주요숙주	기타숙주
<i>B. melitensis</i>	양, 산양, 사람	소, 돼지, 낙타, 야생동물
<i>B. abortus</i>	소, 말, 사람	양, 산양, 개, 사슴
<i>B. ovis</i>	양	-
<i>B. suis</i>	돼지, 사람	소, 말, 개, 순록, 설치류
<i>B. canis</i>	개	사람

전염경로



-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과 직접접촉하거나 감염 동물의 분비물에 의해 오염된 주위 환경에 접촉함으로써 감염됨.
- 감염된 동물이 유산하거나 정상분만시 배출되는 유산 태아, 태반과 분비물 등에는 브루셀라균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음.
- 브루셀라균이 오염된 사료, 물, 양수 그리고 우유 등의 섭취에 의한 경구 감염이 주요 전염경로이지만 질 점막, 결막, 상처난 피부 등을 통한 피부감염 그리고 오염된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과 감염 수소와의 교미에 의한 생식기 감염도 가능함.
- 농장간의 주요 전파는 감염소의 입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계적인 전파(발생농장의 방문 등)에 의한 경우도 있고 농장 내에서 사육하는 다른 동물(특히 개)이 유산된 태어나 후산물 등을 물고 다니면서 농장을 오염시키는 경우 있음.

브루셀라균 저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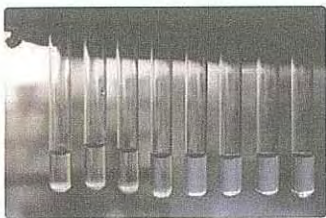
잠복기

- 브루셀라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주~2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길게는 6~10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하며, 감염시기 및 감염 균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동물은 감염 후 30~60일 정도 지나면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체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에 유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유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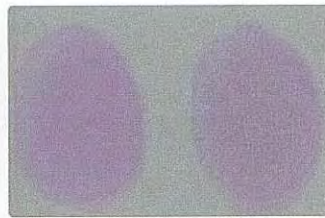
임상증상

- 임신한 동물에서 나타나는 유산을 제외하고는 외부 관찰을 통해 브루셀라병 감염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
- 감염된 임신소가 모두 유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임신 후반기(6~8개월)에 대부분 유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유산은 감염 후 첫 번째 임신에서 발생하나 두 번째 임신에서도 일부 나타나기도 함.
- 하지만 두 번째 이후 정상적으로 분만하였더라도 태어난 송아지는 허약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정상 분만한 경우라도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암소는 지속적으로 브루셀라균을 배출하여 농장을 오염시키는 등 질병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됨.
- 유산 이외의 증상으로는 후산정체와 수태율이 저하되며 간혹 관절의 종창 등이 나타나고, 감염된 수소는 고환염에 의한 불임 증상을 보인다.

진단



〈시험관 응집반응법〉



〈로즈벵갈응집반응법〉

- 감염 후 브루셀라병이 확인되는 것은 유산증상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지나 이들이 항상 동시에 일치하지는 않으며 유산을 해도 항체음성인 경우와 항체양성일 경우에도 유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균 분리 동정을 위해서는 유산물, 질 점액, 태아의 장기, 우유 등이 이용되며 혈청학적진단법으로 로즈벵갈응집반응법, 시험관응집반응법 등이 있다.

- 한·육우는 개체별로 채혈하여 혈청검사[1차 : Rose-bengal agglutination test(로즈벵갈 응집 반응법)]를 실시한 후, 양성개체는 확인검사[2차 : Tube agglutination test(시험관 응집반응법-확인검사)]로 최종 판정한다.
- 젖소는 집유장에서 농장별 원유검사[1차 : Milk ring test(밀크링 검사법)]를 통해 양성 농가를 찾아낸 후,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개체별 채혈검사(2차 : Rose bengal agglutination test)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양성개체는 다시 한번 확인검사(3차 : Tube agglutination test)로 최종 판정한다.
- 밀크링 검사는 농장의 집합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젖소 농가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며 민감도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감염된 개체가 농장내에 한 마리라도 있을 경우 양성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 또한 그 외 검사방법으로는 ELISA(효소 면역법), CF test(보체결합 반응법) 등과 감염된 조직·우유·유산 태아·체액 등 분비물 배양에 의한 균 분리 방법이 있다.

방역대책

- 농장 내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음.
- 외부에서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경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소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후에도 일정기간(30~60일정도) 동거소와 격리시킨 다음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의뢰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합사토록 함.
 - 이 기간은 브루셀라병 잠복기를 고려한 것으로 최근 감염된 개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암송아지 구입한 경우에는 임신 5개월 령 정도에 다시 한번 검사함.

Ⅱ 주요 가축전염병 개요

- 유·사산 소는 즉시 격리시킨 후 검사를 의뢰하고, 유산태아·태반·질점액 등 분비물은 소독 후 소각 또는 매몰함.
- 자연교배는 피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종모우를 사용하거나 인공수정(기구 소독 철저)을 실시토록 함.
- 농장에서 키우는 개·고양이 등은 축사 출입을 차단하고 축사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사육하는 소는 정기적으로 검진 의뢰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염성해면상뇌증

정의

- 동물의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란 소, 사슴, 면양, 밍크 등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최근에 와서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TSE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다.
- 이들 질병의 공통점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
- 동물의 종에 따라 소의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사슴류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CWD) 등이 있고(표1), 이 중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표 1 〉 동물에서의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질병명(국내)	질병명(영문)	발생종	최초 보고년도
스크래피	Scrapie	면양	1732
전염성 밍크뇌증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TME)	밍크	1947
사슴만성 소모성질병	Chronic Wasting Disease(CWD)	사슴	1967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소	1986
고양이 해면상뇌증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FSE)	고양이	1992

📦 병인체

- 전염성해면상뇌증의 병인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변형 프리온 단백질 (PrP^{sc} 또는 PrP^{res})이라 여겨지고 있다.
- 프리온은 분자생물학적으로 정상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로서 정상프리온 단백질(PrP^c)은 α -helix 구조가 많고 β -sheet 구조가 적으나 변형 프리온 (PrP^{sc})은 α -helix 구조가 β -sheet 구조로 변형된 것이 특징이다.
- 변형 프리온은 단백분해효소(proteinase)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133°C 20분, 2%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2N 가성소다(sodium hydroxide)에 감염력이 불활화 된다.

📦 감염경로 및 전파방법

-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은 축종마다 감염경로 및 전파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소해면상뇌증(BSE)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전파방법은 스크래피에 걸린 면양이나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접촉감염은 일어나지 않으며 수직 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확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 스크래피(Scrapie)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유전적이거나 감염된 양의 태반이나 태반 부산물에 접촉된 새끼 양에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평감염, 오염된 환경으로부터의 감염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사슴 만성소모성질병(CWD)의 경우는 동물간의 접촉에 의한 수평전파가 가장 가능성 있는 전파방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감염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사슴에서 발생사례가 있어 수직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 및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 잠복기간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잠복기간은 비교적 길고 동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2).

〈 표 2 〉 주요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잠복기 및 임상경과기간

질병명	잠복기	임상경과기간
소해면상뇌증	평균4-5년*	2주-6개월
스크래피	3.5년**	수 주~7개월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22개월(최대 36개월)***	2-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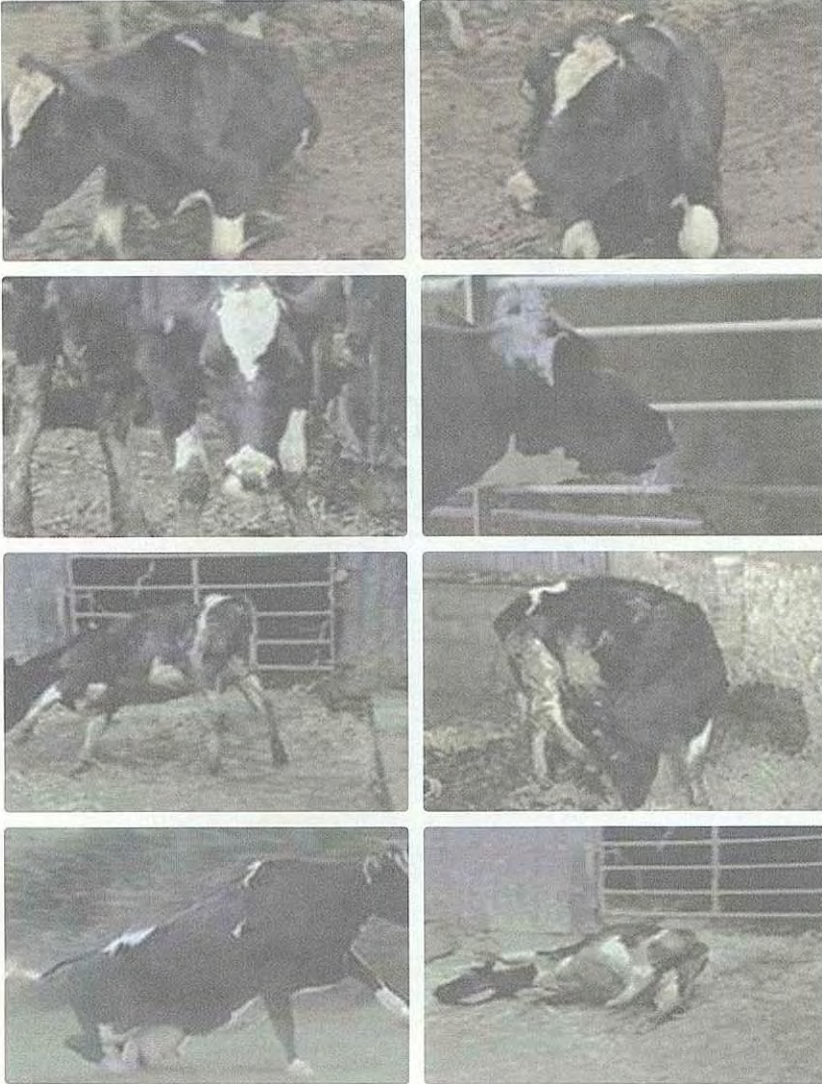
* 국제수역사무국(OIE)

** Prions in humans and animals (2007)

*** 캐나다의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SOP(안) (2000)

 임상증상

〈소 해면상뇌증의 특징적 증상〉



- 침울 · 불안, 머리를 늘어뜨림
- 쉽게 흥분하고 침을 흘림
- 경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

- 선회운동 등 같은 동작 반복
- 골반, 뒷다리 이상으로 보행장애
-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으로 폐사

〈스크래피의 특징적 증상〉

- 초기에는 불안해하며 축군내에서 다른 동물들과 떨어져 있고 쉽게 흥분한다. 이를 갈기 시작하며 발굽이나 어린양을 물기도 한다.
- 감염축은 가려움증이 심하여 벽이나 기둥에 비벼서 털이 벗겨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보행이상과 체중감소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사슴 만성소모성질병의 특징적 증상〉

-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축군 내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떨어져 있으며, 돌발적인 움직임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 침을 많이 흘리고, 침을 해지며 체중감소와 연하곤란 등 마비증세를 나타낸다.
- 갈증 및 소변의 증가가 나타난다.
- 이러한 증상은 동물이 폐사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나 어떤 개체는 폐사될 때까지 급성폐렴 외에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 진단

-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정밀진단은 다른 미생물에 의한 전염성 질병과는 달리 원인체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단할 수 있는 혈청학적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가축의 뇌조직의 정밀검사에 의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표준진단법으로 공인된 뇌 조직을 검사하는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면역블로팅

검사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진단기법은 표3과 같다.

〈 표 3 〉 소해면상뇌증(BSE) 검색을 위한 정밀 진단법

검사방법	시료	진단요령
신속검사법	신선 뇌조직	변형 프리온 단백질(PrP ^{sc}) 항원 검색
병리조직검사법	포르말린 고정 뇌조직	뇌조직의 특징적인 공포변성 확인
면역조직화학 염색법	포르말린 고정 뇌조직	변형프리온 단백질(PrP ^{sc}) 항원 검색
면역블로팅검사법	신선 뇌조직	변형프리온 단백질(PrP ^{sc}) 항원 검색

방역대책

-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으로써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반추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국제수역사무국 육생동물 위생규약 상 제외품목 제외)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내에 전염성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 발생 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조기에 색출하여 박멸함으로써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 공급하는데 방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5. 돼지열병

정의

돼지열병은 고열·식욕결핍·설사나 변비·피부청색증 및 뒷다리를 잘못 쓰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되는 돼지 질병 중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관리 대상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병인체

돼지열병 병원체는 Flaviviridae의 Pestivirus속에 속한다.

전파방법



- 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이동, 차량, 축산도구, 사람(신발·의복)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 감염경로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이며, 침입한 바이러스는 편도, 림프절, 실질 장기의 세포 등에서 증식하며 독혈증을 일으키고 태반감염도 된다. 또한 병든 돼지의 분변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잠복기간

잠복기는 보통 6~11일 정도이나 20~30일 또는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OIE 기준 40일).

임상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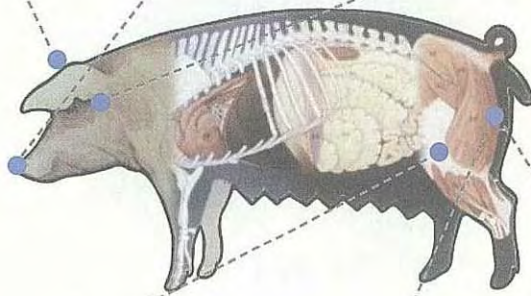
발병 후기에는 귀와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남



초기에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으며 여러마리가 포개어 잠을 잠



초기증상으로 눈이 충혈되고 눈꺼피 끼며 가끔 기침을 함



후기 증상으로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림



전형적인 발증군에서 나타나는 설사로 인한 엉덩이의 수양설설사



말기증상으로 초기의 변비에서 경과된 황회색의 수양성설사

📦 임상소견 및 병변

- 돼지열병은 증상이나 병변과 함께 병력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돈단독, 살모넬라감염증 등과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이 병의 증상과 병변은 바이러스주의 독력, 감염돼지의 일령, 개체의 면역상태 그리고 타 질병과의 혼합감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징적인 임상소견 및 병변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돼지열병의 확진을 위하여 가검물은 검역원 또는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실험실로 보내야 한다.
-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은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성형 돼지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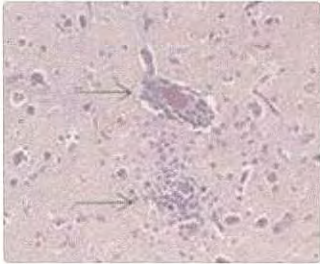
- 돈군에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 초기 증상으로 눈곱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 된다.
- 감염 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튜렐라가 혼합 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전형적인 돼지열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험이 없는 생산자나 기타 사람들은 돼지열병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형태의 돼지열병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성형 돼지열병〉

- 만성형 돼지열병은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면 흔히 위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 몇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경과할수록 많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한다.
-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된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감염 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난다.
-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내거나 또는 피부의 진전증상이 관찰된다.
- 많은 경우에는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 증상을 보인다.
- 수 주 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 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 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돼지열병 증상으로 발전된다.

병리 / 조직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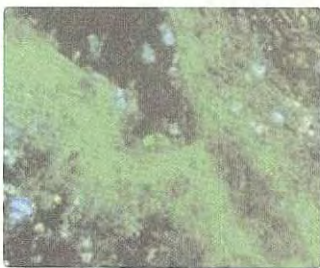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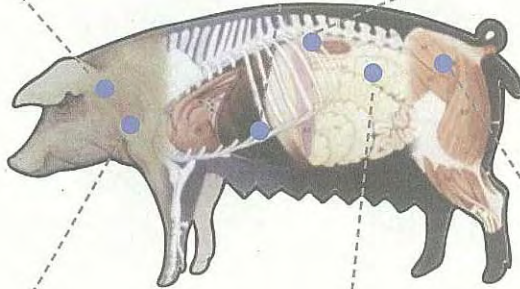
대뇌의 혈관 주위세포 침윤과
소교세포의 침윤 등에 의한
비화농성 뇌염(H-E염색)



비장의 출혈성 경색



신장의 점상출혈



편도 음와상피세포의
바이러스 항원(형광항체법)



대장점막의 단추양 궤양



방광점막의 출혈반

〈급성형 병변〉

- 처음 심급성으로 폐사한 돼지에서는 돼지열병 병변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돼지열병에 감염된 임신모돈에서 미이라나 사산이 관찰될 수 있다. 감염 태아는 부종성이며 복수가 차고 두부와 사지기형, 피부 및 각종 장기의 점상출혈, 그리고 폐와 소뇌 형성부전 등이 나타난다.
- 귀, 복부 및 서혜부 등의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며 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자주색 변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비장에는 점상·반상출혈 및 출혈성 경색이 관찰된다.
- 각종 림프절은 병리학적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내부 장기이다. 림프절 가장자리 부위에 수종 및 출혈 소견이 관찰된다.
- 종종 관찰되는 병변으로 편도선과 인후두부위의 괴사 및 출혈, 그리고 심장, 방광 등 각종 장기의 점·반상 출혈과 대장(중중 결장 부위)에서 단추상 궤양이 관찰되기도 한다.
- 신장 출혈은 급성 돼지열병의 다른 어떤 병리학적 변화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출혈은 점상 및 반상으로 신장의 피막하 표면에 발생하며 드물게 신추체(pyramid)와 신문(hilus)에도 나타난다.
- 급성 또는 아급성 돼지열병에 걸린 일부 돈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폐충혈과 급성 기관지폐렴을 보인다.
- 종종 돼지열병 부검소견이 살모넬라증, 톡소플라즈마 감염증 및 돈단독 등과 유사하므로 실험실 확진을 받아야 한다.

〈만성형 병변〉

-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림프절이 종대되고 창백하며 습윤해 보이는 병변이 관찰된다.
- 신장에 가끔 심한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나타난다(Turkey Egg Kidney).
- 만성 돼지열병 병변은 급성의 경우와 비슷하나 덜 심한 편이다. 만성으로 감염된 돼지는 출혈이 거의 없이 폐사하고 종종 맹장과 결장에 단추상 궤양이 있으며 만성 병변으로 괴사상 장염과 기관지폐렴이 흔히 나타난다.

진단

〈 돼지열병의 진단체계 〉

의심돼지 신고, 발견

0시간 ↓



임상검사

6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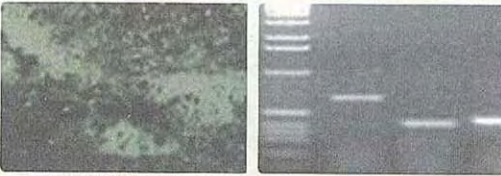
부검 및 가검물 채취

12시간 ↓



임상, 병리조직 검사

36~48시간 ↓



형광항체법

PCR



조직검사

바이러스 분리확인

유전자 분석

〈감별진단〉

African swine fever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돼지열병과 감별진단이 극히 어렵고 돼지단독과의 감별진단도 필요하다.

〈병리〉

병리학적 변화는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의 강도, 감염후의 경과와 장단, 2차감염이나 독소플라즈마 원충 등의 감염에 영향을 받는다.

〈해부소견〉

체표의 차반, 림프절의 종대와 출혈, 비장의 출혈성 경색, 호흡기나 비뇨기 및 소화기의 점막 면과 장막 면에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보인다. 실질장기의 종창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과가 긴 예에서는 폐렴, 위장염, 대장에 단추형 궤양(button ulcers)이 고올로 나타난다.

〈조직소견〉

실질변성, RES세포의 활성화, 혈관변성, 혈관간질성결합조직증식 등이 보인다.

〈병원 및 혈청학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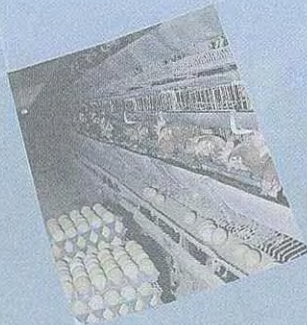
바이러스 검출, 형광항체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의 검출, 겔내확산침강반응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의 검출에 의하여 진단할 수 있다.

방역대책

국내에서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 발생시에는 검역원 및 각 시·도, 시·군에 신고하여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1. 소 질병 감별 진단 요령

가. 임상관찰 요점

소에 대한 임상관찰을 위하여 우선 소의 생리기능을 숙지하고 습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애착심을 갖고 소에 접근하여 세밀히 동작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젖소는 유량(乳量) 및 유질에 중점을 두고 관찰한다.

나. 외부증상 관찰요령

❏ 원 기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이고, 기운이 없고 활기가 없는 눈초리를 보이거나,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소, 같은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있는 소, 누운 채로 기립이 곤란하거나 계속해서 서있는 소 등은 일단 체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눈 모양의 변화

건강한 소의 눈은 티없이 맑고 서늘해 보이며 안구와 눈꺼풀이 탄력성이 있다. 눈 점막이 창백하면 영양이 불량한 상태를 의미하며, 빈혈, 백혈병, 내부기생충, 중독증일 때도 창백해진다. 또한 황색으로 되었을 때는 황달을 의심해야 하며, 눈의 충혈은 열성전염병, 심장질환, 폐질환 등에서 온다. 각막이 혼탁하면 핑크 아이, IBR, 악성카탈열등이 의심되고 안구함몰은 탈수, 허탈시 주요한 증세이다.

■ 식욕부진

젖소는 1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료량은 평균 체중의 2.7%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급속한 식욕부진은 제1위식체, 급성열성질병에서 볼 수 있으며 만성위장병의 경우 식욕에는 변화가 없다. 식욕이 있으면서 먹지 못하는 것은 구강내의 동통, 식도내의 이물 체류, 사료급변, 나쁜 사료, 환경급변, 인후두부의 염증 등의 경우에 나타난다. 또한 사료를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이물(異物 : 흙, 쇠붙이 등)을 먹을 경우에는 비타민 D, 칼슘, 코발트 등의 무기물이 결핍된 상태이다.

■ 되새김질

소는 채식 후 30분~1시간만에 되새김질을 시작하며, 대개 40~50분간 지속하고 하루에 6~8회 정도 되새김질을 한다. 되새김질이 약하거나 하지 않으면 식체, 고창증 등의 위장질환, 40℃ 이상의 열성질병, 중독, 신경성장으로 볼 수 있다.

음수량

음수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젖소의 경우 비유량의 3배를 먹는다. 음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설사증상이 없는 식체, 고창증, 제4위전위증과 같은 증상에서 볼 수 있고 물을 먹는 증상은 열성질병, 설사 등이다.

맥 박

맥박은 안면동맥이나 꼬리뿌리부위 동맥을 측정하는데 정상 맥박수는 성우에서 평균 분당 36~80회이다. 열성질병, 심장병, 심한 두통, 중증도의 빈혈증, 중독증 등의 경우에 맥박수가 증가한다.

체 온

소의 정상체온은 38.5~39.5℃인데 개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열(39~40℃), 중열(40~41℃), 고열(41℃이상)이라 한다. 체온이 평균이하(36~38.5℃)로 떨어지는 질병은 유열, 중독, 심한설사, 식체, 만성장염에서 볼 수 있으며 41℃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병은 탄저, 유행성감기, 폐렴 등에서 볼 수 있다. 고열이 2-3일 지속되다가 1~2일간 평균온도로 돌아온 후 다시 발열하는 것은 패혈증, 파이로플라즈마병 등에서 나타나며 브루셀라병은 장기간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고열과 미열이 반복된다.

■ 호흡

건강한 소는 흉복식 호흡을 하고 횡수는 분당 18~30회/분이다. 흉식호흡(胸式呼吸)은 횡격막, 복부에 동통성장애가 있을 때이며 수송열, IBR, 폐렴 등 열성 질환은 특히 호흡수가 증가하고 헐떡거린다.

■ 침흘림

건강한 소는 하루 50ℓ 정도 침을 흘리지만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사료중독, 인후두염, 구내염, 식도경색, 중독증 등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심한 설사나 열이 많은 병은 침이 적게 분비된다.

■ 코흘림

혈액이 섞인 콧물은 각혈, 탄저, 비염, 고사리 중독, 기관지궤양이 있을 때 나오며 누런 콧물은 파스튜렐라 폐렴, 축농증, 이물성 폐렴일 때 나온다.

■ 가시점막

가시점막(눈, 질, 코 등)이 창백하면 빈혈, 혈구수 감소를 의미하는데 중증의 기생충질환, 영양장애, 파이로플라즈마병 등 일 때 나타난다. 충혈상태는 고사리 중독, 폐렴, 급성열성질환에서 나타나며 청색증은 초산염중독시 나타난다. 황달은 담즙의 배설장애 또는 과잉생산, 간질환 등에서 나타난다.

■ 영양상태

만성위장장애, 중증의 설사, 기생충성질병에 걸리면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되며 난소의 발육부전으로 불임의 원인이 된다.

■ 걸음걸이와 자세

절룩 걸음은 다리의 상처나 관절염에서 나타나며 고열, 극도의 영양실조 등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자궁염, 요석증 등이 있을 때는 동을 구부리고 배만자세를 취하며 유열은 가슴을 땅에 대고 목은 구부려 머리를 옆 가슴에 기대 S자형의 자세를 취한다.

리스테리아는 신경증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선회하면 목초(그라스)테타니중독증, 대뇌피질 괴사증에 걸렸을 때는 비틀거린다. 골연증은 내측발굽의 통증으로 다리를 교차시키고 서 있거나 일어나기를 싫어한다.

■ 체 표

- 피 모 : 영양실조, 소화기질병, 기생충성질병 및 피부병의 경우털이 거칠고 광택이 없다. 부분적인 탈모는 피부병에서 나타난다.
- 피부발진 : 토끼풀, 감자, 전분찌꺼기를 많이 먹었을 경우 유방과 하복부에 발진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
- 부 종 : 염증성질병, 심장기능장애, 기종저, 외과성 부종 등에서 볼 수 있다.

■ 땀 흘림

소의 콧등은 윤기가 있고 축축해야 정상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병은 폐출혈, 폐기종, 폐렴 등의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과 심한 통증이 수반하는 식체, 고창증, 장폐색 등에 나타나며 대사성질병과 복막염시는 식은 땀을 흘린다.

■ 오줌

배뇨의 횟수, 태도, 오줌색깔 등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혈뇨는 요도염, 방광염, 렙토스피라병, 파이로플라즈마병, 중독증, 물중독에서 나오며 요결석은 오줌을 짙끔짙끔 싣는다.

■ 분변

변비는 채식량이 적거나 열성질병시 나타나며 만성적인 장염, 제4위전위증, 콕시듐증일 때는 끈적끈적하다. 반추불량으로 거친 변을 누울 때는 창상성 제2위복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다. 소 증상별 질병감별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돌연사 (急死)	중독	• 질산염중독 : 점막창백, 비틀거림, 침흘림, 호흡곤란, 오줌 자주 눕, 혈액은 암적색(죽은 소)
		• 고사리중독 : 점막의 출혈반점, 혈변, 혈뇨, 피섞인 콧물혈액이 응고안됨, 비틀거림
		• 감자중독 : 감자의 새싹을 먹음으로 발생, 눈충혈, 설사, 변비, 고창증, 혼수상태
		• 담배중독 : 경련, 침흘림, 고창증, 비틀거림.
		• 요소 : 채식후 1시간내에 발생, 거품 섞인 침흘림, 호흡곤란 → 질식사, 앞다리마비, 경련
		• 청산 : 거품 섞인 침을 흘림, 호흡곤란, 경련, 가시 점막이 푸른색으로 변함, 코, 입에서 출혈, 죽기 직전에 큰 소리로 울
		• 수은제농약 : 피가 섞인 수양성 설사, 경련, 후구마비, 구강점막이 회색으로 변함
		• 유기인제농약 : 침을 많이 흘림, 경련, 설사, 호흡곤란
	탄저	• 전염성이 강함. 자연공(自然孔)에서 출혈, 비장종대, 고열
	패혈증	• 고열 눈충혈, 땀흘림, 6~12일령에서 다발
기종저	• 전염성이 강함, 근육의 종창과 포말음, 열통	
고창증	• 복부의 팽대 (좌측복부 심함), 호흡곤란, 발효성 사료과식	
독사교상	• 파행(跛行), 허탈, 물린 곳 종창	
일사병	• 여름 방목소에서 다발, 털이 없는 부위 발적종창, 졸도	
유열 (산욕마비)	• 분만직후에 다발, 열이 정상 또는 하강(36℃~37℃), 혼수상태, S자형의 자세, 경련, 사경(斜頸)	
목초테타니증	• 봄철에 시비를 많이 한 목장에서 방목 2주내 발생, 소리를 내며 폭주하거나 경련, 걸음걸이가 뻣뻣함	
장독혈증	• 농후사료를 과식한 송아지에서 다발, 혈변	

증상	질병명	특징
고열 (高熱)	패혈증(敗血症)	• 고열, 무반추, 눈충혈, 땀흘림, 설사, 변비
	유행열	• 유행성으로 발병, 땀이 남, 호흡곤란, 예후양호(폐사율1~2%)
	기종저	• 전염성이 감함, 사지와 어깨부위 근육의 종창, 세균검사
	급성유방염	• 유방의 종창, 회황색 유즙 배출
	탄저	• 전염성이 강함, 구강, 항문, 콧등의 자연공에서 출혈
	폐렴	• 호흡곤란, 고름이 섞인 콧물, 콧김이 째, 심한 기침
	자궁내막염	• 음부에서 고름같은 액체배출
	IBR	• 콧물 흘림, 기침, 비강점막 충혈, 유산
	전염성장염	• 심한 설사, 때로는 혈변
	열사병	• 태양열에 장시간 노출 될 때, 호흡곤란
호흡곤란 (축박) 콧물, 침, 눈물흘림	유행열	• 돌발적 발열, 체포가 떨림, 사지관절의 부종,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림.
	이바라끼병	• 미열, 점막의 충혈과 궤양, 제관부의 종창, 파행(跛行), 인후두마비
	RS바이러스	• 5~6일 계류열(41℃ 이상의 고열이 지속)
	아데노바이러스	• 일반증상의 악화, 결막염, 일과성발열(一過性發熱) 계류성, 건성라셀(수포)음, 설사
	파라인플루엔자	• 일과성발열(성우는 고열), 드물게 유방염, 유산
	바이러스성설사 (점막형)	• 발열, 설사, 코, 혀, 식도점막의 작은 궤양과 출혈
	폐충증	• 약한 송아지에서 다발, 복식호흡, 폐 수포음(라셀음)
	아나플라즈마	• 발열, 빈혈(가시점막 창백), 일반증상 악화
	폐렴	• 고열, 콧물흘림, 호흡곤란
	결핵	• 설사(만성), 림프절 종창, 튜버큐린 피내검사
	이물성위염	• 구토하려고 애쓰, 반추정지, 식욕절폐
	창상성심낭염	• 보행기피, 흉복부 동통, 내리막길 보행곤란
	IBR	• 호흡곤란, 고열, 비강점막충혈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설사 이상변 (異常便)	기생충감염	• 흑색 또는 녹색의 설사, 여염
	간질증	• 간질충 감염이 심할 때, 미열, 빈혈(결막, 비경의 퇴색), 진흙과 같은 연변
	대장균감염	• 회백-황색의 악취성설사, 포유정지, 1~2주령 송아지에서 많이 발생
	로타바이러스	• 격심한 수양성 설사, 탈수에 의한 안구함몰, 농장 상재화, 1주령이내의 송아지에서 발생, 폐사율 높음.
	살모넬라	• 발열, 황회백색 수양성 악취있는 혈변, 1~4주령 송아지에서 다발
	요네병	• 만성설사, 비유량이 떨어지고 야윌, 하악부 부종
	콕시듐증	• 송아지 및 육성우에서 다발, 혈변
	위장질환	• 고창증, 식체, 제4위전위증
	중독	• 만성중독(농약, 중금속 또는 고사리 등 유독식물에 기인)
	바이러스성 설사	• 전염성 강함, 탈수증, 점액 및 점막이 섞인 설사, 입속에 괴사반점, 출혈, 침흘림
	식이성 설사	• 부패된 사료급여에 기인, 악취나는 흑색변, 복부팽대, 성장부진
	비타민A 결핍증	• 송아지에서 다발
	장독혈증	• 농후사료 과식, 송아지에서 다발
신경증상 파행 비틀거림	리스테리아	• 한쪽 방향으로만 선회운동
	목초테타니	• 경련, 걸음걸이 뻣뻣하고 소리를 내며 폭주함
	요소중독	• 식욕절폐, 강직성 마비(다리), 거품섞인 침흘림, 경련
	유열 (산욕마비)	• 기립곤란(사지관절마비), 경련, 체온하강, 혼수상태 S자형 자세
	저혈당증 (케토시스)	• 분만직후 및 유량이 높은 소에서 발생, 입김에서 아세톤향 냄새, 후구마비로 기립곤란
	파상공	• 강직성경련, 목마(木馬)자세, 침흘림, 연하곤란
	부제병	• 발굽, 제관부위의 종창 및 염증

증상	질병명	특징
신경증상 파행 비틀거림	뇌염	• 바이러스성, 세균성 뇌염에 기인한 운동장애(뒷다리 마비, 선회운동)
	열사병	• 거품 섞인 침, 점액성 콧물, 고열, 결막충혈, 여름철 다발
	타이레리아 (바베시아)	• 진드기 오염지역에서 다발, 빈혈, 황달, 고열 때로는 혈색소뇨
	유행열	• 유행성으로 발병, 땀이 남, 호흡곤란
유산 사산 기형분만	아까바네병	• 어미 소에서 이상이 없으나 때로는 태수과다증, 난산, 송아지의 사지관절만곡, 척추, 경부만곡, 머리, 얼굴기형
	브루셀라병	• 임신 7~8개월에 발생, 혈청검사 실시, 후산정체, 불임증
	비브리오팀	• 임신 5~7개월에 다발, 세균검사
	IBR	• 발열, 외음부, 질, 자궁에 염증, 비경에 포피염, 질막충혈
	트리코모나스	• 임신 3~4개월에 다발, 기생충검사 실시
	곰팡이성 유산	• 태반과 태아피부에 회백색 반점과 출혈, 임신 6~9개월에 발생
	질산염중독	• 질점막 암자색, 유방은 백색, 초코렛색의 혈액
	호르몬부족	• 임신 3~4개월에 발생, 황체호르몬 부족에 기인
	영양결핍증	• 임신말기, 주로 비타민 A부족에 기인됨
	기타	• 바이러스성설사, 파라인플루엔자병, 캄필로박터 감염증, 타박상
피오줌	바베시아병	• 진드기 많은 곳, 도입우에서 다발, 여임, 식욕부진, 빈혈, 미열, 황달 때로는 혈색소뇨
	물중독	• 송아지가 다량 음수 했을 때 발생
	렙토스피라병	• 황달, 고열, 가시점막 창백, 식욕부진, 세균검사
	요석증	• 배뇨시 동통, 음모에 요결석 부착, 겨울철 비육우에 다발 (농후사로 장기간 급여하는 사사우)
	케토시아	• 주로 분만후에 다발, 오줌에서 아세톤냄새가 남
	신장염	• 화농균에 기인됨, 오줌색이 노랗게 혼탁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피오줌	유독식물중독	• 특히 고사리중독, 출혈 및 빈혈
	무기물결핍증	• 동, 인 등 광물성 성분이 부족할 때, 혈뇨발생
	기타	• 장독혈증, 산욕성 혈색소뇨, 세균성 혈색소뇨
체표의 한국성 부종	혈종	• 수술, 외상에 의한 내출혈
	결핵병	• 피하 림프절 종창
	농양	• 종창부가 유연함
	백혈병	• 피하 림프절 종창, 여위, 비유량감소
	기종저	• 팔다리, 어깨, 근육의 여말성 종창
	방선균증	• 주로 상·하악골(上下顎骨)에 발생, 녹황색고름
	악티노바실러스	• 목부위, 아래턱 부위의 연한 조직에서 발생
복통	고창증	• 발효성사료 과식, 좌측복부팽만
	창상성심낭염	• 보행 및 운동기피, 흉복부 동통, 내리막길, 보행근란
	요석증	• 배를 발로차고, 배노시 동통, 음모에 요결석 부착
	자궁염전	• 젖소에 다발, 음부에 피가 고임
	장염전	• 탈수증, 직장검사서 축지
	장전색	• 심한 몸부림, 호흡근란, 탈수, 흑색의 변비
	바이러스성 설사	• 전염성이 강함, 장점막이 섞인 설사, 미열, 입속에 괴사반 형성
	제3,4위경색중독	• 조잡한 불소화성 사료 다량채식, 비소, 인, 유독식물 중독
기타	간농양	•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잘 크지 않음, 부제병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음
	전염성각막염	• 많은 눈물, 결막종창, 실명, 각막의 함몰
	결막염	

2. 돼지 질병 감별 진단 요령

돼지는 체중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으며, 생리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다른 가축에 비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도 많고 증상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서로 다른 질병이면서도 같은 증세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복합감염이 많아 임상증상만으로는 병명을 진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역학조사사향적 관찰과 임상관찰에 의한 현장진단은 질병의 경향을 추정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찍 대책을 세움으로써 병의 전파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가. 건강한 돼지의 상태

월령에 알맞은 발육을 하며 사료 급여시 가까이 접근하고 항상 식욕이 좋아 사료를 남기지 않는 돼지, 그리고 원기가 좋고 일제히 행동하며 보행이 확실한 돼지가 건강한 돼지이다.

또한, 눈은 온화하고 싱싱하게 빛나며 콧등은 습하고 콧물이 적으면서 투명하다. 돼지꼬리는 말려 있고 늘어지지 않으며, 또한 설사나 변비가 없고 점액 또는 혈액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혼자 외롭게 서있는 일이 없는 돼지가 건강하다. 체온은 큰 돼지 37.5~39.5℃, 새끼돼지는 38.5~39.5℃이다. 다만 운동, 수송 직후에는 40℃로 높아지지만 약 30분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된다. 맥박은 1분에 60~80회이며 다리 또는 허리의 동맥을 손으로 촉진하여 측정하고, 정상 호흡 수는 10~15회/분이다.

나. 돼지 증상별 질병 감별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유산, 사산, 미이라태아	중독증	• 모든에 설사, 원기쇠약, 구토, 경련, 폐사 태아의 폐사일령이 같다.	• 임상검사
	브루셀라병	• 주로 임신후기에 유산되며 허약돈 분만, 조기 유산되어 교배 30~45일에 재발정, 자궁에서 백색 점액 배설, 후구 마비	• 혈청검사
	세균의 산도감염, 대장균, 구균, 파스튜렐라, 코리네박테리움등	• 태아 폐사일령은 같음, 자궁염시 고열과 질루 배설, 신생자돈 폐사, 태아는 거의 정상, 태반에 화농성 염증	• 태아에서 세균분리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흔히 죽은 태령이 다름. 초기감염은 흡수, 미이라화 태아나 허약자돈의 사산, 태막 변성되어 태아를 둘러쌌, 사산태아, 뇌척수에 비화농성뇌염	• 바이러스분리 : 간, 비장 등 • HI검사 : 흡수
	돼지일본뇌염	• 모든의 증상은 없고, 파보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음. 주로 40~50일령에 감염, 사산(흑자), 유산(백자), 조기감염시는 흡수, 신생자돈은 신경증상, 피하수종, 흡수, 복수, 간장과 비장의 괴사소	• FA검사 : 태아의 뇌 • HI검사 : 태아의 흉강액
	돼지 오제스키병	• 죽은 태령이 다양, 유사산과 산자수감소, 태반과, 간장의 괴사, 모든은 여러 가지 증상 (재채기, 기침, 구토, 운동장애 등)	• 태아의 IFA검사 • 모든의 항체 검출
	인플루엔자	• 죽은 태령 다양, 산자수 감소, 유사산, 허약자돈 분만 모든은 무기력, 호흡곤란, 기침	
	돼지열병	• 죽은 태령 다양, 태아 미이라화, 사산, 머리와 사지의 이상, 점상출혈소, 모든은 침울, 식욕 절폐, 구토, 신경증상, 호흡곤란, 결막염	• 태아편도 : FA검사
	톡소플라즈마병	• 기침, 설사, 쇠약, 유산	
	렙토스피라병	• 임신중기유산, 후산정체, 태아는 부종, 허약자돈 분만	• 항체검사
신경증상	저혈당증	• 산발적으로 한복에서 1~2두발생(2~3일령), 90~100% 폐사, 운동실조, 경련, 전지의 회전, 혈떡거림, 낮은 체온, 갈색근육, 체지방 결핍	• 혈당농도 500mg/100mg 이하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신경증상	선천성 진전 (Congenital tremor)	• 여러 복의 자돈에서 발병, (1~3일령은 한복 중 80%이상 발생), 0~25% 폐사, 생시에 심한 진전, 3주령까지는 회복, 잠잘 때는 무증상	
	철분 중독	• 철분주사시 한복자돈이 전부 발생, 폐사율 높음, 침울, 호흡곤란, 졸며 혼수상태, 주사 부위수종, 신장종창, 흉수, 간괴사	• 부검소견
	연쇄상구균 뇌막염	• 포유기 : 낮은 발병율(최고50%), 한복중 2/3까지(2~6주령) • 성돈 : 이유-육성기, 2~3주間に 소수 발병, 발열, 후구미약, 뺏뺏한 보행경련, 절룩거림, 마비, 다발성관절염, 화농성뇌막염, 뇌막충혈	• 뇌막에서 β 용혈성 연쇄상구균 분리
	돼지 오제스키병	• 비면역모돈의 새끼 100% 까지, 면역모돈의 새끼 20~40% 발생(한복중에서), 포유기의 각 연령층에서 발병, 폐사율 100%까지, 발열, 호흡곤란, 구토, 설사, 경련, 모돈의 유산, 편도선 괴사소	• 편도선, 뇌, 동결표본에서 FA검사, 혈청 중화 항체 검사
	돼지열병	• 침울, 식욕절폐, 구토, 운동실조, 설사, 경련, 점상출혈소	• 편도FA검사 • 뇌조직검사
	부종병	• 이유 후 1~2주에 15%까지 발생, 충실한 것이 갑자기 폐사, 비틀거림, 마비, 안검종창, 피하조직수종, 위에 수종	• 소장에서 용혈성 대장균 분리
	소금중독	•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 근육무력증, 식욕, 결핍, 구토설사, 머리진전, 다리회전, 호산구감소, 위염, 위궤양, 실명, 갈증	• 대뇌의 호산구 구성 뇌염
	글래씨병	• 5~8주령에 이동후 10~50%발생, 폐사율 20~50%, 발열, 구토, 관절염, 횡외자세, 섬유소성 흉막염	• Haemophilus parasuis 분리
	유열	• 체온하강, 식욕절폐, 무유증, 기립불능, 분만 직후 발생	• 임상소견, 갈숨제유효
	열사병	• 고열, 호흡촉박, 결막충혈, 신경증세	• 발생역학 조사사항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다리를 절음	다발성관절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유기 : 구균, 대장균에 기인 (1~3주령), 권태, 관절의 종창과 열감, 비위생적인 사양 • 육성기 : 마이코플라스마, 헤모필러스, 단독, 연쇄상구균등에 기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 비장 간장에서 세균 분리 (도말 표본 Gram염색)
	가스괴저 C.perfring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령(철분주사후 24시간이내) 후지의 심한 종창, 해당피부 암적색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검소견 • 세균분리
	부제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월령에 다발, 콘크리트바닥에 사육시 발굽에 부종, 식욕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증상
	바이오틴 결핍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벽의 균열, 피부에 비듬, 탈모, 혀의 균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검사 (바이오틴100~200μl/kg시 정상)
	구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슘, 비타민D 결핍, 기립불능, 뼈의 변형, 사지관절 종창, 이물먹음, 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진단 • 사료검사
	Splayleg (脚弱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시-수시간, 한복증 1-4두가 후지, 때로는 전지가 개장되고 설 수 없어 운동 곤란, 허약자돈, 미끄러운 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의 조직학적 소견 (반힘줄모양 근과 상와머리근의 형성부전)
돼지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부 종대, 발육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분리 	
관절 부종창	연쇄상구균증 (관절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실조, 관절에 농양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분리
기립불능	독소플라스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 쇠약, 경련, 기침, 설사, 운동실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충확인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자, 흑자, 유사산, 총산자수, 감소, 태자 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분리 • HI검사
후구마비	돼지열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 일반증상의 악화, 변비후 설사, 경련, 사지, 귀, 하복부의 청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항체검사 • 조직검사
호흡곤란과 기침	빈혈(철분결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주 이상, 창백하고 기침은 없다, 호흡 촉박, 거친 피모, 심낭수, 흉수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호흡곤란과 기침	폐렴 Haemophilus Pasteurella Mycoplasma Bordetella 구균 Samonella Streptococcus Staphylococ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에서 발병, 밀폐된 돈사, 사육시 호흡곤란, 기침, 식욕부진, 복식호흡, 일부 균은 관절염 일으킴, 대개가 복합감염으로 나타남 폐렴소견(경화, 종창, 섬유소침착, 흉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에서 균분리, 부검소견
	돼지 오제스키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돈의 증상이 심함 호흡곤란, 발열, 구토, 설사, 신경증상 자돈은 높은 폐사율, 성돈은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선, 비장 FA검사
	인플루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작스럽게 100% 발병, 식욕부진, 발열, 이후두, 기관에 점액성삼출물, 폐렴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청학적 진단
	돼지열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고열, 구토, 변비 후 설사, 경련, 운동실조, 편도선, 비장, 방광의 출혈, 대장의 장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선이용 FA 검사
	톡소플라즈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층에 발병, 호흡곤란, 발열, 설사, 신경증상, 소장의 괴양, 폐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충검사
	돼지스트레스 증후군(PSS),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흡축박, 개구호흡, 헐떡임, 이상고열(42.5℃), 급사, 피부홍반, 장기의 사후변화가 빠르고 근섬유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검사(6.0이하), 근육변성 등 임상검사
	돼지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혈증형, 심내막염형에서 호흡곤란, 헐떡거림, 관절염, 피부에 마름모형(다이아몬드형) 발적, 비장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균검사
	폐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령 이하에 만성기침, 증체율 감소, 횡격막염의 변연부에 쇠기모양의 경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란검사
	위축성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좁, 비갑개골의 위축으로 코가 비뚤어짐, 안면부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갑개골 위축 확인
설사	살모넬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발적 발생, 점액혈액성의 설사, 대장점막의 괴사성 염증과 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주령
	돈적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1월에 산발적 발생, 점액, 혈액 섞인 설사, 결장에 출혈과 섬유소성 괴사 및 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연령
	대장균 설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복중의 새끼가 모두 걸리며 느린 전파, 위내에 응고성 유즙 축만, 소장점막 충혈, 황백색 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령, 3주령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설사	꼭시뚱	• 한복중 50~75%발병, 폐사율 낮음(8~9월에 심함), 심한설사, 쇠약, 대장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김, 공장, 회장에 섬유소성 괴사염증	• 6~15일령
	돼지전염성 위장염 (TGE)	• 11~4월까지 급격히 발생(유행성은 100%, 상재성은 50~75%), 10일령이하는 100% 폐사, 4주령 이상은 0%, 구토, 수양성의 심한 설사, 악취나는 황녹색 설사	• 모든 연령
	지혈당증 (무유증)	• 한복의 1~15%발생, 허약 자돈에 발생, 신경증상, 위는 비어 있고 유미관에 무지방	• 분만후 1~3일령
	로타바이러스	• 한복중에 50~80%발병, 7~20%폐사(유행성 : 급격한 전파, 상재성 : 산발적 발생) 거친 피모, 황회색의 수양, 또는 치약정도 연변	• 1~5주령
	클로스트리듐 장염	• 한복중의 충실한 개체 1~4두 발생, 100% 폐사, 구토, 비틀거리고 수양성 혈변, 연변, 거친 피모, 전파 느리고, 돼지 도입후 생김, 공장, 회장에서 출발	• 급성 : 1~7일령 • 만성 : 10~14일령
	돼지오제스키병	• 유행성은 100%발병, 자돈 50~100% 폐사, 침울, 구토, 운동실조, 호흡곤란, 유산, 신경증상	• 모든 연령
	돼지유행성설사	• TGE와 유사, 구토, 수양성 설사, 7~8일만에 회복	• 모든 연령
	증식성출혈성	• 타르양 혈변, 빈혈	
	기타	• 과식, 식중독, 유기인계중독, 특수플라즈마병, 열병	
급사	열사병	• 고열(39.5℃ → 41.5℃), 호흡곤란, 불안, 경련, 보행곤란, 여름철에 심한 열, 스트레스 받을 때 발생	
	스트레스증후군	• 비육기, 성돈중에 근육질이 발육양호한 돼지에 발생, 반상청색증, 사후변화가 빠르고 근육변성, 고열(42.5℃)	
	뇌심근염 (EMC)	• 1~20주령에 발생, 복부 청색증, 심근의 괴사소, 우심장확장, 복막의 섬유소 침착	

증상	질병명	특징
급사	부종병	• 이유후 1~2주, 발육이 양호한 새끼에 발생, 안검종창, 피하조직의 수종, 위분문부의 비후, 신경증상, 마비
	비타민E 셀레늄결핍증	• 육성기와 비육기에 발생, 심근의 출혈성무늬와 수종, 피하조직의 수종, 청색증, 기립불능, 체온이상
	중독증	•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 위장염, 점막의 청색증
	홍막폐렴	• 청색증, 섬유소성 홍막염, 관절염, 화농성 뇌막염, 환기 불량, 이동과 밀사등의 스트레스가 원인
	위궤양	• 비육기, 성돈에 발생, 창백한 장기, 위식도부의 궤양, 위내의 혈괴, 미분쇄된 사료
	기타	• 돼지열병, 돼지단독, 살모넬라병, 유열 및 대사장애 등
피부반점	돼지단독 (패혈증형, 피부형)	• 발열, 일반증상의 악화, 피부반점 등과 둔부피부에 담홍색의 마진 형성
	연쇄구균증 (패혈증형, 수막염형)	• 발열, 호흡곤란, 신경증상
	살모넬라병 (패혈증형)	• 발열, 일반증상의 악화, 회백색의 수양성 설사, 혈변, 탈수, 가시점막의 빈혈
	톡소플라즈마병	• 발열, 귀에 반점, 보행창랑, 기립불능

3. 조류 질병 감별 진단 요령

현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진단 할 때는 부주의한 실수나 옳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사용된 기구나 폐사계의 처리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별히 닭은 집단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개체별 질병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계군 전체의 문제점이나 질병이 무엇인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진단을 해야 사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병력청취(품고)

닭 질병을 진단하는 수의사는 대부분 농장을 경영하거나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병력청취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하다. 수의사는 질병 발생상황과 환경적요인 등 모든 사항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농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만큼 쉽게 찾을 수 있다. 병력청취에 있어 항상 얻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로는 환기방법, 사료, 급수시설, 사료효율, 산란율, 체중, 점등관리, 백신접종프로그램 및 접종방법, 백신제조회사 및 Lot 번호, 농장위치, 질병경과일, 발병수수, 폐사수수, 폐사계의 발생위치 및 시각 등이 있다.

나. 병계의 외부검사

외부검사중 제일 먼저 검사할 것은 외부기생충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Lice)와 진드기(Mite)가 종종 깃털이나 피부에서 관찰될 수 있다. 만약 붉은 진드기(Red mite) 감염이 의심되면 계사바닥, 나무틈새 등의 계사내 목재구조물을 꼭 검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충란을 배출하는 시기에만 닭 혈액이나 체액을 빨아먹고는 이후 닭을 떠나 계사구조물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닭에서는 안락사 시키기 전에 행동, 보행, 경련, 마비, 침울, 호흡기증상 등을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또한 체표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하는데 검사항목이나 부위들은 종양, 농양, 피부변화, 부리상태, Cannibalism, 외상, 설사, 외비공내 분비물, 눈 결막염, 깃털, 벼슬, 탈수 등의 존재유무 등이 있다.

다. 조류 임상증상 및 소견에 따른 질병 감별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관절염 (파행, 관절종창, 기립불능)	마이코 플라즈마병	• 기침, 호흡곤란, 안검·안면 종창, 관절종창, 비강 안와동에 치즈양 물질	
	포도상구균증	• 내장·피부 등 국소조직의 농양형성, 화농성 관절염 및 건활막염, 패혈증, 날개·흉부·복부의 피하에 포도주양의 삼출액	• 소장에서 용혈성 대장균 분리
	레오바이러스증	• 관절의 종창 및 염증, 배복근의 염증성 비후 및 파열, 폐사는 거의 없음	• 육용계에서 주로 발생
각마비 (기립불능, 원기소실)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50일령 이상에서 다발
	척추 굴곡증	• 기립불능, 정상적인 체위 유지 힘들, 등이 굽어 있음	
	화농성 척추증	• 기립불능, 척추 염증	
	영양성질병 (구루병, TD)	• 비타민A 결핍 : 쇠약, 우모가 처지며, 보행장애, 눈에 크림 모양의 삼출물이 보임 • 비타민D 결핍 : 구루병, 산란 정지, 다리 마비 • 비타민K 결핍 : 혈액응고 부진	
각골비후 (양쪽다리 비후 및 열감)	닭백혈병	• 체중감소, 만성쇠약, 복부종창, 간종대, 설사변, 간·비장·신장·난소·소장 등에 종양성 병변, F낭의 종대 및 백색결절이 형성	• 16주령 성계에서 산발적 발생
	육종 바이러스증	• 식욕감소, 설사, 체중감소, 내부장기에 만성 종양	• 16주령 성계에서 산발적 발생
신경증상 (두부염전, 회전운동, 간대성 경련, 두부진전, 마비)	조류 인플루엔자	• 저병원성 :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 감소 • 고병원성 : 닭은 거의 100% 폐사, 안면종창, 호흡기증상, 비늘·육수 청색증, 산란율 저하	• 급성은 특별한 소견없음
	뉴캐슬병	•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율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중추이상의 닭 증상 발현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신경증상 (두부염전, 회전운동, 간대성 경련, 두부진전, 마비)	뇌연화증	• 다리마비, 목뒤틀림, 머리를 다리에 끼고 뒷걸음질 칩	• 20~30일령 다발
	닭뇌척수염	• 부화 후 1주 이내 다리마비, 두경부의 진전 등 신경증상, 산란저하, 2~3주령 이상의 닭은 임상증상 없음	• 육안적 병변 거의없음
	보툴리즘 중독증	• 다리·날개 마비, 목을 떨어뜨리고 졸음, 등 부위의 탈우, 홍조, 급사, 황백색설사	
안면부종 (눈물, 비즙, 종창)	CRD	• 기침, 호흡곤란, 안검·안면 종창, 관절종창, 비강 안외동에 치즈양 물질	
	코라이자	• 안면부종, 결막염, 수양성·농양 비즙, 육수의 부종성종창, 설사 또는 녹색변, 개구호흡, 연란, 혈종란	
두부 청색증	조류 인플루엔자	• 저병원성: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 감소 • 고병원성: 닭은 거의 100% 폐사, 안면종창, 호흡기증상, 비슬·육수 청색증, 산란율 저하	• 급성은 특별한 소견 없음
	흑두병	• 식욕감퇴, 담갈색·황갈색 반투명한 수양성 설사	
	심장질환	• 특이소견 없음,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시 흰색·회백색의 괴사병변, 점상·선상의 출혈반점	
호흡곤란 (개구호흡, 헐떡거림, 기침, 비루)	뉴켓슬병	• 재채기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 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율 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전염성 기관지염	• 호흡기증상, 연각란, 무각란, 기형란, 산란 저하, 신장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 호흡곤란·개구호흡, 거의 100% 이병율, 10~40% 폐사율, 산란저하, 후두염·기관염, 기관내 출혈과 노란색의 위막 관찰	
	곰팡이성 폐렴	• 건성기관지 라셀음, 개구호흡, 백색설사, 전신성 진전, 기낭 비후, 간·신장·비장·난소·뇌 안구에 결핵결절양 병소 형성	
	습성 계두	• 입안·인두·후두·기관에 두창, 기관점막에 위막이 형성되어 호흡곤란, 질식사	• 위막 박리가 어려움

III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피부병변 (눈 주위, 부리, 하악 피부발두, 가슴, 배, 날개의 종창, 장약성심출물, 딱지, 악취, 탈모, 피하출혈, 궤양)	건성 계두	• 털없는 부위(눈·벼슬·육수·다리)에 가피 및 두창 형성, 산란율 감소	
	포도상구균증	• 내장·피부 등 국소조직의 농양형성, 화농성 관절염 및 건활막염, 패혈증, 날개·흉부·복부의 피하에 포도주양의 심출액	
	외부 기생충	• 불면, 흡혈에 의한 빈혈, 발육지연, 체중감소, 산란율 저하	
	닭백혈병	• 체중감소, 만성쇠약, 복부종창, 간종대, 설사변, 간·비장·신장·난소·소장 등에 종양성 병변, F낭의 종대 및 백색결절이 형성	• 18주령이상의 성계 증상 발현
	육종 바이러스증	• 식욕감소, 설사, 체중감소, 내부장기에 만성 종양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중추이상의 닭 증상 발현
복부팽만 (복수, 간장위축, 복막염)	복수증	• 복부팽대, 간장위축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항문주위 무모오염 (설사, 연변, 혈변)	뉴켓슬병	• 재채기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 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율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전염성 F낭병	• 침울, 식욕부진, 깃털 빠짐, 졸음, 유백색·녹색 수양성설사, 이환율 거의 100%, 면역억제	• 3~6주령의 닭에서 발병
	추백리	• 백색설사, 3주이내 감염시 폐사율 100%, 산란율저하, 비장종대, 신장중출, 요산염	• 부화 1주일 이내에 발생
	콕시듐증	• 급성형: 원기소실, 식욕부진, 혈액성설사, 빈혈 • 아급성: 점액성·혈액성 설사, 빈혈, 탈수 • 만성형: 수양성 설사, 증체를 저하	
	흑두병	• 식욕감퇴, 닭갈색·황갈색 반투명한 수양성 설사	

라. 조류 부위별 이상소견에 따른 질병 감별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피부 피하근육 (피부출혈, 혈관중, 궤양, 피부염증, 부종, 딱지, 젤라틴물질, 치즈양물질, 삼출물, 피하 및 근육출혈)	닭백혈병	• 체중감소, 만성쇠약, 복부종창, 간종대, 설사변, 간·비장·신장·난소·소장 등에 종양성 병변, F양의 종대 및 백색결절이 형성	• 16주령 성계에서 산발적 발생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포도상구균증	• 내장·피부 등 국소조직의 농양형성, 화농성 관절염 및 건혈막염, 패혈증, 날개·흉부·복부의 피하에 포도주양의 삼출액	
	전염성 F낭병	• 침울, 식욕부진, 깃털 빠짐, 줄음, 유백색·녹색 수양성설사, 이환율 거의 100%, 면역 억제	• 3~6주령의 닭에서 발병
	류코 사이코준증	• 병아리 : 객혈, 급사, 여러부위 출혈, 암자색 피부, 눈 주변 출혈, 식욕 부진 • 성계 :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 빈혈, 녹변, 산란 감소 또는 정지	• 닭겨모기 전파
복부 (복부팽대)	복수증	• 복부팽대, 간장위축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기관지 (염증, 충혈, 출혈, 염증성 삼출물)	조류 인플루엔자	• 저병원성 :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 감소 • 고병원성 : 닭은 거의 100% 폐사, 안면종창, 호흡기증상, 비슬·육수 청색증, 산란율 저하	• 급성은 특별한 소견없음
	전염성 기관지염	• 호흡기증상, 연각란, 무각란, 기형란, 산란 저하, 신장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 호흡곤란·개구호흡, 거의 100% 이병율, 10~40% 폐사율, 산란저하, 후두염·기관염, 기관내 출혈과 노란색의 위막 관찰	
	뉴캐슬병	• 여러 복의 자돈에서 발병, (1~3일령은 한복중 80%이상 발생), 0~25% 폐사, 생시에 심한 진전, 3주령까지는 회복, 잠잘 때는 무증상	• 높은 폐사
	CRD	• 기침, 호흡곤란, 안검·안면 종창, 관절종창, 비강 안외동에 치즈양 물질	
	곰팡이성 폐렴	• 전성기관지 라셀음, 개구호흡, 백색설사, 전신성 진전, 기낭 비후, 간·신장·비장·난소·뇌 안구에 결핵결절양 병소 형성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기낭 (염증, 혼탁, 유착, 비후)	마이코플라스마증	• 기침, 호흡곤란, 안검·안면 종창, 관절종창, 비강 안외동에 치즈양 물질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각종 호흡기	• 기관의 점액물질 증가 및 혼탁, 기낭 염증, 폐의 충·출혈 및 폐렴	
폐 (종대, 염증, 출혈성수종결절, 적갈색 폐)	복수증	• 복부팽대, 간장위축	
	순환기 장애	• 혈관 확장 혹은 혈전, 혈관 충혈 및 울혈	
	곰팡이성 폐염	• 건성기관지 라셀음, 개구호흡, 백색설사, 전신성 진전, 기낭 비후, 간·신장·비장·난소·뇌 안구에 결핵결절양 병소 형성	
	카타르성 폐염	• 다량의 맑은 점액성 분비물 존재	
	뉴캐슬병	• 재채기 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율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조류 인플루엔자	• 저병원성 :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 감소 • 고병원성 : 닭은 거의 100% 폐사, 안면종창, 호흡기증상, 비슬·육수 청색증, 산란율 저하	• 급성은 특별한 한 소견없음
심장 (심막염, 심낭외막유착, 심낭수종대, 섬유소, 결절, 지방조직 점상출혈, 울혈, 충혈, 혈액저류)	가금티푸스	• 검붉은색 비슬, 녹황색설사, 식욕부진, 갈증, 체온상승과 호흡 촉박	
	추백리	• 백색설사, 3주 이내 감염시 폐사율 100%, 산란율저하, 비장종대, 신장충혈, 요산염	• 부화 1주일 이내에 발생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중양성 질병	• 식욕감소, 설사, 체중감소, 내부장기에 만성 종양	
	뉴캐슬병	• 재채기 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율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식도·소낭 (결절, 염증, 점막비후, 위막, 황색의 과립상 물질)	비타민 A결핍증	• 쇠약, 우모가 처지며, 보행 장애. 눈에 크립 모양의 삼출물이 보임	
	캔디다증	• 수양성설사, 탈수, 발육부진, 식욕감퇴, 빈혈, 개구복식호흡, 구강·인두·식도·소낭 카타르스염증, 감염된 점막 회백색 위막	
선 위 (총혈, 출혈, 비대)	뉴켓슬병	• 재채기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울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종양성 질병	• 식욕감소, 설사, 체중감소, 내부장기에 만성 종양	
	전염성 F낭병	• 침울, 식욕부진, 깃털 빠짐, 졸음, 유백색· 녹색 수양성설사, 이환율 거의 100%, 면역 억제	• 3~6주령의 닭에서 발병
	가금티푸스	• 검붉은색 배설, 녹황색설사, 식욕부진, 갈증, 체온상승과 호흡 촉박	
근 위 (각질층비후, 박리불능, 점막비후, 미란, 궤양)	영양성 질병	• 비타민A 결핍 : 쇠약, 우모가 처지며, 보행 장애. 눈에 크립 모양의 삼출물이 보임 • 비타민D 결핍 : 구루병, 산란정지, 다리마비 • 비타민K 결핍 : 혈액응고 부진	
	궤양 유발물질	•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 부패되거나 산패된 사료	
간 장 (위축, 종대, 염증, 혈반, 혈종, 연화, 경화, 결절, 황색화, 청색화, 파열, 출혈, 백색괴사소, 표면불규칙, 섬유소 유착, 치즈양삼출물, 위막)	복수증	• 복부팽대, 간장위축	
	닭백혈병	• 체중감소, 만성쇠약, 복부종창, 간종대, 설사변, 간·비장·신장·난소·소장 등에 종양성 병변, F낭의 종대 및 백색결절이 형성	• 16주령 성계 에서 산발적 발생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 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중추이상의 닭 증상 발현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살모넬라증	• 회백색설사, 원기가 없고 졸음, 결막염, 편측성 실명, 장염, 심낭염, 폐렴, 비장· 신장종대, 간 괴사, 맹장 내 치즈양 물질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간장 (위축, 종대, 염증, 혈반, 혈종, 연화, 경화, 결절, 황색화, 청색화, 파열, 출혈, 백색괴사소, 표면불규칙, 섬유소 유착, 치즈양삼출물, 위막)	흑두병	• 식욕감퇴, 담갈색·황갈색 반투명한 수양성 설사	• 맹장에 병변 있음
	닭결핵병	• 체중감소, 침울, 녹·황색 설사, 관절이 붓고 비슬 창백, 간·비장 병변	
	지방간증	• 갑작스런 산란율 저하, 가끔 비슬이 창백해 지나 보통 건강하게 보임, 증상 없이 급사	
	파스츄렐라증	• 기침, 재채기, 녹변, 눈·비강 분비물, 간·심장섬유소성 삼출물	
	포도상구균증	• 내장·피부 등 국소조직의 농양형성, 화농성관절염 및 건혈막염, 패혈증, 날개·흉부·복부의 피하에 포도주양의 삼출액	
담낭 (종대, 파열, 피막유착)	살모넬라증	• 회백색설사, 원기가 없고 졸음, 결막염, 편측성 실명, 장염, 심낭염, 폐렴, 비장·신장종대, 간 괴사, 맹장 내 치즈양 물질	
	장염	• 용모팽창 및 종창, 상피세포 탈락, 점막하층 부종, 다형 핵 백혈구 침윤	
비장 (종대, 피막비후, 연화, 위축, 회백색 점상병소)	닭백혈병	• 체중감소, 만성쇠약, 복부종창, 간종대, 설사변, 간·비장·신장·난소·소장 등에 종양성 병변, F낭의 종대 및 백색결절이 형성	• 16주령 성계에서 산발적 발생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중추이상의 닭증상발현
	살모넬라증	• 회백색설사, 원기가 없고 졸음, 결막염, 편측성 실명, 장염, 심낭염, 폐렴, 비장·신장종대, 간 괴사, 맹장 내 치즈양 물질	
	닭결핵병	• 체중감소, 침울, 녹·황색 설사, 관절이 붓고 비슬 창백, 간·비장 병변	
신장 (종대, 종양, 낭종, 백색병소, 회백색 침착물)	닭백혈병	• 체중감소, 만성쇠약, 복부종창, 간종대, 설사변, 간·비장·신장·난소·소장 등에 종양성병변, F낭의 종대 및 백색결절이 형성	• 16주령 성계에서 산발적 발생
	마렉병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중추이상의 닭증상발현

증상	질병명	특징	비고
신장 (종대, 종양, 낭종, 백색병소, 회백색 침착물)	전염성 F낭병	• 침울, 식욕부진, 깃털 빠짐, 졸음, 유백색·녹색 수양성 설사, 이환율 거의 100%, 면역 억제	• 3~6주령의 닭에서 발병
	전염성 기관지염	• 호흡기증상, 연각란, 무각란, 기형란, 산란 저하, 신장염	
	대사장해	•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중독증	
	요산 침착증	• 회백색 설사, 내장 및 관절 요산 침착	
생식기 (난소위축, 난관염, 난소출혈, 난관위축)	추백리	• 백색설사, 3주이내 감염시 폐사율 100%, 산란을 저하, 비장종대, 신장출혈, 요산염	• 부화 1주일 이내에 발생
	전염성 기관지염	• 호흡기증상, 연각란, 무각란, 기형란, 산란 저하, 신장염	
	뉴캐슬병	• 재채기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을 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대장균증	• 패혈증, 육아종, 기낭염, 장염, 수란관염, 관절염, 심낭염, 간포막염	
	조류 인플루엔자	• 저병원성 :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을 감소 • 고병원성 : 닭은 거의 100% 폐사, 안면종창, 호흡기증상, 비슬·육수 청색증, 산란을 저하	• 급성은 특별한 소견 없음
소장·대장 (염증, 출혈, 출혈, 점액, 회색반점, 팽만, 궤양, 괴사 기생충)	록시듬증	• 급성형 : 원기소실, 식욕부진, 혈액성설사, 빈혈 • 아급성 : 점액성·혈액성 설사, 빈혈, 탈수 • 만성형 : 수양성 설사, 증체율 저하	
	뉴캐슬병	• 재채기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을 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전염성 F낭병	• 침울, 식욕부진, 깃털 빠짐, 졸음, 유백색·녹색 수양성설사, 이환율 거의 100%, 면역 억제	• 3~6주령의 닭에서 발병
	회충증	• 점액변, 빈혈, 우모 오염, 발육 정체, 전신적 영양 장애	

Ⅲ 축종별 질병 감별 진단 요령

증 상	질병명	특 징	비 고
맹 장 (충혈, 출혈, 점막황색화, 괴사소)	콕시딕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형 : 원기소실, 식욕부진, 혈액성설사, 빈혈 • 아급성 : 점액성 · 혈액성 설사, 빈혈, 탈수 • 만성형 : 수양성 설사, 증체율 저하 	
	뉴캐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채기 등 호흡기증상, 수양성설사, 녹변, 목뒤틀림, 다리·날개 마비 등 신경증상, 산란율저하, 난질저하, 기관·장관 등 조직 출혈 	• 높은 폐사
	흑두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욕감퇴, 담갈색 · 황갈색 반투명한 수양성 설사 	
F낭 (종대, 충혈, 출혈, 위축, 내부점막면 변화)	전염성 F낭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울, 식욕부진, 깃털 빠짐, 줄음, 유백색 · 녹색 수양성설사, 이환율 거의 100%, 면역 억제 	• 3~6주령의 닭에서 발병
	종양성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욕감소, 설사, 체중감소, 내부장기에 만성 종양 	
신 경 (좌골 신경종대)	마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쇠약, 다리·날개·목의 마비, 모근부·피부(모낭)·눈 종양소 형성 	• 중추이상의 닭 증상 발현
골 격 (흉골만곡)	구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름발이, 뻣뻣한 다리, 발육지연, 다리뼈 끝 종대, 무릎종대, 늑골은 염주알 모양 	
	척추 굴곡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립불능, 정상적인 체위 유지 힘들 등이 굽어 있음 	
	회농성 척추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립불능, 척추 염증 	

IV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1.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p135 참조)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 소독 시설 및 설비(p139, p151 참조)

-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가축사육시설 300㎡ 이하 제외)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 ※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00㎡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소독기구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역학조사 협조의무 (p137 참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기록관리 의무 (p138)

● 가축의 거래 시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법 제16조)

※ 거래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함.(법 제17조제5항)

-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전염병 전파차단

■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전염요인

- 가축의 구입, 입식 및 이동과 판매 등
- 농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 및 축산관련 기자재 등
 - 가축 중개상인, 인공수정사, 수의사, 컨설팅 요원 그리고 사료,약품, 톱밥, 분뇨 운송 관련 차량과 운전기사 등
- 열처리 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사료(잔반) 급여 및 농장 내 육류나 축산식품의 반입
- 파리, 모기, 진드기, 쥐, 개, 고양이, 철새 및 야생동물 등
- 정액, 오염된 물, 사료 및 공기(바람)

■ 정액매개 전파가능 전염병

① 소정액으로 전파가능 전염병

- Bovine herpesvirus type 1
- Bovine leukemia virus(소백혈병)
- Bluetongue virus(블루팅병)
- Bovine viral diarrhea virus(소바이러스성설사병)
- Foot and mouth disease virus(구제역)
- Lumpy skin disease virus(럼프스킨병)
- Ephemeral fever virus(소유행열)

- Akabane virus(소아까바네병)
- Para influenza virus 3(소파라인플루엔자 3 감염증)
-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소전염성비기관염)
- Trichomonas foetus(트리코모나스병)
- Campylobacter fetus(소생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 Brucella abortus(소브루셀라병)
- Leptospira spp.(렙토스피라병)
- Haemophilus somnus(헤모필러스 솜너스 감염증)
- Mycoplasma and Ureaplasma spp.(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 Chlamydia psittaci
- Mycobacterium spp.
- Listeria monocytogenes(리스테리아병)
- Streptococcus spp.(Beta hemolytic strains)(연쇄상구균증)
- Staphylococcus aureus(포도상구균증)
- Corynebacterium pyogenes
- Corynebacterium renale(소의 방광염 및 신우신염)
- Pseudomonas aeruginosa
- Pasteurella spp.(파스튜렐라 폐렴) 등

② 돼지정액으로 전파가능 전염병

- Aujeszky's disease virus(오제스키병)
- Swine fever virus(돼지열병)
- African swine fever virus(아프리카 돼지열병)
-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돼지수포병)

- Foot and mouth disease virus(구제역)
- Teschen virus(돼지텃센병)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돼지전염성위장염)
- Leptospira(렘토스피라병)
- Brucella suis(돼지브루셀라병)
- Mycobacterium bovis and avium(결핵)
- Campylobacter(캠필로박터감염증)
- Mycoplasma/Ureaplasma 등

③ 면양 및 산양정액으로 전파가능 전염병

- Foot and mouth disease(구제역)
- Rinderpest virus(우역)
- Sheep and goat pox virus(양두, 산양두)
- Bluetongue viurs(블루팅병)
- Rift valley fever virus(리프트계곡열)
- Wesselbron disease virus
- Nairobi sheep disease virus(나이로비 양병)
- Brucella spp.(브루셀라병)
- Actinobacillus seminis
- Salmonella aborus ovis(sheep)
- Corynebacterium renale
- Mycobacterium tuberculosis(결핵)
- 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요네병)
- Mycoplasma spp.(마이코플라즈마병)

- Leptospirosis(렙토스피라병)
- Campylobacter fetus, venerealis(캠필로박터감염증)
- Chlamydia psittaci
- Listeria monocytogenes(리스테리아병)
- Border disease virus(보더병) 등

▣ 차단방역이란?

병원체가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강한 가축구입, 출입자와 차량 통제, 철저한 소독으로 차단하여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예방조치로써 축주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역활동임.

▣ 차단방역 기본수칙

-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의 철저한 확인과 소독, 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방역교육을 실시
-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살충·구서를 철저하게 실시
- 사육중인 가축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읍/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받음.

가축구입 및 입식요령

- 외부에서 가축을 구입 또는 입식할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부화장)에서 확인하고 구입함.
 - 여러 농장으로부터 분별없이 구입하면 각 농장의 질병을 본인 농장에 모두 불러들이는 불행이 초래됨.
- 생산 또는 사육 농장이 불분명한 가축은 구입하지 말아야함.
 - 특히 증개상인을 통한 떨어는 가축구입은 위험할 수 있음.
- 가축의 구입 전에 반드시 구입농장과 질병상황, 전염병검사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함.
 - 특정질병의 검사나 예방접종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입한 가축은 일정기간(약 2주) 격리 사육하면서 질병 등 이상 징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농장 내 가축과 합사토록 함.
 - 혹시 특정 전염병이 잠복해 있는 가축을 구입한 후 바로 합사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됨.

농장 내·외부의 방역위생관리

〈차량 및 기구〉

- 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외부 방문 차량은 농장외부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장내부로 출입(도입)하는 차량은 농장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 또는 분무 소독기 등을 이용하여 차바퀴, 상차대 등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제한된 구역에만 출입토록 함.

- 소독제로는 4급 암모늄제제(저멕스, 가드올, 파콤, 사라킬 등) 등 차량 및 기구를 부식하지 않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함.

〈사람(축주는 물론 모든 방문객과 운전기사 포함)〉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손, 신발, 의복 등에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불가피하게 농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목욕 후 새 옷으로 갈아 입음.
- 농장 입구에서 소독된 방역복, 장화(방역용 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함.
- 필요한 축사(또는 장소)에만 출입하며 출입 시 마다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에 신발을 담가 소독을 실시함.
- 장화나 신발소독은 팜플루이드, 저미사이드, 버콘에스, 하리솔 등 유효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음.
- 도축장을 출입한 사람은 2~3일간, 그리고 발병 농장을 방문한 사람은 2주간 타 농장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함.
-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여러 농장 방문을 금지함.
- 일단 사용한 방역복이나 덧신은 해당 농가로 하여금 소각토록 하거나 또는 비닐봉지에 수거한 후 소독 폐기토록 함.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파리, 모기 등 곤충〉

-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파리, 모기, 진드기 등도 각종 병원체를 옮기므로 구서 및 구충대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3. 소독실시

❏ 소독실시 관련규정

- 가축사육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 ※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철저(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됨.

❏ 일반적인 소독 순서 및 요령

〈소독전 청소〉

- 농장에 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 분변, 오줌, 사료 등 유기물이 포함된 물질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하여야 함.
-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위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될 경우
 - 분변, 오줌, 사료 등 오염물질을 청소전에 2% 가성소다액 등으로 철저히 소독하여 병원체가 퍼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물청소 및 소독〉

-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축사의 천정, 벽 및 바닥의 오물을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소독약을 충분히 살포하도록 함.
- 소독 약제별로 차이가 있으나 시멘트나 목재 등 침투성 표면에는 평방미터당 200~300ml를, 그리고 플라스틱, 금속 등 비침투성 표면에는 평방미터당 100ml의 소독조를 살포하여 충분한 시간(약 30분) 동안 반응시킴.
- 소독약을 수세하고 건조시킨 후 가축을 입식시키거나 사용함.
 - 축사나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물청소가 불가능 할 경우 소독액을 2번 살포하거나, 훈증소독 또는 화염소독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음.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
- 축사 출입 시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
-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함.
-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 소독대상 및 소독제의 종류

〈소독조〉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조는 차바퀴가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2~3일 간격으로 소독수를 갈아 주어야 함.

- 축사입구 소독조에는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2% 글루타알데히드 등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차량 및 기자재〉

- 물청소 후 바로 소독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음.
- 버콘에스, 2% 복합구연산제제, 2% 차아염소산제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성소다 등 강알카리제제는 부식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축사바닥 및 토양〉

- 가축이 사육되지 않는 축사바닥이나 토양(도로, 운동장 등)은 2% 가성소다나 생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함.
-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축사바닥은 버콘에스, 2% 복합구연산제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생석회 사용요령〉

- 생석회는 동물용의약품이 아니나 산도(pH)가 11~12의 강염기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면 고열(섭씨 200℃ 정도)을 내는 화학약품으로 미생물 소독에 효과가 있음.
- 축사바닥을 소독시 생석회 5%(물 19바가지에 생석회 1바가지를 서서히 넣어 녹임) 용액을 충분히 살포함.
- 토양 소독 시 우선 물을 충분히 뿌린 후 생석회를 평당 1kg(평방m당 300g)정도 뿌려줌.
- 사체 매장 시는 사체위에 생석회 액을 뿌려줌.(소 4두 또는 돼지 8두장 3~3.5말 정도)

〈생석회 사용시 주의사항〉

-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물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면 화재위험이 있음.
- 사용시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도로나 농장입구 소독조에는 적합하지 않음.

〈분변 등 오물 소독〉

- 평상시에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축산분뇨처리요령에 따라 수거, 처리하되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함.
- 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설사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과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소독작업을 해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반출해서는 안 됨.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대부분의 소독제는 인체에 접촉하면 해로우므로 소독할 때에는 모자, 보안경, 마스크, 장화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함.
- 소독약품은 첨부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 “예” 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차량 외부소독은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 등 오염가능 부분을 소독할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 소독제 성분별 적용대상 및 특징

분류	성분명	주요적용대상	사용농도	작용시간	소독제의 특징
염기제	가성소다	사체, 축사 환경, 물탱크, 의복	2%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이 있는 곳에도 소독효과를 발휘 • 매우 효과적이나 차량등 금속 부식성 • 눈과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사용시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 강산과 접촉을 피할것 • 가격저렴
	탄산소다	사체, 축사, 환경, 물탱크	4%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이 있는 곳에도 사용 가능 • 알루미늄계통에는 사용하지 말 것
산성제제	구연산	사체, 사람, 분뇨, 배설물, 주택, 차량, 기계류, 의복	0.20%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력이 약하므로, 단단한 표면에만 사용 (중성계면활성제를 원액의 1/1000로 희석하여 혼합 사용) • 사람, 축제, 의복 소독에 적용 가능 • 구제역 바이러스에 유효함
산화제	차아염소산	축사, 주택, 의류	2~3% 유효염소	10~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 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 유기물 존재 시 소독력 저하 •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 • 눈과 피부에 독성이 있음
	이소시안산나트륨	축사, 주택, 의류	0.2~0.4%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 우유 등이 있는 곳에 사용금지 • 반드시 사용 전에 청소 • 정제이므로 사용 직전에 물에 희석사용
	버콘에스	기계류, 차량, 의류, 소독조	2%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하게 적용가능 • 축체에 사용금지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가스	전기기구, 벧짚, 건초	가스	15~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기를 피해야 하는 자동차 내부, 전기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하며, 공간을 완전밀폐후 하룻밤 정치 • 소독 후 완전 환기 철저 • 유독성의 가스가 외부 방출 금지 주의
	글루타알데히드	축사내외부, 차량, 소독조	2%	10~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시 장갑, 의복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사람) • 적당한 환기조건하에서 사용 •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실온 보관
	포르말린	사료, 의복	8%	10~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성 가스를 배출 사용자 주의
비누 및 세정제	비누 및 세정제	축사, 인체, 주택, 차량, 의복	적당량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목적은 오염된 부위의 유기물 제거

나. 조류인플루엔자 적용가능 소독제의 국내 허가제품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p>〈염기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석회 • 강력크리너 • 세이프존 • 부루사이드 • 소다졸 • 슈퍼크린 • 참신 카본-에스 • 카니발 • 파워존 골드 • G.N.C-FIELD 	<p>pH 11~12 수산화나트륨 300, 페놀100 수산화나트륨 500 탄산나트륨 995 수산화나트륨 50% 탄산나트륨 998 탄산나트륨 995 수산화나트륨 50% 탄산나트륨 50g 등 탄산칼륨 283g</p>	<p>(동물약품이 아님) 중앙백신연구소 (주)우성양행 남전물산 녹십자수의약품 삼양애니팜 참신약품 동방 넬바이오텍 홍진테크</p>	<p>토양, 바다, 사체 〈공통〉 계사, 시설, 폐수, 분변 기계 및 차량, 의복 ※사용금지 : 알루미늄 및 합 금제</p>
<p>〈기타 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콘-에스 • 저미사이드 • 프로텍트-M • 트리플 G • 쓰리캡 • 디사이드 • 제이맥스 • 에스라인 • 바이시드산 • 불칸 • 제로킬 • 비바존 • 프로텍트T • 쿠루퍼 • 청정농장 • 하이캡 • 레드카드 • 룡라이프250S • 그린업 • 라이프자켓 • 울트라시안산콤프 • 파워사이드 • 맥사이드 • 하이크린 • 판킬 • 프로텍트 • 바이킬 • 하이퍼록스 • 블루스카이 • 바이오시드 30 • 스누캡 • 씨투스 	<p>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50g 등 3종염500g, 농금산15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00g 등 3종염500g, 농금산120g 등 3종염70g, 농금산300g 등 HBTA 220g 등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3종염500g, 시안산나트륨50g 과산화수소 280g 등 과산화수소 275g, 과산화초산 58g, 유효요오드 2.75% 등 사과산100g, SDS50g, 구연산400g 구연산400g, Sodium lauryl sulfate 600g</p>	<p>바이엘코리아 남전물산 동부한농 참신약품 알엔엘생명과학 코파벤스페셜 진우약품 이엘티사이언스 삼양애니팜 이화팜텍 제일바이오 삼우메디안 동부한농 이화팜텍 한동 녹십자수의약품 이엘티사이언스 바이엘코리아 성원 고려비엔피 이화팜텍 동원파마 신일바이오젠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동부한농 서울신약 바이엘코리아 장백베트켄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알엔엘생명과학 빅솔</p>	<p>〈공통〉 계사, 시설, 숙소</p>

IV

IV 가축사육 능가 방역준수 사항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기타 제제> • 허브크린 • 그린존-A • 세니클린	구연산500g, Thyme extract, Oregano extract 사과산 50g, 자몽종자추출물 6g 등 구연산 300g, 사과산 50g 등	(주)남전물산 알엔엘생명과학 이엘티사이언스	계사, 시설, 축소
<시안산나트륨제> • 크렌테 • 바이오크론 • 라이프가드정 • 바이오크론500 • 바이오크론정 • 신일클로지100 • 신일클로지50 • 신일클로-T • 애니가드 • 울트라시안산100 • 참신시안나100 • 참신시안나50 • 퀘사이드 • 이소시안산100 • 크로시안 • 크린월드 • 샤크론 • 코미킹 • 클린포스 • 크린가드 • 슈퍼크론 • 월로벳이소클린	(NaDCC)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5/13(g)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500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625mg/g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5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3.3/5(g)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500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990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5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990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990 등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5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99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75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우성양행 유니바이오테크 고려비엔피 유니바이오테크 유니바이오테크 신일바이오젠 " " 동방 이화팜텍 참신약품 " 제일바이오 우성양행 우진비엔지 한동 코미팜 " 유니바이오테크 성원 한국썸벳(주) 유한양행	<공통> 계사, 시설, 축소, 의복
<차아염소산염> • 제일락스 • 지-락스 • 하라솔 • 하이락스 • 안티러스액 • 에스에프가라솔 • 진크린 • 크린솔 • 파워락스 • 월로벳 하라솔	차아염소산나트륨 40 차아염소산나트륨 750 등 차아염소산나트륨 990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차아염소산나트륨 990ml	제일바이오 녹십자수의약품 유한양행 진우약품 삼양애니팜 에스에프 진케미칼 동화산업 대한뉴팜 이화팜텍	<공통> 계사, 시설, 축소 의복
<알데히드제제> • 구루탈 액 • 노로클린스	(G=글루타알데히드, F=포르말린) G 100 G(50%) 300	삼양애니팜 화성동물약품	※동물과 사람에게 사용금지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알데히드제제〉	(G=글루타알데히드, F=포르말린)		※동물과 사람에 사용금지
• 라이소벤비씨	G(10%) 75, F(10%) 180	이화팜텍	
• 라이프라인	G 50, F 210 등	고려비엔피	
• 멀티싸이드	G(50%) 300 등	세아엘텍	
• 썬사인	G(50%) 140, F 157	장백베트캠	
• 슈퍼싸이드	G(50%) 300 등	동원신약	
• 스톱파	G 11, F 6 등	다원케미칼	
• 아미크로	G 100	제일바이오	
• 아웃점	G 20, F 11	화성동물약품	
• 알데콜03	G(50%) 450, F(37%) 450	동원신약	
• 올비벤-알씨	G(10%) 150, F(10%) 180	이화팜텍	
• 싸이드-킬	G 150	녹십자수의약품	
• 코만도	G 12-13%(w/w)	대동신약	
• 킹싸이드	G 150	대한뉴팜	
• 태고도르 73	G 50, F 75	이화팜텍	
• 터미네이터	G 150	이글벳	
• 티에이치4 플러스	G 63 등	바이오베트	
• 글루타-에프	G 100	삼우메디안	
• 네부톨	G 75	메리알코리아	
• 라이프라인-지에이	G 100	고려비엔피	
• 메디싸이드	G 150 등	민우	
• 브롬가드	G 200 등	대성미생물	
• 바라싸이드	G 100	중앙바이오텍	
• 바이랙스 200	G 65	누리벳	
• 바이제로	G(50%) 150, F(35%) 258	코파벤스페셜	
• 바이크린	G(50%) 200	코파벤스페셜	
• 썬사인-SF	G(10%) 150, F(10%) 180	장백베트캠	
• 슈퍼글루	G 100	신일바이오젠	
• 에프엠 킬	G(50%) 200, F(35%) 30	성원	
• 올바이-지큐	G 150 등	한동	
• 올싸이드	G(50%) 300 등	동화축산	
• 옴니싸이드	G 150 등	쉐링푸라우코리아	
• 옴니졸	G 100	녹십자수의약품	
• 울트라올비벤	G 110, F 66	이화팜텍	
• 유한글루타알데히드	G 100	유한양행	
• 지피씨8	G 120	한국화이자	
• 팜블럭	G 200	코미팜	
• 팜키파-1	G 100	동부한농화학	
• 퍼펙트존	G 100	다원케미칼	
• 한풍 글루드액	G 100	한풍산업	
• 히튼 비루사이드	G 75	대호	
• 알데시드	G 100	남전물산	
• 하이프렐바 SF	G 130g 등	대동신약	
• 살모제로 액상	F 300	대호	

IV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1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포르말린제제〉 • 케이세븐 • 폼마스타	파라포르말린 245g/700g 파라포르말린 370g/kg	신한바이오켄 서일베트	〈공통〉 전기 기기
〈계면활성제〉 • 벤코솔 • 라이소탄 • 벤잘크린 • 파워크린 • 썸벤벤잘코늄 • 팀센 • 아스토프 • 크레오콤플렉스 • 크레오시드 • 팜세이프 • 슈퍼-스톱 • 발닥크 • 로알크린 • 프리존 • 부롬셉트10%액 • 부롬셉트50%액 • 부롬셉트5%액 • 팜가드 • 올스톱 • 파콤에이 • 에이-플러스 • 가드올-슈퍼 • 크린아킬 • 뉴파고솔 • 히든DDC 10 • 크린엘 • 저맥스에스 • 바이오센트리피 에프다6 • 네오텍 • 비티시에이 • 아그리메이저 • 인포스 • 파스텐 • 썬라텍 • 하이킬 • 바이로시드	Benzalkonium chloride 200 Benzalkonium chloride 250 Benzalkonium chloride 100 Benzalkonium chloride 200 Benzalkonium chloride 100 Benzalkonium chloride 400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50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Octyldecyldimethylamm, chloride 50 등 Octyldecyldimethylamm, chloride 30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Didecyldimethylamm, bromide 100 Didecyldimethylamm, bromide 500 Didecyldimethylamm, bromide 50 Alkyldimethylbenzylamm, chloride 100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Octyldecyldimethylamm, chloride 22.5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Alkylbenzylidimethylamm, chloride 32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Octyldecyldimethylamm, chloride 50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00 Didecyldimethylamm, chloride 125 Alkyldimethylbenzylamm, chloride 100 Quaternary amm, chloride 230 등 Quaternary amm, chloride 56.2 등 Quaternary amm, chloride 56.2 등 Lauryldimethyl enzyllamm, chloride 20 등 Didecyldimethylamm, chloride 50 Alkylpoly-amino-ethylglycine HCl 35g 등 복합4급암모늄100, 구연산200 등 복합4급암모늄100, 구연산200 등 복합4급암모늄248.6g, 글루타알 데히드107.25g 등	중앙백신연구소 이화팜텍 에스에프 에스에프 한국썸벤 씨에이씨 유한양행 서울신약 서울신약 우성양행 신일바이오켄 고려비엔피 고려비엔피 삼양애니팜 대성미생물 대성미생물 대성미생물 성원 성원 삼우메디안 삼우메디안 한풍산업 한풍산업 대성미생물 대호 오창무역 바이엘코리아 신한바이오켄 케미텍인터내셔널 시흥용사춘안홍합성 화성동물약품 이엘티사이언스 녹십자수의약품 케미텍인터내셔널 성원 씨티씨바이오	〈공통〉 계사, 시설, 숙소, 기계, 차량, 의복

- 상기 품목에 대한 정확한 용법·용량, 적용대상 및 그에 따른 희석비율은 반드시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시거나 제조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가축사육 농가 방역준수 사항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1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알데히드제제> • 구루탈 액 • 노로클린스 • 라이소벤비씨 • 라이프라인 • 멀티싸이드 • 썬사인 • 슈퍼싸이드 • 스톱파 • 아미크로 • 아웃점 • 알데콜03 • 올비벤-알씨 • 싸이드-킬 • 코만도 • 킹싸이드 • 태고도르 73 • 터미네이터 • 티 에이치4 플러스 • 바이로시드	(G=글루타알데히드, F=포르말린) G 100 G(50%) 300 G(10%) 75, F(10%) 180 G 50, F 210 등 G(50%) 300 등 G(50%) 140, F 157 G(50%) 300 등 G 11, F 6 등 G 100 G 20, F 11 G(50%) 450, F(37%) 450 G(10%) 150, F(10%) 180 G 150 G 12-13%(w/w) G 150 G 50, F 75 G 150 G 63 등 G107.25g, 복합4급암모늄248.6g 등	삼양약화학 화성동물약품 이화팜텍 고려비엔피 세아엘텍 장백베트캠 동원파마 다원케미칼 제일바이오 화성동물약품 동원파마 이화팜텍 녹십자수의약품 대동신약 대한뉴팜 이화팜텍 이글벳 바이오베트 씨티씨바이오	<공통> 축사내부, 기구, 시설, 소독조 등
<포르말린제제> • 케이세븐 • 폼마스타	파라포르말린 245g/700g 파라포르말린 370g/kg	신한바이오캠 서일베트	<공통> (밀폐공간에서의) 축사, 벧짚, 건조, 차량내부 소독
<차아염소산염> • 제일락스 • 지-락스 • 하라솔 • 하이락스 • 월로벳하라솔	차아염소산나트륨 40 차아염소산나트륨 750 등 차아염소산나트륨 990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차아염소산나트륨 990	제일바이오 녹십자수의약품 유한양행 진우약품 이화팜텍	<공통> 축사 공간, 축산 기구류, 가옥내부, 의복 등
<시안산나트륨제> • 크렌테 • 바이오크론	(NaDCC)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1,000	우성양행 유니바이오텍	<공통> 축사 공간, 음수, 기구 등
<염기제제> • 부루싸이드 • 소다졸 • 슈퍼크린 • 참신카본-에스 • 카니발 • 파워존 골드	탄산나트륨 995 수산화나트륨 50% 탄산나트륨 998 탄산나트륨 995 수산화나트륨 50% 탄산나트륨 50g 등	남전물산 녹십자수의약품 삼양애니팜 참신약품 동방 넬바이오텍	<공통> 사체, 축사내외부, 차바퀴, 기계, 기구 등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산성제제〉			
• 구제솔	구연산 500	에스에프	축사, 축체, 기구 등
• 그린졸	구연산 500	녹십자수의약품	"
• 뉴크린	구연산 998	한동	"
• 액시톱	구연산 995 등	남전물산	"
• 메가크린	구연산 500	한국썸벤	"
• 모아킬	구연산 998 등	참신약품	"
• 사이크린	구연산 998 등	삼양애니팜	"
• 스누캡	구연산400, 사과산100 등	알엔엘생명과학	"
• 스트롱	구연산 500	대호	"
• 씨크린	구연산 500	넬바이오텍	"
• 씨트릭존	구연산 998 등	신일바이오젠	"
• 씨트러스킬	구연산 500 등	코미팜	"
• 씨트린	구연산 998	삼우메디안	"
• 액시크린	구연산 998	남전물산	"
• 액씨드원	구연산 995	장백베트켄	"
• 퍼펙트킬	구연산 998	대한뉴팜	"
• 구제산 100	구연산 998	알엔엘생명과학	"
• 쎄니포스	구연산 998	이엘티사이언스	"
• 서울파워킬	구연산 998	서울신약	"
• 대성가이드킬	구연산 998	대성미생물연구소	"
• 네오 쓰리디-에스	구연산 500	천세산업	"
• 바로킬A	구연산 998	에드바이오텍	"
• 크린캡	구연산 500	한동	"
• 허브크린	구연산 500	남전물산	"
〈산성제제 등〉			
• 바이오시드 30	복합산성제제(pH 2.0)	한국화이자	축사 내·외부, 축체, 기구, 소독조
• 핀바이러스	초산 300 등	초대 에프엔피	축사, 발판, 바닥
• 하이퍼록스	과초산 56, 빙초산 67 등	바이엘코리아	축사 내·외부, 기구, 발판, 차바퀴
• 씨투스	구연산400g, Sodium laurylsulfate 600g	빅솔	축사, 차량, 소독조, 기구
• 쎄라텍	구연산200, 복합4급암모늄100등	케이텍인터내셔널	축사, 기구
• 하이킬	구연산200, 복합4급암모늄100등	성원	축사, 기구
〈알데히드제제〉	(G=글루타알데히드, F=포르말린)		〈공통〉
• 글루타-에프	G 100	삼우메디안	축사내부, 기구, 시설, 소독조 등
• 네부톨	G 75	메리알코리아	
• 라이프라인-지에이	G 100	고려비엔피	
• 메디사이드	G 150 등	민우	
• 브롬가드	G 200 등	대성미생물	

제품명	주성분 및 분량(g/l)	제조(수입)회사	적용 및 주의사항
〈시안산나트륨제〉			〈공통〉
• 크로시안	NaDCC 1,000	우진비앤지	축사 공간, 기구,
• 크린월드	NaDCC 990등	한동	음수 등
• 샤크론	NaDCC 500	코미팜	
• 코미킹	NaDCC 990	"	
• 클린포스	NaDCC 1000	이엘티사이언스	
• 크린가드	NaDCC 750	성원	
• 슈퍼크론	NaDCC 1000	한국썸벤	
• 월로벳이소클린	NaDCC 1000	(주)유한양행	

-상기 품목에 대한 정확한 용법·용량, 적용대상 및 그에 따른 희석비율은 반드시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시거나 제조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성분별 권장 근거〉

- OIE :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구연산제제
- 미국 농무성 :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구연산, 초산제제, 생석회
- 영국 농무성 : 복합산성제제(안티팜플루이드, 바이오시드30, 버콘 S 등)
- 호주 농무성 :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차아염소산, 구연산, 알데히드제제
- 태국(구제역센터) : 시안산나트륨제제

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신고대상(법 제11조)

-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신고 시의 참고사항〉

-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고 침울할 때
-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죽거나 폐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심한 소화기, 호흡기 또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세가 확산될 때
- 입, 입술, 혀, 콧등,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수포) 또는 딱지가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하는 소, 돼지, 염소, 양, 사슴 등 우제류 동물(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이 발견되는 경우
- 환경에 민감하고 불안해하며 또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설 수 없는 소 및 사슴이 발견되는 경우
- 농장 내 젖소, 한우 및 돼지가 갑자기 유산 또는 사산하는 등 번식장에 피해가 급증할 때
- 농장 내 많은 돼지가 갑자기 고열, 식욕부진, 무리지어 포개짐, 움직이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일 때
- 농장 내 많은 닭(오리)이 갑자기 고열, 식욕부진, 급격한 산란저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며 많이 죽을 때
- 해외악성전염병 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된 경우 등

신고내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 신고대상 가축 소유자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 장소
-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처

-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상급 기관에 보고
- 신고 전화번호 : 지역 구분 없이 1588-4060(시·군) 또는 1588-9060(검역원)
- ※ 1588-4060은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통화는 불가
1588-9060은 휴대폰 통화 가능

5.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 요령

❏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시 축주의 준수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분 확인 및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방역요령
 -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폐기·소각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 농장 근무 시 방역관리 요령
 - 농장의 청결유지, 소독 철저히,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 준수사항 교육
 - 농장 출입 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 수행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방역교육을 실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 외국인 근로자가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 휴일 등 외출 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후 출입하도록 방역조치
 -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친지·친구를 만날 때에는 시내 등 농장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6. 황사 발생 시 농장의 방역관리

■ 황사 발생시 농가 방역관리 수칙

- 황사가 발생하면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가능한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에 대하여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솔이나 브러시로 털어낸 후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봄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 (축체에는 구연산제제 등 무해한 소독제를 사용)
-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7. 가축별 예방접종 요령

아래에 소개하는 가축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기본접종 방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품회사의 용법 및 용량에 따라 사용할 것

소 질병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접종시기	접종부위 및 접종량	
탄저(생균, 기증저(생균))	• 6개월 이상 된 소, 양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 피하주사 : 소(1ml), 양(0.5ml)	
탄저+기증저(생균)	• 6개월 이상 된 소, 양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 피하주사 : 소(2ml), 양(1ml)	
브루셀라병(생균)	• 4~12개월 된 소 1회	• 피하주사 : 소(1ml)	
대장균감염증(사균)	• 건강한 임신우 2회 접종 (1차 : 분만 8주전, 2차 : 분만 2~3주전), • 매 분만 2~3주전 추가 접종	• 경부근육주사 : 소(매회 2ml)	
파스투렐라감염증(사균)	• 건강한 소 1회 접종, 연 1회 추가접종	• 근육주사 : 소(2ml)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독)	• 건강한 임신우 2회 접종 (1차 : 분만 6주전, 2차 : 분만 4주전) • 신생송아지 : 초유섭취 전 1회 경구투여	• 근육주사 : 소(2ml) • 경구투여 : 송아지(4ml)	
광견병	생독	• 5개월령 이상동물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 접종	• 근육주사 : 소(3ml)
	불활화	• 1회 접종, 매3년 추가 접종	• 피하/근육주사 : 소(1ml)
아까바네병	생독	• 3개월 이상 된 소, 모기발생 전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 접종	• 피하주사 : 소(1ml)
	불활화	• 건강한 6개월령 이상 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 근육주사 : 소(3ml)
유행열	생독	• 3개월 이상 된 소, 모기발생 전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 접종	• 근육 또는 피하주사 : 소(1 or 2ml)
	불활화	• 건강한 3개월령 이상 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 근육주사 : 소(3ml)
이바라기병(불활화)	•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 근육주사 : 소(3ml)	
소전염성비기관염(불활화)	• 3개월 이상 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 근육주사 : 소(3ml)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설사병(불활화)	• 3개월 이상 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 근육주사 : 소(5ml)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불활화)	• 3개월 이상 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봄, 가을 접종	• 근육주사 : 소(5ml)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소합포체성페렴(불활화)	• 건강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연 1회 추가 접종	• 근육주사 : 소(5ml)	
타일레리아병(불활화)	• 진드기에 노출된 적이 없는 소에 4주간 2회 접종(2월과 4월)	• 근육/피하 주사 : 소(2ml)	

돼지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자돈 및 육성돈				모돈			(임신돈)				접종부위 및 접종량
	출산 후(주령)				종부 전(주)			분만 전(주)				
	4	6	9	12	6	4	2	9	6	4	2	
돼지열병 (생독)	초유전 (긴급시)	6~7주 (1차)	8~10주 (2차)		2~4주 (연 1회)							• 근육주사 : 1ml
돼지오제스키병 (생독)	7~10주 (1차)	10~12주 (2차)						4~8주				• 근육주사 : 1~2ml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생독)	3~18주(1회)				3~4주 (1회)							• 근육주사 : 2ml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불활화)	3~4주 (1차)	6~7주 (2차)			4~5주 (1차)	2주 (2차)	분만 시(1회)				• 근육주사 : 2ml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감염증(생독)								5~7주 (1차)	2~3주 (2차)			• 근육주사 : 2ml
유행성설사(생독)					생독 4~5주(1차) 2~3주(2차)(초산돈), 생독 종부전 (1회)(경산돈)			4~5주 (1차)	2~3주 (2차)			• 근육주사 : 2ml
전염성위장염 +유행성설사(불활화)								불활화 5~6주 (1차)	2~3주 (2차)			• 근육주사 : 생독(2ml) 불활화(3ml)
돼지일본뇌염(생독)	연령무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모기출현 이전)											• 근육/피하주사 : 2ml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불활화)					4주, 2주 2회(초산돈) 2주 1회(경산돈)							• 근육주사 : 초산(5ml), 경산(2ml)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유전자재조합)					4주전 2주전 (1차) (2차)			종부 2주 전 (경산돈)				• 근육주사 : 1ml
돼지뇌심근염 (불활화)					4주, 2주 2회(초산돈) 2주 1회(경산돈)							• 근육주사 : 2ml
돼지엔테로 바이러스감염증(불활화)	4~6주 (1차)	8~10주 (2차)						4~6주 (1차)	2~3주 (2차)			• 근육주사 : 2ml
돼지단독(생균)	8주 (1차)	12주 (2차)			종부 2~3주 전							• 피하주사 : 1ml
대장균감염증(사균)								4~6주 (1차)	2~3주 (2차)			• 피하주사 : 2ml
돼지마이코 플라스마병(사균)	1~2주 (1차)	3~4주 (2차)						4~6주 (1차)	2~3주 (2차)			• 근육주사 : 2ml
위축성비염, 흉막폐렴, 파스튜렐라폐렴(사균)	3주 (1차)	5주 (2차)						4주 (1차)	2주 (2차)			• 근육주사 : 2ml
돼지마이코플라스마병, 위축성비염, 흉막폐렴, 글래서씨병, 파스튜렐라폐렴, 연쇄상구균증(사균)	4~5주 (1차)	7~8주 (2차)						5~6주 (1차)	2~3주 (2차)			• 근육주사 : 2ml(모돈), 1.5ml(자돈)

닭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접종시기 및 접종방법		
	육 계	산란계	종 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산란개시 3~4주전 (불활화오일)	• 산란개시 3~4주전 (불활화오일)
뉴캐슬병	• 1차 : 1일령 (생독분무, 부화장) • 2차 : 10일령 (생독분무/음수/접안) • 3차 : 21일령 (생독 분무/음수/접안)	• 1차 : 1일령 (생독분무, 부화장) • 2차 : 10일령 (생독분무/음수/접안) • 3차 : 3~4주령 (생독분무/음수/접안) • 4차 : 7~8주령 (생독라스타 혹은 불활화) • 5차 : 산란 4주전 (불활화 오일 백신)	• 1차 : 1일령 (생독분무, 부화장) • 2차 : 10일령 (생독분무/음수/접안) • 3차 : 3~4주령 (생독분무/음수/접안) • 4차 : 7~8주령 (생독라스타 혹은 불활화) • 5차 : 산란 4주전 (불활화 오일백신)
	※위험농장은 1~7일령에 불활화 오일백신 추가접종		
전염성 후두기관염		• 1차 : 4~6주(접안접종) • 2차 : 12~16주령(접안접종)	• 1차 : 4~6주(접안접종) • 2차 : 12~16주령(접안접종)
	※발생위험이 높은 농장은 2~3주령에 1차 접안접종		
전염성 기관지염	• 1일령(생독분무/접안)	• 1차 : 1일령(생독분무/접안) • 2차 : 6~8주령(생독음수) • 3차 : 산란4주전(불활화 오일)	• 1차 : 1일령(생독분무/접안) • 2차 : 6~8주령(생독음수) • 3차 : 산란 4주전(불활화오일)
전염성F낭병	• 1차 : 10~14일령(생독) • 2차 : 3주령(생독)	• 1차 : 3주령(생독 음수) • 2차 : 5주령(생독 음수)	• 1차 : 10~14일령(생독) • 2차 : 3~4주령(생독) • 3차 : 시산 4주전(불활화오일)
마렉병		• 1일령(피하 또는 근육)	• 1일령(피하 또는 근육)
계두		• 3주령 미만 : 단침 접종 ※단침접종시 10~14주령에 쌍침 으로 추가접종 • 3주령 이상 : 쌍침 접종	• 3주령 미만 : 단침 접종 ※단침접종 시 10~14주령에 쌍침 으로 추가접종 • 3주령 이상 : 쌍침 접종
	※접종일령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모기출현(하절기)이전 접종		
닭뇌척수염		• 10~12주령(생독 음수)	• 10~12주령(생독 음수)
	※산란중이거나 산란개시 4주 이내에는 접종금지		
가금티프스		• 1차 : 6주령(생균) • 2차 : 18주령 (생균 또는 불활화)	



부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7호], 시행일 2008.2.4,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가성우역(假性牛疫)·불루팅병·리프트계곡열·림프스킨병·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아프리카마역(馬疫)·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돼지수포병(水疱病)·뉴캐슬병·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 나.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브루셀라병·결핵병(結核病)·요네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티센병·스크래피·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구역(구疫)·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동부말

뇌염(腦炎)·서부말뇌염·베네주엘라말뇌염·추백리(雛白痢)·가금(家禽)티프스·가금콜레라·광견병(狂犬病)·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다. 제3종가축전염병 :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腐蛆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당해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하여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이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③ 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 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12조 (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3조 (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개정 2007.8.3>)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면역요법·투약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6조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지역, 대상가축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 ③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 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하는 조치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 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당해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 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살처분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1조 (도태의 권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역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 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 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소유자 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스스로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 (발굴의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유자 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8조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의 규정은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28조의2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은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제1항(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2. 제20조제1항(살처분명령)(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격리와 가축사육 시설의 폐쇄명령 등)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6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의한 가축의 소유자 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영업자
4. 제22조제2항(사체의 처분제한) 본문(가축방역관을 제외한다)·제4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제3항(역학조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사체처분의 제한), 제23조제1항·제2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6. 28 농림부령 제155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07. 8. 3)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개정작업중에 있음.

제2조 (제2종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06.5.8>

1. 소전염성비기관염 · 타이레리아(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놀라타에 한한다) · 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 아나플라즈마(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 · 소백혈병 · 소렙토스피라병
2. 돼지전염성위장염 · 돼지단독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돼지유행성설사 · 돼지위축성비염
3. 닭뇌척수염 · 닭전염성후두기관염 · 닭전염성기관지염 · 마렉병 · 닭전염성 에프낭병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 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당해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캐슬병·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 우역·구제역·돼지콜레라·광견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동항제4호중 종축장 운영자 : 가축사육시설 · 도축장 ·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를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차량의 운전자 :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④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 · 우폐역 · 구제역 ·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돼지콜레라 ·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 · 결핵병 · 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제24조 (도태의 권고)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소에 한한다) · 결핵병(소에 한한다) · 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 별표 1】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 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 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축산법에 의한 중축장의 운영자

-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중축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2】

소독방법 (제20조제2항관련)

종류	방 법	소독목적물	비 고
약물 소독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축사의 바닥·분뇨·분뇨구·오수구·습윤한 토지 등	•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축사의 벽·바닥·울타리·토지 등	• 뿌릴 때에는 고무저으면서 사용한다.
	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제1호와 같다	• 표백분은 광선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바른다.	제2호와 같다	• 표백분은 광선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5. 석탄산수(석탄산 100분의 3에 물 100분의 97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에 이에 담근다.	동물의 다리·사체, 축사, 금속성기계 또는 기구, 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뿌릴 때에는 충분히 섞어서 사용한다. • 알카리성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물로 씻은 후에 사용한다.
	6.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을 1:10: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1:1,000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에 이에 담근다	동물의 다리·몸체(소를 제외한다)·사체, 축사, 기구·기계류(금속성인 것을 제외한다) 등	• 금속성의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승홍수는 비금속류의 용기에 사용한다.
	7. 포르말린수(포르말린과 물을 1:34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에 이에 담근다.	축사, 가축의 몸체·사체, 기구·기계, 뿔·뿔·발굽·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뿔 또는 발굽을 소독할 때에는 3시간 이상 담근다.
	8. 크레졸비누액(3~5%)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 목적물에 이에 담근다.	옷·축사·가축의 몸체·기구·기계·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방 법	소독목적물	비 고
약물 소독	9. 염산식염수(염산 100분의 2에 식염 100분의 10과 물 100분의 88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가죽류(생가죽·염장가죽·산적가죽 등)	
	10. 가성소다 그 밖에 알칼리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축사·기구·울타리·분뇨저장용기 등	
	11. 알콜(70% 이상) 또는 승홍(1%)에 적신 탈지면으로 충분히 닦는다.	가죽류	
	12.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나. 0.1% 실리콘산나트륨을 첨가한 4% 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린다.	땀·가죽류 항공기에 한한다	
	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 이상의 것을 사용) 수용액(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뿌린다.	육류·한약제품 등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의 가공처리장	
	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물1리터에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을 10.2그램 이상 섞어 그 온도를 16℃ 이상으로 한 것)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컨테이너	
	15. 이산화염소(CIO ₂ 3%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가. 이산화염소(3%) 100분의 1에 물 100분의 99를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나. 이산화염소(3%)와 물을 1:199 내지 299의 비율로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양을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다. 이산화염소(3%)와 물을 1:49,999 내지 99,999로 완전히 희석한 후에 이를 동물에게 먹인다.	1. 분뇨구·사체 2. 실내·축사·항공기 내 3. 기계·기구·울타리 등 4. 땀·가죽류·모피류·뿔·육류 등 5. 탈취·악취제거 물건 6. 출입구 발판소독·가축의 몸체 기축에 한한다	

종류	방 법	소독목적물	비 고
훈증소독	1.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독 가. 압력 : 상압(1kg/cm ²) 나. 온도 : 상온 다. 시간 : 4시간 이상 라. 산화에틸렌을 기화할 것 마. 최종제품의 잔류농도는 50ppm 이하일 것	1. 우황·사향 2. 녹용 및 식용으로 제공하는 한약재 3. 그 밖의 식용에 제공하는 것	
	2.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 창고 안에서 실시하거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40%) 53밀리리터, 과망간산칼슘 35그램을 섞어 기화한다. 나. 시간 : 7시간 이상	1. 실내 및 축사 2. 기구·기계 등 장비 3. 뽕·밭급·골분 등 4. 동물의 털·사료 등 5. 그 밖의 옷 및 포장에 사용된 재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까지 소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장치를 사용한다. • 소독효과가 불안정하지 아니하도록 13℃ 이상을 유지한다.
증기소독	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킨다.	옷·모포·포대 및 이와 접촉된 물건	•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물끓임소독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어 1시간 이상 끓인다.	옷·모포·포대·고기·뼈·밭급·반가공사료 및 이와 접촉된 기구	•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발효소독	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길이의 구멍이를 파서 발효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으로 덮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분뇨·깔짚 등	• 소 또는 돼지의 분뇨를 소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깔짚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충분히 발효시킨다.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제1호와 같다.	
자외선소독	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선 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터 안에 두고 1~2분동안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루 쬐도록 한다(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른다).	건조녹용 등	

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아니하고 생석회·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다.
-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코·입·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 다.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킨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가성소다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
- 라. 탄저·기종저 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포르말린수·염산식염수·수산(옥살산)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 마.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 (1)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 (2) 가축·지정검역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3)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 (4)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바.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 염소농도 2%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N)농도 수산화나트륨으로 20℃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둔다.

아.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참고 2 가축방역 관련 기관 연락처

농림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427-719	02 FAX	500-1942 500-1938/9 504-0908	전국

검역원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430-824	031 FAX	467-1713 467-1851 467-1853 467-1878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18	137-734	02 FAX	570-3435 -3235 570-3206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616-810	051 FAX	331-5012 888-6819 338-8266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7	706-090	053 FAX	760-1300 1304 760-1302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404-812	032 FAX	440-6440/1 440-6446/7 576-7785	인천, 강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광주 북구 본촌동 379-2	500-210	062 FAX	571-0497 0498 -0496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042 FAX	870-3484 -3491 870-348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689-813	052 FAX	229-5240/1 229-5249	울산 광역시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축산위생연구소 경기생도연구소	본 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441-460	031 FAX	299-5430 299-5431 294-6773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성남, 오산, 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 이천시 진리동 371-4	467-060	031 FAX	635-3680 636-3676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양평
	남부지소	경기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274-10	456-820	031 FAX	651-2037 651-1614	용인, 평택, 안성
	제2가축위생연구소본소	경기 양주시 고읍동 340-1	482-020	031 FAX	856-1011/2 856-1013/4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고양, 파주
	제2가축위생연구소북부지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7-1	472-840	031 FAX	593-4011 -4012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
가축위생시험소 강원생도시험소	본 소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7	200-822	033 FAX	243-9580~2 243-9584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장현동 74-7	210-180	033 FAX	647-6465/6 647-6405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반곡동 1098-2	220-170	033 FAX	761-1880/1 -18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153	232-802	033 FAX	332-6926 333-5302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사동 649-3	217-130	033 FAX	636-8581 636-8582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연구소	본 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20	363-931	043 FAX	220-5611~4 220-5629	청주, 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380-230	043 FAX	220-5644~5 220-5646	충주, 음성
	제천시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390-090	043 FAX	220-5641/2 220-5649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370-880	043 FAX	220-5631/2 220-5643	보은, 옥천, 영동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축산의생연구소 충청남도	본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350-821	041 FAX	631-3091/4 631-3092/3	보령, 청양 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337-850	041 FAX	548-2950 540-2567	천안, 아산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금홍동 190-10	314-140	041 FAX	881-0127/8 840-2689	공주, 금산 연기
	당진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343-803	041 FAX	352-4056 352-4055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323-808	041 FAX	833-8611 830-2784	논산, 부여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8	041 FAX	675-4349 675-4348	태안, 서천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북도	본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052-1	560-860	063 FAX	220-6530 220-6511	전주, 완주 김제, 부안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063 FAX	635-5777 635-5778	남원, 임실 순창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0-814	063 FAX	535-3526 535-9118	정읍, 고창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063 FAX	834-4918 834-4916	군산, 익산
	장수지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37	597-841	063 FAX	352-9876 352-9877	무주, 진안 장수
축산기술연구소 전라남도	축산기술 연구소본소	광주 광산구 복룡동 89-5	506-555	062 FAX	941-2577/8 -3667	목포, 나주, 담양 화순,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080	061 FAX	755-6396 751-1045	순천, 여수, 광 양보성, 구례, 곡성고흥
	남부지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	527-805	061 FAX	432-8938 433-7900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번호		
가축위생시험소 경상북도	본 소	대구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053 FAX	326-0012~3-0014	구미,칠곡,군위,성주,고령,경산,영천,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12	760-803	054 FAX	850-3285-3289	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933	054 FAX	748-6624 748-6685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답동 476-1	742-320	054 FAX	533-1751/2 532-4965	김천,상주,문경,예천
축산진흥연구소 경상남도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360	055 FAX	750-6341/3 750-6339	진주,사천,산청,하동,함양,남해
	중부지소	경남 장유면 부곡리 17-8	641-041	055 FAX	313-9009 212-5779	창원,마산,진해,김해,함안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07-1	678-800	055 FAX	931-3245 930-3382	합천,거창,의령,창녕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900-1	650-810	055 FAX	646-4395 640-4987	통영,거제,고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제주 제주시 초전읍 와흘리 782	690-962	064 FAX	710-4138 -4139	제주	
서울	산업국 농수산유통과 안전위생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소문 별관 1동 9층	100-744	02 FAX	6321-4067 3707-9399	
부산	항만농수산국 농업행정과 축산행정팀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611-735	051 FAX	888-3231 888-3209	
대구	기업지원본부 농수산팀 축산물위생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700-714	053 FAX	803-3461 429-3439	
인천	경제통상국 농정과 축정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405-750	032 FAX	440-2992 427-0700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광주	경제통상국 농산유통과 축정계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0	502-702	062 FAX	613-3983 613-3969	
대전	경제과학국 농정과 축정담당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20	302-789	042 FAX	600-2273 600-2279	
울산	경제통상국 농축산과 축산계	울산 남구 신정 1동 646-4	680-701	052 FAX	229-2933 229-2919	
경기	농정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442-781	031 FAX	249-4510 249-2658	한수이남
	경제농정국 축수산산림과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 1로 66	480-764	031 FAX	850-2484 850-2479	한수이북
강원	농정산림국 축산과 가축방역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200-700	033 FAX	249-2654 249-4042	
충북	농정국 축산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360-765	043 FAX	220-3942 220-3919	
충남	남부지소	대전시 중구 중앙로 155	301-763	042 FAX	251-2871 251-2729	
전북	농림수산국 축산과 가축방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	560-761	063 FAX	280-2658 280-2729	
전남	농정국 축정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534-700	061 FAX	286-6551 286-4787	
경북	농수산국 축산경영과 가축방역담당	대구시 북구 산격1동 1445-3	702-702	053 FAX	950-2682 950-2689	
경남	농수산국 축산과	경남 창원시 사람동 1	641-702	055 FAX	224-3698 211-3659	
제주	친환경농축 산국 축정과 가축방역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690-790	064 FAX	710-6922 710-6909	

☐ 지방자치단체 주소록 (2007.9.11 기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태평로 1가 31)	110-744	120	seoul.go.kr
종로구	종로구 삼봉길 50(수송동 146의2)	110-711	731-0114	jongno.go.kr
중 구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의1)	100-701	2260-1114	junggu.seoul.go.kr
용산구	용산구 백범로 78(원효로 1가 25)	140-704	710-3114	yongsan.go.kr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10(행당동 7)	133-701	2286-5114	sd.go..kr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143-702	450-1300	gwangjin.go.kr
동대문구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의9)	130-703	2127-5000	ddm..go.kr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	131-701	490-3114	jungnang.seoul.kr
성북구	성북구 구청길 14(삼선동 5가 400-1)	136-706	920-3114	seongbuk.go.kr
강북구	강북구 구청길 12(수유동 192-59)	142-701	901-6114	gangbuk.go.kr
도봉구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	132-701	2289-1114	dobong.go.kr
노원구	노원구 노해길 183(상계6동 701-1)	139-703	950-3114	nowon.seoul.kr
은평구	은평구 은평구청길 8(녹번동 84)	122-702	350-1114	eunpyeong.seoul.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165(연희동 168-6)	120-703	330-1301	seodaemun.seoul.kr
마포구	마포구 성산로 557(성산동 275-3)	121-711	1577-3500	mapo.go.kr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75(신정6동 321-4)	158-702	2620-3114	yangcheon.go.kr
강서구	강서구 화곡로 153(화곡동 980-16)	157-701	2600-6300	gangseo.seoul.go.kr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	152-701	860-2114	guro.go.kr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4)	153-701	890-2114	geumcheon.go.kr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150-720	2670-3002	ydp.go.kr
동작구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 2동 47-2)	156-701	820-1114	dongjak.go.kr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4동 1570-1)	151-701	880-3114	gwanak.go.kr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2동 1376-3)	137-704	570-6114	seocho.go.kr
강남구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1)	135-705	2104-2400~1	gangnam.go.kr
송파구	송파구 올림픽로326(신천동 29-5)	138-702	410-3114	songpa.seoul.go.kr
강동구	강동구 성내동길 27(성내동 540)	134-700	1577-1188	gangdong.go.kr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연산5동 1000)	611-735	(051)120	busan.go.kr
중 구	중구 영선고개길 186(대청동 1가 1)	600-701	469-0281	bsjunggu.go.kr
서 구	서구 서구청 1길(토성동 4가 2-3)	602-701	240-4000	bsseogu.go.kr
동 구	동구 중앙로 734(범일동 62-720한성기린프라자)	601-701	466-7191	bsdonggu.go.kr
영도구	영도구 태종로 1151(청학동)	606-750	415-1001	yeongdo.go.kr
부산진구	부산진구 구청로 11(부암1동 666-16)	614-701	605-4444	busanjin.go.kr
동래구	동래구 읍내길 77(복천동 381)	607-701	554-8411	dongnae.go.kr
남 구	남구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	608-701	637-7373	bsnamgu.go.kr
북 구	북구 강변2길(구포동)	616-701	304-7501	bsbukgu.go.kr
해운대구	해운대구 구청길 1(중1동 1378-95)	612-701	749-4000	haeundae.go.kr
사하구	사하구 사하구청길 30(당리동 317-16)	604-701	207-6041	saha.go.kr
금정구	금정구 중앙로 3055(부곡3동 78)	609-701	514-5501	geumjeong.go.kr
강서구	강서구 낙동북로 116(대저1동 2300)	618-701	970-4000	bsgangseo.go.kr
연제구	연제구 연제로 55(연산2동 1555)	611-703	665-4000	yeonje.go.kr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613-702	622-4251	suyeong.go.kr
사상구	사상구 구청로 34(감전동 138-8)	617-702	310-4000	sasang.go.kr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00(신천리 1)	619-906	709-4444	gijang.go.kr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1가 1)	700-714	(053)803-0114	daegu.go.kr
중 구	중구 중구청길 1(동인동2가 177-4)	700-701	661-2000	gu.jung.daegu.kr
동 구	동구 아양로 373(신암동 36- 1)	701-701	955-2211	dong.daegu.kr
서 구	서구 국제보상로 1162(평리동 1230-9)	703-701	663-2000	seogu.daegu.kr
남 구	남구 이천로 75(봉덕동 565-5)	705-702	664-2000	nam.daegu.kr
북 구	북구 옥산로 85(침산3동 447-16)	702-705	665-2000	buk.daegu.kr
수성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3(범어동 238-3)	706-701	666-2000	suseong.daegu.kr
달서구	달서구 학산로 300(월성동 281)	704-702	635-9000	dalseo.daegu.kr
달성군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금포리 1313)	711-709	668-2000	dalseong.daegu.kr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405-750	(032)440-2114	incheon.go.kr
중 구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 1가 9-1)	400-041	760-7111	icjg.go.kr
동 구	동구 금곡길 175	401-701	761-0151	icdonggu.go.kr
남 구	남구 독정이길 151(송의동 131-1)	402-701	887-1011	namgu.incheon.kr
연수구	연수구 원인재길 33호	406-723	817-1011	yeonsu.go.kr
남동구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405-702	466-3811	namdong.go.kr
부평구	부평구 부평로 266(부평4동 879)	403-701	509-6114	icbp.go.kr
계양구	계양구 계산새길 148	407-701	551-5701	gyeyang.go.kr
서 구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404-701	562-5301	seo.incheon.kr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군청길 16(관청리 163)	417-802	930-3114	ganghwa.incheon.kr
옹진군	남구 낙섬길 166(옹현동)	402-020	899-2114	ongjin.go.kr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502-702	(062)613-2114	gwangju.go.kr
동 구	동구 동구청로 1(서석동 31)	501-704	608-2114	donggu.gwangju.kr
서 구	서구청 1길(농성동 299)	502-701	365-4114	seogu.gwangju.kr
남 구	남구 제석로 17(봉선동 511)	503-701	650-8114	namgu.gwangju.kr
북 구	북구 우치로 183(용봉동)	500-701	510-1500	bukgu.gwangju.kr
광산구	광산구 광산구청로 10(송정동 833-3)	506-702	942-3011~20	gwangsan.go.kr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	302-789	(042)600-3114	metro.daejeon.kr
동 구	동구 중앙시장길 100(원동 85-5)	300-701	250-1114	donggu.go.kr
중 구	중구 중앙로 150(대흥동 499-1)	301-701	606-6114	djjunggu.go.kr
서 구	서구 반월길 56(둔산동 1300)	302-702	611-6114	seogu.go.kr
유성구	유성구 대학로 243번(어은동 109)	305-702	611-2114	yuseong.daejeon.kr
대덕구	대덕구 대덕구청 5길(오정동 500)	306-703	608-6114	daedeok.go.kr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동 646-4)	680-701	(052)229-2000	ulsan.go.kr
중 구	중구 단장골길 1(북산동 180-1)	681-701	298-3003	junggu.ulsan.kr
남 구	남구 돛길로 285(달동 1320-1)	680-706	275-7541	namgu.ulsan.kr
동 구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222)	682-701	233-8401	donggu.ulsan.kr
북 구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683-370	289-9999	bukgu.ulsan.kr
울주군	남구 문수로 133(목동 156-3)	680-708	229-7000	ulju.ulsan.kr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도				
경기도 제1청사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신로 3가 1)	442-781	(031)249-3000	portal.gg.go.kr
경기도 제2청사	의정부시 제2청사 1로 66(신곡동)	480-764	850-2114	north.gyeonggi.go.kr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	441-701	228-2114	suwon.ne.kr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길 25(조원동 888)	440-200	228-5114	jangan.suwon.ne.kr
권선구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0 행정타운 1길1	441-440	228-6114	ksun.suwon.ne.kr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길 285(우만동 228)	442-817	228-7114	paldal.suwon.ne.kr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 동서로 485(매탄동 1268)	443-765	228-8585	yt.suwon.ne.kr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2동 3309)	461-700	729-2114	cans21.net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신흥2동 30)	461-722	729-5114	sujeong-gu.or.kr
중원구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0 중원구청	462-712	729-6114	jungwon-gu.or.kr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2(수내동 1)	463-701	729-7114	bundang-gu.or.kr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로 43(의정부2동 326-2)	480-703	828-2114	ui4u.net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05(관양동)	431-728	389-2114	anyang.go.kr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240호(안양6동 530)	430-718	389-3114	manan.anyang.go.kr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 영정길 20호(달안동 1111)	431-718	389-4114	dongan.anyang.go.kr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420-736	(032)320-3000	bucheon.go.kr
원미구	부천시 원미구 은행나무 1로 60(원미동 71)	420-111	650-2114	wonmigu.bucheon.go.kr
소사구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길 121(소사본동 64)	422-701	340-6114	sosa.bucheon.go.kr
오정구	부천시 오정구 베리내로 170(오정동 129)	421-705	680-2114	ojeong.bucheon.go.kr
광명시	광명시 시청로 20(철산3동221-1)	423-702	(02)2680-2114	gm.go.kr
평택시	평택시 중앙로1가 45(비전동 846)	450-702	(031)653-3000	pyeongtaek.go.kr
동두천시	동두천시 시청길 27	483-708	865-7101~5	ddc21.net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0(고잔동 515)	425-702	481-2000,2114	iansan.net
상록구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길 29(사동 1584)	426-900	481-5000	sangnok-gu.iansan.net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중앙로270(초지동 666-2)	425-900	481-6000	danwon-gu.iansan.net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12-701	961-2114	goyang.go.kr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	412-702	968-5000	gu.goyang.go.kr/deogyang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	410-702	900-6114	gu.goyang.go.kr/ilsan
일산서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816(대화동 2199)	411-804	930-6114	gu.goyang.go.kr/ilsanseoo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과천시	과천시 관문로 72(중앙동 1-3)	427-714	(02)3677-2309	gccity.go.kr
구리시	구리시 아차산길 62(교문동 390-1)	471-702	(031)557-1010	guri.go.kr
남양주시 제1청사	남양주시 경춘로 641(금곡동 185-10)	472-701	590-2114	nyj.go.kr
남양주시 제2청사	남양주시 경춘로 202(지금동 159-7)	472-702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65(오산동 915)	447-701	370-3114	osan.go.kr
시흥시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429-701	317-2000	shcity.net
군포시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	435-701	392-3000	gunpo21.net
의왕시	의왕시 시청로 11	437-701	345-2114	uiwang.go.kr
하남시	하남시 시청길 2 하남시청	465-701	790-6114	hanam.gyeonggi.kr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처인구 삼가동 556)	449-702	324-2114	yonginsi.net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nddk로 94(김량장동 286)	449-790	324-5114	cheoingu.go.kr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5	446-593	324-6114	giheunggu.go.kr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333(풍덕천동 720)	448-171	324-8114	sujigu.go.kr
파주시	파주시 시청로 66(아동동 215)	413-719	940-4114	pajuro.net
이천시	이천시 남천로 59(중리동 187)	467-717	633-8003~10	icheon.go.kr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봉산동 31-3)	456-701	678-2114	anseong.go.kr
김포시	김포시 시청앞길 40(사우동 263-1)	415-728	984-2181	gimpo.go.kr
화성시	화성시 시청길 133(남양동 2000)	445-702	355-2114	hscity.net
광주시	광주시 송정동 120-8	464-720	760-2000	gjcitiy.go.kr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482-709	820-2114	yangju.gyeonggi.kr
여주군	여주군 여주읍 청심로 184(홍문리 4)	469-704	883-2114	yj21.net
연천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486-701	834-2211	iy21.net
포천시	포천시 중앙로 179(신읍동 58-2)	487-701	538-2114	pcs21.net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477-701	580-2114	gp.go.kr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476-703	773-5101	yp21.net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 원 도	춘천시 증향로 1(봉의동 15)	200-700	(033)254-2011	provin.gangwon.kr
춘천시	춘천시 시청길 7(옥천동 111)	200-708	253-3700	chunchon.go.kr
원주시	원주시 봉학로 180(일산동 185-1)	220-703	742-2111	wonju.go.kr
강릉시	강릉시 시청로 66(홍제동 1001)	210-703	640-4114	gangnung.gangwon.kr
동해시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806)	240-701	533-3011	dh.go.kr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370-702	742-2101	yeongdong.go.kr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	365-701	539-3114	jinchon.go.kr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367-802	830-3114	goesan.go.kr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	369-701	871-3114	es21.net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	395-805	422-3011	danyang.chungbuk.kr
증평군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	368-908	835-3114	jp.go.kr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증향로 155	301-763	(042)220-3114	chungnam.net
천안시	천안시 번영로 601(불당동 234-1)	330-701	(041)551-2011	cheonan.go.kr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314-702	840-2114	gongju.go.kr
보령시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269-4)	355-701	930-3114	boryeong.chungnam.kr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1626)	336-701	540-2114	asan.go.kr
서산시	서산시 관아문길1(읍내동 492)	356-704	660-2114	seosan.go.kr
논산시	논산시 시청1길 11(내동)	320-701	730-3114	nonsan.go.kr
계룡시	계룡시 장안길 30(금암동 10)	321-701	840-2114	gcity.go.kr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상리25-1)	312-701	750-2114	geumsan.go.kr
연기군	연기군 조치원읍 군청로 81(신흥리 123)	339-705	861-2114	yeonggi.go.kr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9(동남리 725)	323-701	830-2114	buyeo.go.kr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325-701	950-4114	seochon.go.kr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군청대로 250(송방리 100)	345-701	943-2285	cheongyang.go.kr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350-807	630-1114	hongseong.go.kr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40-701	330-2114	yesan.go.kr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	357-701	670-2114	taean.go.kr
당진군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343-805	350-3114	dangjin.go.kr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효자동 3가 1)	560-761	(063)280-2114	jeonbuk.go.kr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완산구 서노송동 568-1)	560-700	(063)281-2114	jeonju.go.kr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효자동 1가 595)	560-719	220-5114	wansangu.jeonju.go.kr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진북동 416-12)	561-701	271-6161	deokjingu.jeonju.go.kr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573-703	450-4000	gunsan.go.kr
익산시	익산시 시청로 1(남중동 60)	570-753	859-3114	iksan.go.kr
정읍시	정읍시 수성동 440-1	580-701	535-5141~7	jeongup.go.kr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88(도통동 518)	590-701	(063)625-6131	namwon.go.kr
김제시	김제시 시청로 166(서암동 353)	576-120	540-3114	gimje.go.kr
완주군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31(인후동 2가 1561-1)	561-707	240-4114	wanju.go.kr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567-806	430-2114	jinan.go.kr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무산현길 132	568-800	320-2114	muju.org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597-800	351-2141	jangsu.go.kr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566-700	640-2114	imsil.go.kr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595-805	653-2101	sunchang.go.kr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585-801	564-2121	gochang.go.kr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579-700	580-4191	buan.go.kr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534-700	(061)247-0011	jeonnam.go.kr
목포시	목포시 양을로 271(용당동 1188-2)	530-701	(061)272-2171	mokpo.go.kr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	555-701	690-2114	yeosu.go.kr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540-701	744-8111	suncheon.go.kr
나주시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	520-701	330-8114	naju.jeonnam.kr
광양시	광양시 시청앞길 8(중동 1313)	545-701	797-2114	gwangyang.go.kr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517-802	380-3114	damyang.go.kr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516-805	363-2011	gokseong.go.kr
구례군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	542-803	782-2014	gurye.net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	548-804	830-5114	goheung.go.kr
보성군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546-800	852-2181	boseong.jeonnam.kr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519-805	374-0001	hwasun.go.kr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529-801	863-7071	jangheung.go.kr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527-802	(061)430-3114	gangjin.go.kr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506-807	530-5114	haenam.go.kr
영암군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526-804	470-2114	yeongam.go.kr
무안군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534-804	450-5114	muan.go.kr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525-804	322-0011	hampyung.jeonnam.kr
영광군	영광군 영광읍 무영리 198-4	513-807	353-3701~5	yeonggwang.jennam.kr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515-806	393-1989	jangseong.go.kr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537-800	550-5114	wando.go.kr
진도군	진도읍 진도읍 성내리 64-1	539-803	544-2181~2	jindo.go.kr
신안군	목포시 북교동 178-1	530-705	243-2171	sinan.go.kr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702-702	(053)959-01141	gb.go.kr
포항시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790-722	(054)270-2114	ipohang.org
남 구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1-2	790-140	270-6114	namgu.ipohang.org
북 구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1-2	791-020	240-7114	bukgu.ipohang.org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800)	780-701	748-9001	gyeongju.go.kr
김천시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	740-701	420-6114	gimcheon.go.kr
안동시	안동시 시청로 6(명륜동 344)	760-701	856-5701	andong.go.kr
구미시	구미시 송정동 50	730-717	450-6114	gumi.go.kr
영주시	영주시 시청로 72(휴천2동 470)	750-701	634-3100	yeongju.go.kr
영천시	영천시 시청로 16	770-701	333-1701	yc.go.kr
상주시	상주시 남성동 140-3	742-706	533-2001	sangju.go.kr
문경시	문경시 모전동 220	745-702	552-3210	gbmg.go.kr
경산시	경산시 남매로 159 (중방동 701-17)	712-703	(053)811-2231	gyeongsan.go.kr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29	716-701	(054)383-2181	gunwi.go.kr
의성군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769-700	830-6114	uiseong.go.kr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763-802	873-2291	cs.go.kr
영양군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1	764-805	682-2241~50	yyg.go.kr
영덕군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	766-801	730-6114	yd.go.kr
청도군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	714-701	370-6114	cheongdo.go.kr
고령군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717-801	954-2201~8	goryeong.go.kr
성주군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	719-802	933-0021	seongju.go.kr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	718-806	973-3321	chilgok.go.kr
예천군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757-804	654-3801	yecheon.go.kr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	755-805	673-5800	bonghwa.go.kr
울진군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767-801	782-1501	uljin.go.kr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1	799-801	791-2191	ulleung.go.kr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1(사림동)	641-702	(055)211-2114	gsnd.net
창원시	창원시 중앙로87(용호동 1)	641-703	212-2114	changwon.go.kr
마산시	마산시 3.15의거리길 760(중앙동 3가4-11)	631-702	220-2114	masan.go.kr
진주시	진주시 상대동 284	660-760	749-2114	jinju.go.kr
진해시	진해시 시청로 1(풍호동 1)	645-701	548-2114	jinhae.go.kr
통영시	통영시 통영해안로 54(무전동 357)	650-800	1577-0557	tongyeong.go.kr
사천시	사천시 용형면 덕곡리 501	664-701	831-2114	sacheon.go.kr
김해시	김해시 부원동 623	621-701	(055)330-3114	gimhae.go.kr
밀양시	밀양시 교동 1000-1	627-701	359-5114	miryang.go.kr
거제시	거제시 신현읍 시청로 200(고현리 717)	656-720	639-3000	geoje.go.kr
양산시	양산시 남부동 505	626-701	384-4101	yangsan.go.kr
의령군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636-805	570-2114	uiryeong.go.kr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13	637-805	580-2899	haman.go.kr
창녕군	창녕군 창녕읍 교리 1	635-700	530-2000	cng.go.kr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638-804	673-4101~7	goseong.go.kr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	668-801	864-2131 / 860-3114	namhae.go.kr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667-805	880-2114	hadong.go.kr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65-3	666-805	970-6000	sancheong.ne.kr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은림리 31-2	676-806	960-6114	hygn.go.kr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670-807	940-3000	gcgn.go.kr
합천군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678-801	930-3114	hc.go.kr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2(연동)	690-700	(064)710-2114	jeju.go.kr
제주시	제주시 시청로 28(이도2동)	690-701	728-2114	jejusi.go.kr
서귀포시 제1청사	서귀포시 중앙로 308(서홍동)	697-702		
서귀포시 제2청사	서귀포시 시청로 37(법환동)	697-701	460-2114	seogwipo.go.kr

가축방역지원본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DDD 번호	관할지역
서울	본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5층	134-763	02 FAX 478-7861 478-7865	
	본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2-15 우진프라자 3층	441-480	031 FAX 419-6993 419-6530	
경기	중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32-15 우진프라자 3층	441-480	031 FAX 419-6528 419-6529	시흥(안양), 화성
	동부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171-2번지	467-881	031 FAX 881-6616 881-6617	여주, 하남, 광주 이천
	서부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4-2번지	415-865	031 FAX 982-8676 982-8675	고양, 파주, 김포
	남부	안성시 봉산동 386-2	456-030	031 FAX 676-9451 676-9452	용인, 평택, 안성
	북부	포천시 신읍동 376-2번지 해성빌딩	487-805	031 FAX 531-4060 531-4062	양주, 연천, 포천
	동북부	가평군 가평읍 송안리 100번 지 (농업기술센터 내)	477-802	031 FAX 581-4062 581-4063	남양주, 가평 양평
	서북부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47-2번지	417-805	032 FAX 932-4048 932-4049	강화, 인천
	본부	춘천시 우두동 761-14	200-939	033 FAX 244-3302 244-3305	
강원	서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63-2	269-804	033 FAX 452-1191 452-1192	춘천, 화천, 철원
	동부	삼척시 남양동 15-4	245-935	033 FAX 572-0913 572-0914	삼척, 동해 강릉, 태백
	남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718-3	220-836	033 FAX 732-0193 732-0194	원주, 횡성, 홍천
	중부	평창군 평창읍 하리 58-1 1층 105호	232-807	033 FAX 332-7365 332-7366	영월, 정선, 평창
	북부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192-3	215-803	033 FAX 672-0846 672-0847	양양, 속초, 양구 인제, 고성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번호		
충북	본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70-13	360-806	043 FAX	250-4060 255-4060	
	중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84-13	368-910	043 FAX	836-4050 836-4540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증평
	남부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7-14(1층)	373-874	043 FAX	731-4060 731-4170	보은, 옥천, 영동
	동부	제천시 청전동 611 제천축협 3층 301호	390-897	043 FAX	642-4060 642-4061	음성, 충주
	북부	충주시 봉방동 156-5	380-959	043 FAX	856-4060 857-4060	제천, 단양
충남	본부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중소기업지원센터 151호	336-813	041 FAX	531-3143 546-9170	
	중부	아산시 온천1동 1526	336-011	041 FAX	544-7905 544-7906	서산, 태안, 당진
	북부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34-3	356-832	041 FAX	669-7903 669-7904	천안, 아산
	동부	공주시 신관동 601-8	314-802	041 FAX	855-7905 855-7906	대전·연기, 공주 계룡, 금산
	남부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402-6	323-802	041 FAX	835-7905 835-7906	논산, 부여, 서천
	서부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03-6번지	350-805	041 FAX	631-7905 631-7906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전북	본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139	560-818	063 FAX	254-4111 254-4113	
	중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139	560-818	063 FAX	254-4111 254-4113	전주, 완주, 김제
	동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791 KT건물 3층	597-842	063 FAX	352-3376 352-3377	진안, 무주, 장수
	서부	정읍시 시기동 194-7 그린상가 306호	580-060	063 FAX	533-1604 533-1605	정읍, 고창, 부안
	남부	남원시 왕정동 20-11 번지	590-120	063 FAX	636-4007 636-4008	남원, 임실, 순창
	북부	익산시 동산동 1049-2	570-960	063 FAX	851-0434 851-0435	군산, 익산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전남	본부	광주시 서구 농성동 269-13 2층	502-810	062 FAX	351-5471 351-5473	
	중부	광주시 서구 농성동 269-13 2층	502-810	062 FAX	351-5471 351-5473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동부	순천시 가곡동 997-13 2층	540-080	061 FAX	752-9064 752-9069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서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28-5	525-814	061 FAX	322-9065 322-9067	목포, 무안 함평, 영광
	남부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30-1	527-802	061 FAX	433-9060 433-9062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경북	본부	대구시 동구 신천4동 483-18번지 2층	701-828	053 FAX	745-3230 745-3231	
	중부	대구시 동구 신천4동 483-18번지 2층	701-828	053 FAX	745-3270 745-3231	대구, 영천, 경산 청도, 고령
	동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114-5	790-882	054 FAX	285-3310 285-3393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서부	경북 상주시 무양동 276-2	742-906	054 FAX	536-0785 536-0786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남부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718-814	054 FAX	974-4236 975-3236	구미, 군위 성주, 칠곡
	북부	안동시 금곡동 7-1	760-250	054 FAX	858-5545 858-5532	안동, 영주, 의성 영양, 청송, 봉화
경남	본부	창원시 도계동 도계택지개발지구 3블록 3노트 농업인회관 3층	641-540	055 FAX	273-6820 277-4073	
	서부	경남 진주시 상대동 239-12 (2층)	660-320	055 FAX	757-6893 757-6894	진주, 사천, 함안 하동, 산청
	중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85-2 동송프라자 301호	621-831	055 FAX	312-3912 312-3913	김해, 양산, 밀양 부산, 울산
	남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5-18	638-803	055 FAX	673-3183 673-3184	마산, 고성, 통영
	북부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69-12	678-806	055 FAX	931-1053 931-1054	창녕, 의령,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출장소	제주시 노형동 1065-7번지 1층	690-803	064 FAX	745-4060 745-4061	북제주, 남제주

축산관련 단체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농협중앙회 (축산물건설팀부)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4 인솔빌딩 9층	100-874	02 FAX	2127-7414 2127-7420	
대한수의사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463-824	031 FAX	702-8686 702-1020	
대한양계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137-871	02 FAX	588-7651 588-7655	
대한양돈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8 캠포츠빌딩 4층	137-893	02 FAX	581-9751 581-9768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137-871	02 FAX	525-1053 525-1054	
한국계육협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02호	463-824	031 FAX	707-5722 707-5725	
한국낙농육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호	137-871	02 FAX	588-7055 584-5144	
한국동물약품협회	서울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201호	463-824	031 FAX	707-2470 707-0680	
한국사료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1-3	137-875	02 FAX	581-5732 587-2911	
한국오리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137-878	02 FAX	585-5287 597-5249	
한국종축개량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호	137-871	02 FAX	288-9301 522-0171	

* 기관명은 가나다순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 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번호 · 주소 및 약도

농림부 및 유관기관

농림부, 소속기관, 농진청, 산림청, 농림부 인 · 허가 법인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기관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HACCP 교육기관

축산통계

가축사육동향, 동물의 생리치 · 번식주기 · 혈액학치

공무원 휴가일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우)430-824

원장실

원장 (031)467-1701~2
부속실 467-1703
FAX 467-1796

관리과

관리과장 (031)467-1705
관리 467-1706
FAX 446-8511
경리 467-1909
FAX 467-1906
기사대기실 467-1722
민원실 467-1714
FAX 467-1997

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 (031)467-1920
기획 467-1921
혁신 467-1922
연구관리 467-1951
FAX 467-1938
전산 467-1975
FAX 467-1871

축산물검사부

부장 (031)467-1704
부속실 467-1716
FAX 467-1730

축산물안전과

축산물안전과장 (031)467-1960
1계 467-1962
2계 467-1761
FAX 467-1974

검역검사과

검역검사과장 (031)467-1741
혁신기획 467-1744
검역 467-1923
국제협력 467-1742
FAX 467-1717

축산물감시과

축산물감시과장 (031)467-1961
평가홍보 467-1893
소비자보호 467-1970
FAX 467-1737

수입위험평가과

수입위험평가과장 (031)467-1715
위험평가1계 467-1846
위험평가2계 467-1826
정보관리 467-1789
FAX 467-1883

축산물규격과

축산물규격과장 (031)467-1990
축산식품규격연구 467-1992
위생미생물연구 467-1991
FAX 467-1989

독성화학과

독성화학과장 (031)467-1980
약물잔류연구 467-1838
환경잔류연구 467-1982
FAX 467-1872
독성평가연구 467-1837
FAX 467-1845

동물약품과

동물약품과장 (031)467-1725
항생물질제제 467-1726
생물학적제제 467-1731
FAX 467-1740
화학제제연구 467-1848
FAX 467-1795
당하동계류장 (032)563-2798

질병방역부

부장실 (031)467-1901~2
부속실 467-1904
FAX 467-1730

방역과

방역과장 (031)467-1940
방역기획 467-1941
FAX 467-1729
방역관리(상황실) 467-1713
FAX 467-1956
약무 467-1942

역학조사과

역학조사과장 (031)467-1738
정보관리 467-1950
역학분석연구 467-1818
FAX 467-1739

정밀진단과

정밀진단과장 (031)467-1779
바이러스진단연구 467-1864
광견병진단연구 467-1854
세균진단연구 467-1748
조류질병진단연구 467-1771
FAX 467-1868

해외전염병과

해외전염병과장 467-1855
구제역연구 467-1719
수포성질병연구 467-1858

프리온분자생물연구 467-1861
FAX 467-1830
신종외래질병연구 467-1860
FAX 449-5822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장 (031)467-1881
보호관리 467-1866
동물보호 467-1911
FAX 467-1890
실험동물연구(블로딩) (032)563-2582
FAX (032)563-2515

질병연구부

부장 (031)467-1903
부속실 467-1904
FAX 467-1730

병리과

병리과장 (031)467-1745
전신성병리연구 467-1756
소화기병리연구 467-1747
FAX 467-1800
호흡기병리연구 467-1870
FAX 467-1780

세균과

세균과장 (031)467-1765
유방염번식장애연구 467-1767
생산성저하질병연구 467-1768
인수공통전염병연구 467-1829
기생충연구 467-1825
FAX 467-1778

바이러스

바이러스과장 (031)467-1781
돼지콜레라표준연구 467-1782
소화기질병연구 467-1783
전신성질병연구 467-1791
호흡기질병연구 467-1799
FAX 467-1797

조류질병과

조류질병과장 (031)467-1801
조류병리 467-1805
조류세균연구 467-1810
조류바이러스연구 467-1821
조류인플루엔자연구 467-1850
FAX 467-1814

기타

당직실 (031)467-1880
구내식당 467-1883
수위실 467-1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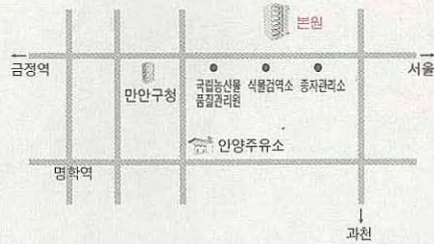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번호 · 주소 및 약도

● 본 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430-824)

TEL : (031)467-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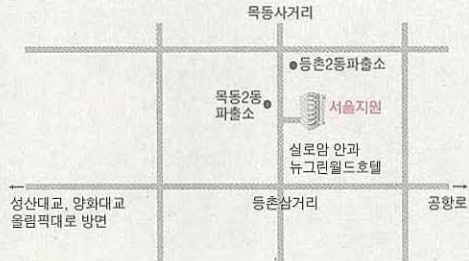
FAX : (031)446-8511



● 서울지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산23-4번지(157-843)

부 서	TEL	FAX
지원장실	(02)2650-0601	(02)2650-0620
검역과 검역	(02)2650-0611	(02)2650-0699
	0692,0612~0634	
관리	(02)2650-0603~8	(02)2650-0620
축산물위생과	(02)2650-0636~40	(02)2650-0695
정밀검사과	(02)2650-0644	(02)2650-0655
	2650-0669~0673	



● 서울지원

김포공항출장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 김포국제선청사 173호 (157-220)

부 서	TEL	FAX
사무실	(02)2664-0601,2601	(02)2664-0659
C I Q	(02)2664-0612	



● 서울지원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 항만지원센터내 (217-020)

TEL : (033)635-9125

636-1832

FAX : (033)635-9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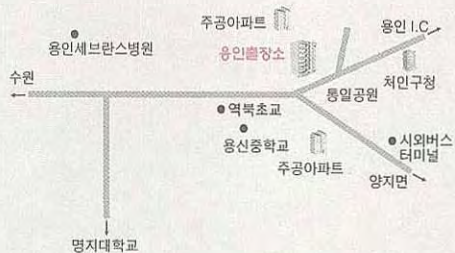
● 서울지원

용인출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19-3(449-925)

TEL : (031)281-0431~3

FAX : (031)281-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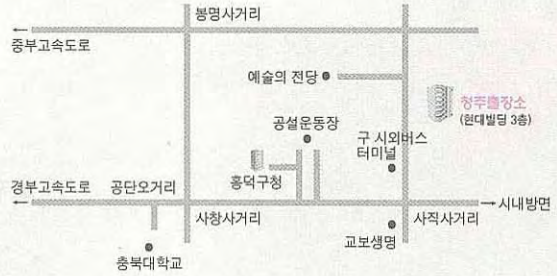
● 서울지원

청주출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2-7 현대빌딩3층
(361-101)

TEL : (043)263-42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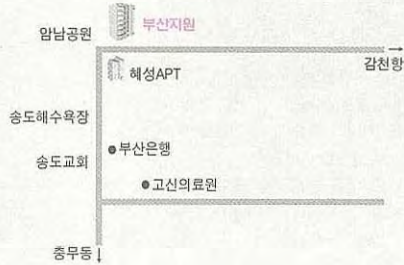
FAX : (043)263-4217



● 부산지원

부산시 서구 압남동 620-2(602-833)

부 서	TEL	FAX
지원장실	(051)603-0601	(051)253-3224
관리과	(051)603-0609	(051)253-3224
검역1과	(051)603-0620	(051)253-9630
축산물위생과	(051)603-0670	(051)603-0679
정밀검사과	(051)603-0640	(051)603-0649
정밀검사2과	(051)603-0641	(051)603-0649



● 부산지원

검역2과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부산경남본부 세관내
별관2층 202호(600-014)

TEL : (051)469-0822

467-9080

FAX : (051)464-5630



● 부산지원

신선대출장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8-12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내
(608-741)

TEL : (051)626-6744

611-6966

FAX : (051)611-7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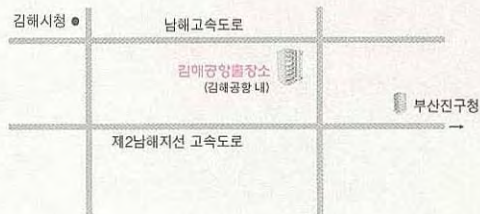
● 부산지원

김해공항출장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김해국제공항 내
(618-702)

TEL : (051)971-1925

FAX : (051)973-8366



● 부산지원

대구출장소

대구시 수성구 중동 321-2 농협 5층(704-370)

부 서	TEL	FAX
사무실	(053)763-5016	(053)763-5036
CIQ	(053)982-5096	(053)982-5096



● 부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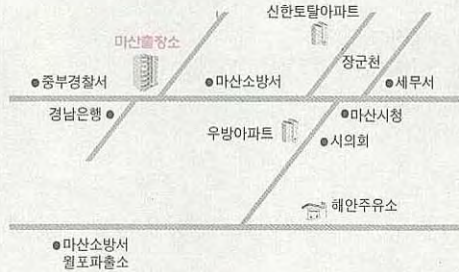
마산출장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2가 3-31번지(631-422)

TEL : (055)247-0798

223-9590

FAX : (055)245-8337



● 인천지원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정부합동청사 2층 227호 (430-718)

부 서	TEL	FAX
지원장실	(032)740-2620	(032)740-2639
관리과	(032)740-2630	(032)740-2639
검역과	(032)740-2640	(032)740-2659
축산물위생과	(032)740-2652	(032)740-2658



● 인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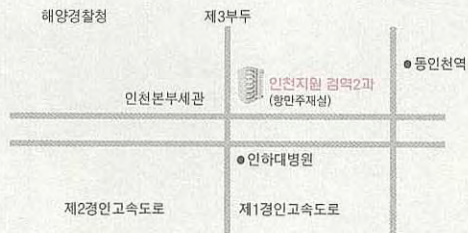
검역2과(항만주재실)

인천시 중구 향동 7가 1-17(400-800)

TEL : (032)891-1361

883-4938

FAX : (032)887-9194



● 인천지원

검역3과

인천시 중구 운서동 국제공항여객터미널 2125호 (430-718)

부 서	TEL	FAX
총괄사무실	(032)740-2660	(032)740-2669
통관CIQ	(032)740-2671	(032)740-2675
서편CIQ	(032)740-2670	(032)740-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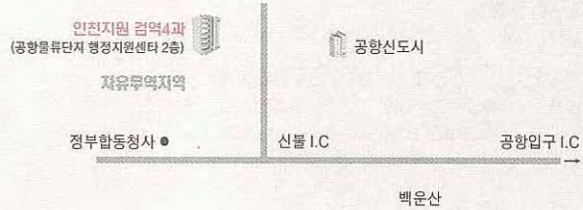
● 인천지원

검역4과/자유무역지역

인천 중구 운서동 3091-95 공항물류단지
행정지원센터 2층(430-718)

TEL : (032)740-2681

FAX : (032)740-2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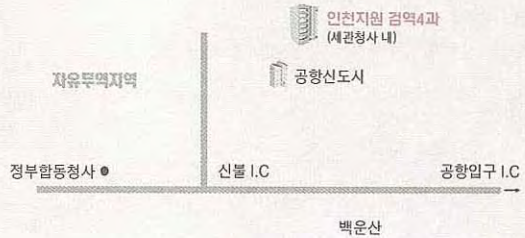
● 인천지원

검역4과/화물청사

인천시 중구 운서동 2171-1 세관청사 301호(430-717)

TEL : (032)740-2672

FAX : (032)740-2679



● 인천지원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451-821)

TEL : (031)683-2802

FAX : (031)683-0898



● 군산지원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00-115(573-010)

부서	TEL	FAX
지원장실	(063)445-1811	(063)443-4577
관리	(063)442-5071	(063)443-4577
검역	(063)445-7348	(063)443-1013
	443-4578	



● 군산지원

천안출장소

충남 아산시 온천1동 301-6(336-011)

TEL : (041)543-4570, 1

FAX : (041)546-1825



● 군산지원

광주출장소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522-110 늘제회관 1층
(506-802)

TEL : (062)945-0527

FAX : (062)945-0529



● 군산지원

광양출장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16-5(545-800)

TEL : (061)762-629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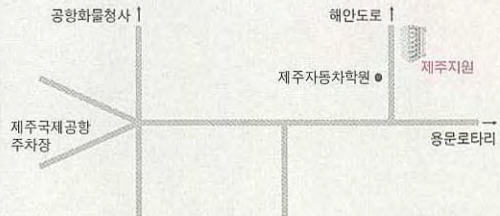
FAX : (061)762-6295



● 제주지원

제주시 용담2동 885번지(690-042)

부서	TEL	FAX
지원장실	(064)711-7071	(064)742-2293
관리	(064)711-0931 742-2294	(064)742-2293
검역	(064)712-2762 742-2295	(064)711-0525



農林部機構圖表

長官

農村振興廳
山林廳

農業通商政策官
政策補佐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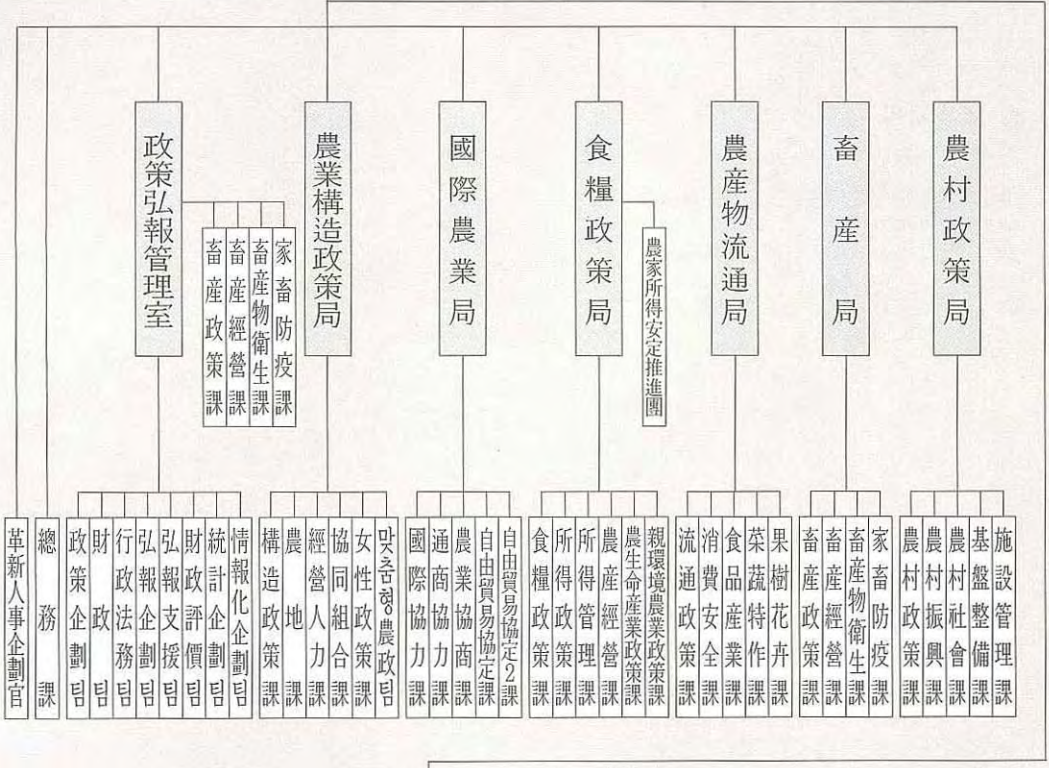
次官

次官補

監查官

監查擔當官

1次官補	1室	6局	5官	1단	31課	9팀	2擔當官				
計	政	別	고위공무원단	3	4	4	5	6	7	연	技
	務	定	4	4	5					子	能
	職	職	級	級	級	級	級	級	級	직	職
543	2	6	15	11	30	48	168	155	38	1	69



海外駐在農務官
駐OECD農務官
駐中國農務官
駐EU農務官
駐EFTA農務官
駐APEC農務官
駐日本農務官
國立農產物品質管理院
農業研修院
國立獸醫科學檢疫院
國立植物檢役所
國立種子管理所



농림부 전화번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427-719

실과명	호실	구내전화 (2110)	일반전화 (FAX)	실과명	호실	구내전화 (2110)	일반전화 (FAX)
장관실		4001	(02)503-7201	맞춤형농정팀	413	500-2151	(507-3962)
비서실	401		503-7202~3 (507-3968)	국제농업국장실	316	4220	503-7290
정책보좌관실	213	500-2005 500-2006	(503-7238)	국제협력과	317	4227	(507-2095)
차관실		4002	(02)503-7204	통상협력과	317	4240, 4244	(504-6659)
비서실	403		503-7205 (504-6658)	농업협상과	317	4253~4	(503-0673)
차관보실	404	4003	(02)503-7206	자유무역협정과	301	500-2031	(503-7247)
정책홍보관리실장실	405	4004	(02)503-7207	자유무역협정2과	301	500-2032	(507-2096)
농업통상정책관실	406	4054	(02)503-7283	식량정책국장실	308	4265	(02)503-7280
감사관실	216	4020	(02)503-7220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별관	500-2101	(504-9420)
감사담당관실	215	4023 4024	(507-2094)	식량정책과	309	4270, 4274	(507-2306)
혁신인사기획관실	418	4098	(507-4757)	소득정책과	별관	500-2102	(504-9420)
총무과장실	308	4040	(02)503-7230	소득관리과	별관	500-2111	(504-9420)
서무후생계	306	4046	(503-7160)	농산경영과	416	4289	(507-3963)
사무관리계	307	4070	(503-7249)	품질보호	별관	500-1786	
경리계	306	4060	(503-7904)	농생명산업정책과	310	4302~3	(503-7276)
용도계	305	4066	(503-6508)	친환경농업정책과	304	4314~5	(507-2096)
농업인단체계	306	4046	(503-7160)	농산물유통국장실	316	4330	(02)504-9410
홍보관리관실	408	4010	(02)503-7210	유통정책과	315	4335, 4346	(507-3965)
홍보기획팀	407	4015	(503-7902)	소비안전과	313	4349, 4350	(503-7277)
홍보지원팀	407	4019		식품산업과	312	4360~1	(503-7905)
재정기획관	419	4084	(507-2649)	채소특작과	311	4374~5	(507-5310)
정책기획팀	419	4087	(507-2649)	과수화훼과	309	4390	(503-7259)
재정팀	419	4084		축산국장실	213	4400	(02)504-9430
행정법무팀	302	4106	(503-7903)	축산정책과	210	4405	(507-3966)
투융자평가통계관실	216	4130	(02)503-7250	축산경영과	210	4419, 4420	(507-2667)
재정평가팀	217	4112	(503-7224)	축산물위생과	211	4434~5	(503-0020)
통계기획팀	218	4135	(507-3961)	가축방역과	212	4447~8	(504-0908)
정보화기획팀	217	4144, 4146	(507-1416)	농촌정책국장실	204	4460	504-9400
전산기계실	112	4161		농촌정책과	209	4465, 4469	(507-3964)
비상계획관실	204	4162	(02)503-7225	농촌진흥과	209	4477~8	(502-6734)
비상계획실	203	4166	(503-7906)	농촌사회과	207	4298	(503-7214)
농업구조정책국장	408	4170	(02)503-7260	기반정비과	209	4492~3	(503-7208)
구조정책과	413	4175	(507-3962)	시설관리과	208	4504~5	(502-6733)
농지과	413	4187	(503-7215)	기타부서			
경영인력과	413	4198~9	(503-7217)	특별대책실	416	4518	(02)503-0443 (503-0445)
협동조합과	414	4208~9	(503-5467)	자연순환팀	별관		500-2195~6 (504-9427)
여성정책과	410	4123~4	(503-7295)	신경분리기획단	별관		500-2194
				통신실	415	4545	
				농림자료실	B115	4527	
				운전원대기실	206	4526	
				앰프실	420	4528	
				여직원휴게실	205	4530	
				노동조합사무실	303	4534	
				당직실	B103	4000	503-7200
				취재접견실	202		503-7213 (503-7209)
				브리핑실			503-9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10(안양6동 433-2) (우)430-016 대표전화 : (031)446-0124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원장	446-0121~2		품질관리과	445-9366	446-0903
서무과	446-0123			446-0126	
	446-0124	446-0901	유통지도과	446-0902	443-4091
전산실	446-0134~5			446-0904	
농업정보통계과	445-9361		* 당직실	446-0130	
	449-5308	449-5294			

소속기관

지원명	주소	대표전화	우편번호
시험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60	(02)2165-6000	150-854
경기지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2-9	(031)445-1963	430-825
강원지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9-5	(033)254-2044	200-939
충북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264	(043)252-1501	360-012
충남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8-5	(042)221-0340	301-825
전북지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68	(063)243-9512	561-823
전남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8-5	(062)970-6200	506-824
경북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2-1	(053)327-1305	702-250
경남지원	경남 창원시 용호동 8-5	(055)275-2813	641-840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44-1	(064)745-6101	690-162



국립식물검역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20(안양6동 433-1) (우)430-016 대표전화 : (031)449-0525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소장	449-0523	447-0525	위험평가과장	445-1224	468-5816
서무과장	466-6803	447-0525	위험평가과	445-1225	468-5816
서무과	449-0525	447-0525	방제과장	441-9883	468-5814
검역과장	446-6804	448-6429	방제과	441-6982	468-5814
검역과	449-0524	448-6429	전산실	469-2667	448-6429
협력과장	445-1223	445-6934			
협력과	446-1926	445-6934	* 당직실	449-0525	

소속기관

지 소 명	주소	대표전화	우편번호
인천공항지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032)740-2071	400-340
중부지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3-1	(032)433-8631	420-835
영남지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051)467-0441	600-016
호남지소	전북 군산시 소룡동 11(군산외항 후문)	(063)467-3455	573-400
제주지소	제주시 삼동로 32	(064)747-6240	690-817
중부격리제배관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1	(031)202-6966	443-400
남부격리제배관리소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94	(055)335-0211	621-820

국립종자관리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10(안양6동 433-2) (우)430-016 대표전화 : (031)446-0124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소장	467-0100		재배시험과	203-9649	
관리과	467-0200			273-4145	203-7431
	467-0222	448-1216	기획실	467-0270	
종자유통과	467-0121		민원실	467-0110	
	467-0135	467-0136			
품종심사과	467-0150		* 당직실	467-0240	
	467-0112	467-0161			

소속기관

지 원 명	주 소	대표전화	우편번호
동부지소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12리 279-198	(033)336-6240	232-954
서부지소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095-47	(063)861-2594	570-892
아산지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2리 27-1	(041)541-6645	330-892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황등면 울촌리 214-2	(063)858-2195	570-811
함평지소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346-7	(061)323-0701	525-872
안동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메곡리 627-1	(054)858-5702	760-805
밀양지소	경남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68-11	(055)355-2577	627-912

농업연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0-10 (우)441-857 대표전화 : (031)299-0010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원장	299-0001		농업인력교육과장	299-0006	299-0038
학사과장	299-0003	299-0118			
교육기획과장	299-0005	299-0070	* 당직실	299-0115	

해외농무관

주재국	전화번호	주재국	전화번호
미국	(001-1-202) 939-5673	EU대표부	(001-32-2) 675-5777
이태리	(001-39-06)80246-206	중국	(001-86-10) 6532-0290
일본	(001-81-3) 5476-3267		
제네바	(001-41-22) 748-0031	OECD대표부	(001-33-1) 4405-2057

관련기관 및 단체

단 체 명	주 소	단체장전화	대표전화	우편번호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737-4415	397-5114	100-707
농업기반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031)420-3001	(031)420-3114	437-703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6300-1000	6300-1114	137-787
한국마사회	경기 과천시 주암동 685	509-1001	6006-1114	427-711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50(서둔동 250) (우)441-707 대표전화 (031)299-2200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청장		
비서실	2210~2	292-4550
차장		
비서실	2221~2	292-4547
정책홍보관리관	2230	299-2952
혁신인사기획관	2935	299-2952
정책홍보담당관	2410	299-2446
재정기획관	2240	299-2252
평가조정담당관	2901	299-2899
농업경영정보관	2300	299-2345
농업경영담당관	2310	299-2317
기술정보화담당관	2350	299-2354
감사법무담당관	2400	299-2408
총무과장	2460	299-2469
서무	2462	299-2469
경리	2477	299-2772
관리	2482	299-2469

실·과명	구내전화(031)	FAX
용도	2488	299-2493
비상계획	2494	299-2469
연구개발국장	2560	299-2568
연구정책과장	2570	299-2568
연구관리과장	2610	299-2629
국제기술협력과장	2270	293-9359
농업자원과장	2590	299-2607
바이오그린21팀장	2955	299-2968
농촌지원국장	2640	299-2642
지원기획과장	2650	299-2657
농촌자원과장	2670	299-2675
농촌생활과장	2870	299-2883
친환경기술과장	2700	299-2705
소득개발기술과장	2730	299-2745
고객지원센터소장	2828	299-2839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2815	299-2822
당직실	299-2500	299-2469

● 소속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농업과학기술원	경기 수원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031)290-0114	290-0106	441-857
작물과학원	경기 수원 권선구 수인로 151(서둔동 209)	(031)290-6600	292-5410	441-857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경기 수원 권선구 수인로 224(서둔동 225)	(031)299-1600	299-1642	441-857
농업공학연구소	경기 수원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49)	(031)290-1800	293-9623	441-857
원예연구소	경기 수원 장안구 원예연구소1길 131(이목동 475)	(031)240-3500	246-7148	440-706
축산연구소	경기 수원 권선구 축산길 77(오목천동 564)	(031)290-1500	290-1598	441-350
고령지농업연구소	강원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 20	(033)330-7700	330-7715	232-955
난지농업연구소	제주시 아연로 316(오등동 1696)	(064)741-2500	742-0154	690-150
한국농업전문학교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1)229-5114	229-5129	445-893
호남농업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81	(063)840-2100	840-2112	570-080
영남농업연구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85	(055)350-1200	352-3059	627-8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우)302-701 대표전화 (042)481-4152

실·과명	구내전화(042)	FAX	실·과명	구내전화(042)	FAX
청장			산지정책과장	481-4140	484-4641
비서실	481-4100~2	481-4104	국유림경영과장	481-4090	472-3226
			정보통계과장	481-4160	471-1443
차장			산림자원국장	481-4170~1	471-1447
비서실	481-4110~2	481-4113	산림지원과장	481-4180	471-1447
감사담당관	481-4001	481-4008	경영지원과장	481-4190	481-4198
총무과장	481-4010	472-3224	임산물이용과장	481-4200	471-1446
서무	481-4011		산림휴양정책과장	481-4210	481-4177
회계	481-4016		숲가꾸기팀장	481-4186	471-1447
비상계획	481-4026				
정책홍보관리관	481-4030~1	472-3227	산림보호국장	481-4230~1	471-1445
혁신인사기획관	481-4040	472-3227	산림보호과장	481-4240	471-1445
재정기획관	481-4050	472-3221	산불방지과장	481-4250	472-3838
행정법무담당관	481-4280	472-3222	치산과장	481-4270	472-3223
국제협력담당관	481-4080	481-4036	백두대간보전과장	481-4290	472-3229
산림정책국장	481-4120~1	481-4129	소나무재선충방제팀장	481-4174	481-4109
산림정책과장	481-4130	481-4129	당직실	481-4151	
			서울사무소	02-782-7971	782-7973

소속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	(02)961-2652	967-5101	130-712
국립수목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51-7	(031)540-1012	540-1088	487-821
산림항공관리소	서울 강서구 오곡동 244(경항공기지역내)	(02)2166-4512	2665-8153	157-26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전 대덕구 비래동 104-4	(042)620-5511	620-5529	306-808
북부지방산림관리청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	(033)734-2316	744-9830	220-100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강원도 강릉시 교 2동 420-1	(033)640-8513	648-2187	210-922
남부지방산림관리청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185-1	(054)859-1114	852-1704	760-110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산143-4	(041)850-4012	852-6137	314-170



농림부 인 · 허가 법인

사 단 법 인					
농우회	815-7621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032)762-8303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6300-8062
명농회	406-4462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737-6822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409-2090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833-1623	한국유기농업협회	406-4462	농어촌특산단지중앙연합회	576-9384
전국농업기술자협회	794-7270	한살림	3498-3782	한국농산물냉장협회	(061)453-7101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579-8121	국산공가공업협회	3277-8330	한국영지협회	(031)796-2900
한국농촌문제연구소	783-3483	한국자연농업협회	3461-1291	한국가공식품수출협회	6300-830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3401-6543	한국첨단농업시설협의회	(031)420-3881	한국화원협회	741-6200
한국농어촌복지연구원	704-4494	한국농민발명협회	(043)260-5558	한국농업시설협회	417-8651
농정연구센터	585-7790	한국농업과학협회	(031)299-2637	한국온실작물연구소	(061)381-3643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737-7921	한국쌀연구회	(031)290-6890	경상원예기술개발협회	(055)751-5485
신농민강좌연구회	(043)261-2509	홍살림	(043)833-0934	고려인삼학회	3473-8772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149-8963	정농회	984-2145	대한농수산물수출사업단	(061)685-5636
농촌돕기운동회	431-4293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055)751-5425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3401-2870
한국농선회	584-8291	한국응용생명과학회	568-0970	한국양잠연합회	780-0627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3401-9204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	(054)536-5500	농수산물유통연구소	427-0150
한국여성농민연구소	(041)548-7626	국제옥수수재단	337-7530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	(063)221-5048
전국귀농운동본부	2281-4611	환경농업단체연합회	792-0934	한국화훼종자협회	577-2014
전입농중앙연합회	(031)292-5048	미래농촌연구회	715-9582	한국생사수출조합	785-5911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2080-5631	한국불교선농회	(042)531-0026	한국농림수산물수출조합	6300-8200
전국새농민회	2080-5611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3472-8830	전국버섯생산자협회	(063)536-3206
통일농수산포럼	6300-2100	한국농림기상학회	(031)201-2651	한국농업용필름협회	732-9521
한국농업경제학회	3299-4113	한국가톨릭농민회	(041)753-6697	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431-8865
한국신지식농업인회	403-3504	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041)332-8228	농식품신유통연구회	2077-2817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727-2275	홍살리기참여연대	536-1117	한국원예학회	(031)241-2885
한국벤처농업포럼	797-2704	한국생협연대	(032)663-2295	한국전통음식연구회	741-5476
미래농정연구원	334-8523	한국부산물비료협회	522-4260	한국과프리카생산자조직회	(063)546-9953
민족농어업연구소	783-7966	돌나라농부연구회	(054)783-6857	전국채소생산자연연합회	6417-2325
한국농업사학회	(031)299-2380	생태유아공동체	(051)583-4583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061)533-4781
한국농업경영포럼	798-0305	한국쌀중심건강증진협회	408-4461	한국마늘가공협회	(053)313-2268
한국농업문제연구소	(031)585-2521	국제농업기계기술교류협회	(031)611-9375	한국포도회	(031)245-7577
농어촌여성문학회	(063)625-8709	한국농기계유통협회	(031)528-8017	고려인삼포럼	960-4356~7
전국농학계대학최고경영자과정협의회	(031)960-4342	우리쌀사랑시민운동	(031)904-8970	한국시장유통연구원	(041)550-4531
한국농업CEO연합회	6300-8399	친환경농업포럼	585-4535	고령지체소전국협의회	2080-6335
농산어촌홍보전략포럼	6300-8270	한국쌀전입농중앙연합회	585-5562	제주감귤협의회	(064)720-1341
농협동인회	734-1108	RPO협의회	(031)423-0872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3368-4643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2080-4938	한국종자연구회	(031)467-0190	국제꽃예술인협회	743-4562
대한곡물협회	583-2111	대한잡사회	783-6073	한국인삼산전전략화협의회	018-312-0079
한국재분공업협회	777-9451	한국잡종협회	(061)783-7671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6300-2984
한국양곡가공협회	(042)628-5662	한국상모협회	783-7673	한국생약협회	967-8133
한국전분당협회	(031)440-9941	한국화훼협회	579-2000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	2080-6363
농약공업협회	3474-1590	한국중군생산협회	(043)873-1062	한국차생산자연연합회	(061)853-0052
한국쌀가공식품협회	503-5044	대한두체협회	2203-4500	한국난매제자협회	(031)755-4735
한국종자협회	578-7637	한국식품과학회	566-9937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2080-6346
전국양곡상연합회	497-1011	동북아농축산업유통연구원	6300-8805	한국외식경영학회	(031)249-9545
한국대두가공협회	719-9480	한국과수협회	(031)240-3717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2080-6364
농약판매협회	585-2145	한국과수종모협회	(041)575-5337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031)634-3824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407-3718	한국화훼유통단체연합회	754-0754

한국조리과학회	872-6855	한국경주마생산지협회	(064)782-4230	한국농촌건축학회	(041)560-1333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2080-6335	한국관상조류협회	928-6323	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원	(031)420-3131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3401-4001	축산기업중앙회	466-2573	전원생활협회	(033)765-4070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053)950-6781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401-7722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2080-5639
세계음식문화연구원	511-1540	한국육가공협회	588-1264	FAO한국협회	(031)440-9080
전주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063)272-699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78-7861	세계농정연구원	6300-8780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063)533-8020	한국식육처리가능사협회	575-6676	동북아개발	3472-0111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408-2371	진국한우협회	525-1053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063)232-9636
한국중증음식문화학회	(042)487-2201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031)224-0842		
한국업마문화협회	(061)798-7000	한국양돈연구회	588-5990	재 단 법 인	
한국당근생산자협의회	(051)271-0111	한국경마장조교사협회	509-2758	가나안복지회	(033)762-5201
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80-6342	서울마주협회	507-2388	일가기념사업재단	564-5990
한국육묘산입연합회	(061)745-0888	기수협회	509-1781	대산농촌문화재단	721-3285
한국꽃문화협회	018-221-5533	제주마주협회	(064)749-6909	한사랑농촌문화재단	545-2219
한국외식산업학회	400-5337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509-2634	농업정책자금관리단	780-4721
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	2080-6344	한국애견협회	2265-3349	농협문화복지재단	397-5632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053)950-5728	한국특수가축협회	482-9071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	509-2242
한국김치협회	(051)510-2839	한국토종벌협회	(043)298-6789	한국식품영양재단	702-7785
한국참외생산자협회	2080-6345	한국매추리협회	2606-3886	한국농수산진흥재단	533-6145
한국신선편이농산물협회	011-502-7262	한국경주마생산지협회	(064)784-4230	이시돌농촌사업개발협회	(064)796-4184
먹거리사랑시민연합	011-870-5077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761-0930	논비산마을	(043)832-8063
한국유통혁신연구원	2640-6886	과천마주클럽	509-2630	한국동물보호협회	(053)622-3588
한국플라워통신매달협회	575-5500	한국동물복지협회	2292-6337	정옥에향사업회	(031)252-3431
한국전통주연구소	389-8611~2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807-8417	도드람농사문화재단	(031)632-0756
한국식생활문화학	793-4804	제주마생산지협회	(064)724-4436	카길에그리프리나문화재단	(031)710-6006
한국참다래농업연구회	2080-6342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3401-0144	목운문화재단	6300-8210
한국사료협회	581-5721	한국자조금연구원	516-6415	한국농촌개발연구소	585-3063
한국중축개량협회	588-9301	한국계란유통협회	797-2455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575-2368
한국양육협회	587-4343	한국축산경제연구원	873-1997	지역재단	585-7731
한국애견연맹	2278-0661	한국토봉협회	(063)636-9556	국제농업개발원	408-9423
한국양봉협회	3486-0882	진국유산양협회	(043)731-8013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031)460-8888
한국유가공협회	584-3631	부산경남경마공원마주협회	(051)941-9970		
한국단미사료협회	585-2223	축산물HACCP기준원	(031)465-6677	특 수 법 인	
대한양돈협회	581-9751	한국농공학회	562-3627	한국마사회	509-1212
한국낙농육우협회	588-7055	농촌마을주택연구회	325-4911	낙농진흥회	6007-5503
대한양계협회	588-7651	농공회	588-5639	축산물등급관정소	(031)390-5500
한국계육협회	(031)707-5722	한국관계배수위원회	(031)400-1755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한국대용유사료협회	597-0688	한국관광농원협회	(033)344-2378		
축협동우회	499-2963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041)753-6697	협 동 조 합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3471-0603	농수지킴이협회	406-4462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453-3921
한국동물자원과학회	562-0377	한국농어촌정책연구원	365-8399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785-1032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새만금법국민협의회	3482-0144	한국곡물음료제가공업협동조합	2652-516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031)391-9767	농촌체험휴양협회	430-2686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705-1006
양돈산학협동연구회	(055)751-3179	한국농촌계획학회	880-4592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785-4222
한국육류수출인협회	(031)394-8147	한국농촌관광경영인협회	(031)774-4929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416-0250
한국염소축산업협회	(053)850-6723	도시농촌문화교류협의회	928-4056		
한국오리협회	582-5288	한국녹색채협포럼	574-8241		

● **전국수의과대학(10)**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02)880-1234	(02)880-1212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02)450-3038	(02)450-3037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033)250-8650, 8671	(033)256-3722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360-763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48	(043)261-2595	(043)267-3150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042)821-6751	(042)822-4216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560-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063)270-3777	(063)270-3780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062)530-2804	(062)530-2809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053)950-6896, 5951	(053)950-5955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1-5805	(055)751-5803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064)754-3360	(064)756-3354

● **민간병성감정기관(8)**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
대상팜스코(주) 축산과학연구소	456-843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곡리 273-4	(031)677-2854	(031)670-2859
(주)바이엘코리아	425-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6-1	(031)490-4982~3	(031)490-4983
(주)중앙백신연구소	301-2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9-3	(042)863-9322	(042)863-8454
제일사료(주) 부설기술연구소	306-8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36	(042)624-4101, 4104	(042)624-4108, 4111
(주)코미팜	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6-6	(031)498-2124	(031)498-2120
(주)제일바이오	425-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6-2	(031)494-8226, 8406	(031)492-0586
(주)옵티팜솔루션센터	330-834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48	(041) 558-7742	(041)558-7743
(주)우리생명과학	336-795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호서대 TBI 센터	(041)531-1636	(041)532-1636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 국·공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축산연구소	441-7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	(031)290-1500
식품의약품안전청	122-704	서울 은평구 녹번 5	(02)380-165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	(02)566-314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00-103	인천 중구 신흥동3 7-241	(032)891-090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02-858	대전 서 탄방 608	(042)488-551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08-829	부산 남구 용당 123-7	(051)611-597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00-480	광주 북구 오룡 1110-5	(062)602-130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06-040	대구 수성 황금 21 846-3	(053)765-6104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37-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3	(02)570-3114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405-835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00-1	(032)467-8322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616-810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76-1	(051)754-2320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302-789	대전 유성 구성 21-2	(042)863-6295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500-210	광주 북구 본촌 379-2	(062)571-0498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706-732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1	(053)746-0104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680-813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052)229-5242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442-701	경기 수원 권선 금곡 746-15	(031)294-6761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200-822	강원 춘천 신북읍 신천리 727	(033)243-9580~3
충남도축산위생연구소	350-821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041)631-3091
전북도축산진흥연구소	560-761	전북 전주시 완상구 효자3동 1052-1	(063)220-6500
경북도가축위생시험소	702-702	경북 대구 북구 학정동 859-3	(053)320-0295
충북축산위생연구소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동 344-53	(043)52-8602
전남축산기술연구소	506-555	전남 광주시 광산구 동산 61	(062)944-2450
경남축산진흥연구소	660-985	경남 진주시 초장동 423	(055)750-6342
제주축산진흥원	690-700	제주 노형동 315-7	(064)741-3500
한국식품연구원	463-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 46-1	(031)780-91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6-05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02)826-2100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한국식품연구소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6	(02)585-5052
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609-815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2-12	(051)518-1024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153-803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02)856-5615
랩프린터어	443-76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031)259-6891
에이앤드에프	426-82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3-5	(031)493-3547
삼성에버랜드(주)식품연구소	449-912	경기 용인 구성읍 마북리 산 50	(031)288-0585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	336-813	충남 아산시 탑정면 호산리 406-3	(041)548-3696
(주)유니푸드테크	621-907	경남 김해시 삼정동 108-8	(055)326-6909
(주)과학기술분석센터	306-8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7-7	(042)931-2511
농협중앙회축산연구소중앙분석센터	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031)393-8130
(주)영웅환경생명연구원	712-210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경북테크노	(053)8147-2399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053)640-6460
동진분석기술연구소	630-813	경남 마산시 양덕2동 160-4번지	(055)293-5440
CJ푸드시스템 식품안전센터	449-9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56-2	(031)288-3951
미래생활환경연구원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031)292-4477
(주)한국물류 품질연구소	449-120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853-1	(031)260-5841
(주)영웅 광주환경생명연구원	502-153	광주시 서구 매월동 952-39	(062)674-6650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	130-02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02)2210-2776
대한식품연구소	403-030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23-3	(032)524-0682

●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한국식품연구원	463-4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46-1	(031)780-91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검사업무휴자:06.7.10-12.31)	156-08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02)826-2100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한국식품연구소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6	(02)585-5052
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609-815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2-12	(051)518-102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153-803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02)856-5615
랩프린티어	443-766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8	(031)259-6891
에이앤드에프	426-82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3-5	(031)493-3547
삼성에버랜드(주)식품연구소	449-912	경기 용인 구성읍 마북리 산 50	(031)288-0789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	336-816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06-3	(041)548-3696
(주)유니푸드테크	621-907	경남 김해시 부원동 630-3 화산빌딩	(055)326-6909
(주)과학기술분석센터	306-8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7-7	(042)931-2511
농협중앙회축산연구소중앙분석센터	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031)393-8130
(주)영웅환경생명연구원	712-210	경북 경산시 옥산동 171-4	(053)8147-2399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053)640-6460
동진분석기술연구소	630-813	경남 마산시 양덕2동 160-4번지	(055)293-5440
CJ푸드시스템 식품안전센터	449-906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156-5	(031)288-3951
미래생활환경연구원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7	(031)292-4477
현대에프앤지	780-935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853-1	(031)260-5841
(주)영웅 광주환경생명연구원	502-153	광주시 서구 매월동 952-39	(062)674-6650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02)2210-2776
대한식품연구소	403-858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23-3	(032)524-0682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312-940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번지	(041)750-6572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445-89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336-27	(031)290-8218
롯데쇼핑(주)상품시험연구소	150-096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1번지	(02)2637-5922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601-839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3-17 해광빌딩	(051)466-1231

 HACCP 교육기관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대한수의사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031)702-8685~6
한국식품연구원	463-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46-1 표준화연구팀	(031)780-9167~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6-05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경영지원사업단교육훈련팀	(02)2191-7441
축산물 HACCP 기준원	430-73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안양과학대학벤처센터	(031)465-6677

가. 주요 가축

(단위 : 천두·천수, 천호)

연도	축종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90	1,622	620	504	33	4,528	133	74,463	161		
'92	2,019	585	508	28	5,463	99	73,324	188		
'93	2,260	570	553	28	5,928	70	72,945	192		
'94	2,393	540	552	26	5,995	54	80,569	189		
'95	2,594	519	553	24	6,461	46	85,800	203		
'96	2,844	513	552	21	6,516	33	82,830	187		
'97	2,735	465	544	17	7,096	27	88,251	162		
'98	2,383	427	539	16	7,544	27	85,847	168		
'99	1,952	350	535	14	7,864	24	94,587	210		
'00	1,590	290	544	13	8,214	24	102,547	218		
'01	1,406	235	548	13	8,720	20	102,393	201		
'02	1,410	212	544	12	8,974	17	101,693	176		
'03	1,480	188	519	11	9,231	15	99,019	144		
'04	1,666	189	497	10	8,908	13	106,736	131		
'05	1,819	192	479	9	8,962	12	109,628	136		

※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6)

나. 기타 가축

구 분	'90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산양	호수	49천호	83	64	60	54	52	51	45	43	42	41
	두수	211천두	681	604	539	468	449	440	444	483	527	523
사슴	호수	5.8천호	9	10	11	11	12	13	12	12	11	10
	두수	53천두	100	128	137	141	150	156	153	145	138	126
토끼	호수	14천호	10	8	9	14	17	17	14	12	10	9
	두수	156천마리	218	197	259	462	436	416	362	376	320	331
오리	호수	14천호	9	9	9	13	13	13	12	10	8	9
	두수	717천수	2,357	2,709	3,167	4,787	5,134	6,716	7,824	9,017	8,266	8,389
꿀벌	호수	45천호	43	41	41	41	41	43	45	44	41	41
	두수	527천군	764	1,006	947	1,081	1,240	1,530	1,772	1,872	2,013	2,090
말	호수	384호	351	405	445	463	520	637	738	805	860	965
	두수	4.9천두	6.2	7.6	8.5	8.2	11	13	14	16	19	20
칠면조	호수	829호	1,074	769	837	867	989	1,206	1,153	954	994	946
	두수	5천마리	11	8	8	9	13	16	24	17	19	16
타조	호수	호	-	-	-	-	-	529	664	530	562	404
	두수	천마리	-	-	-	-	-	15	18	11	8	6
오소리	호수	호	-	-	-	-	-	153	182	176	168	160
	두수	천마리	-	-	-	-	-	4	4	5	6	8

※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6)

● 동물의 생리치

구분 단위	체온 °C ± 0.5°	심장박동수 회/분(범위)	호흡수 회/분(범위)	요배설량 (mL/Kg body wt/day)
소 Cattle	38.3~38.6	48~84	26~50	17~45
돼지 Pig	39.2	70~120	32~58	5~30
말 Horse	37.6~37.8	28~40	10~14	3~18
양 Sheep	39.1	70~80	16~34	10~40
염소 Goat	39.1	70~80	16~34	10~40
개 Dog	38.9	70~120	18~34	20~100
고양이 Cat	38.6	120~140	16~40	10~20

● 동물의 번식주기

동물	발정주기	발정의 길이	배란시기	수정란의 자궁진입시기	착상시기	자궁의 형태	임신기간
소	21일	18시간 12시간	발정종료후	3~4일	30~35일 태반	결합용모 태반	280일
돼지	21일	45시간	발정시작후 36~40시간	3~4일	14~20일	상피용모 태반	113일
말 *	21일	5~6일 마지막 날	발정기	3~4일	30~35일 태반	상피용모	345일
양 *	17일	36시간	발정시작후 30시간	3~4일	15~18일	결합용모 태반	147일
염소	20일	40시간 30~36시간	발정시작후	4일	20~25일 태반	결합용모	147일
개	7~8개월	발정전기9일 발정전기7~9일	발정첫날이나 둘쨰날	5~6일	15일	내피용모 태반	64일
고양이 *	16일(비임신) 36일(가임신)	5~6일	교미후 24~32시간	4일	13일	내피용모 태반	65일

* 계절번식동물

● 동물의 혈액학치

구분	Conventional (USA) Units	SI Units	소	돼지	말	양	염소	개	고양이
PCV (hematocrit)	%	×10-2L/L	24-46	36-43 (26-35) ^a	32-48 ^b	27-45	22-38	37-55 (25-34) ^a	30-45 (24-34) ^a
Hemoglobin (Hgb)	g/dL	×10g/L	8-15	9-13	10-18	9-15	8-12	12-18	8-15
Red blood cells	×106/ μ L	×1012g/L	5-10	5-7	6-12	9-15	8-18	5.5-8.5	5-10
Reticulocytes	%	%	0	0-12	0	0	0	0-1.5	0-1
Mean corpuscular volume	fL	fL	40-60	52-62	34-58	28-40	16-52	60-77	39-55
Mean corpuscular Hgb	pg	pg	11-17	17-24	13-19	8-12	5.2-8	19.5-24.5	13-17
Mean corpuscular Hgb concentration	g/dL	×10g/L	30-36	29-34	31-37	31-34	30-36	32-36	30-36
Platelets	×105/ μ L	×1011/L	1-8	2-5	1-6	2.5-7.5	3-6	2-9	3-7
White blood cells	×103/ μ L	×109/L	4-12	11-22	6-12	4-12	4-13	6-17	5.5-19.5
Neutrophils (segmented)	% ×103/ μ L	% ×109/L	15-45 0.6-4	20-70 2-15	30-75 3-6	10-50 0.7-6.0	30-48 1.2-7.2	60-70 3-11.4	35-75 2.5-12.5
Neutrophils (band)	% ×103/ μ L	% ×109/L	0-2 0-0.12	0-4 0-0.8	0-1 0-0.1	0	드물다	0-3 0-0.3	0-3 0-0.3
Lymphocytes ×103/ μ L	% ×109/L	% 2.5-7.5	45-75 3.8-16.5	35-75 1.5-5	25-60 2-9	40-75 2-9	50-70 1-4.8	12-30 1.5-7	20-55
Monocytes ×103/ μ L	% ×109/L	% 0.025-0.85	2-7 0-1	0-10 0-0.6	1-8 0-0.75	0-6 0-0.55	0-4 0.15-1.35	3-10 0-0.85	1-4
Eosinophils ×103/ μ L	% ×109/L	% 0-2.4	2-20 0-1.5	0-15 0-0.8	1-10 0-1	0-10 0.05-0.65	1-8 0.1-0.75	2-10 0-0.75	2-12
Basophils ×103/ μ L	% ×109/L	% 0-0.2	0-2 0-0.5	0-3 0-0.3	0-3 0-0.3	0-3 0-0.12	0-1	드물다	드물다
Myeloid /erythroid ratio			0.3-1.8:1	1.2-2.2:1	0.9-3.8:1	0.8-1.7:1	0.7-1.0:1	0.75-2.4:1	0.6-3.9:1
Plasma proteins ^c	g/dL	×10g/L	6-8	06-08	6-8.5	6-7.5	6-7.5	6-7.5	6-7.5
Plasma fibrinogen	g/dL	×10g/L	0.1-0.6	0.2-0.4	0.1-0.4	0.1-0.5	0.1-0.4	0.15-0.3	0.15-0.3

공무원 휴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 경조사별 휴가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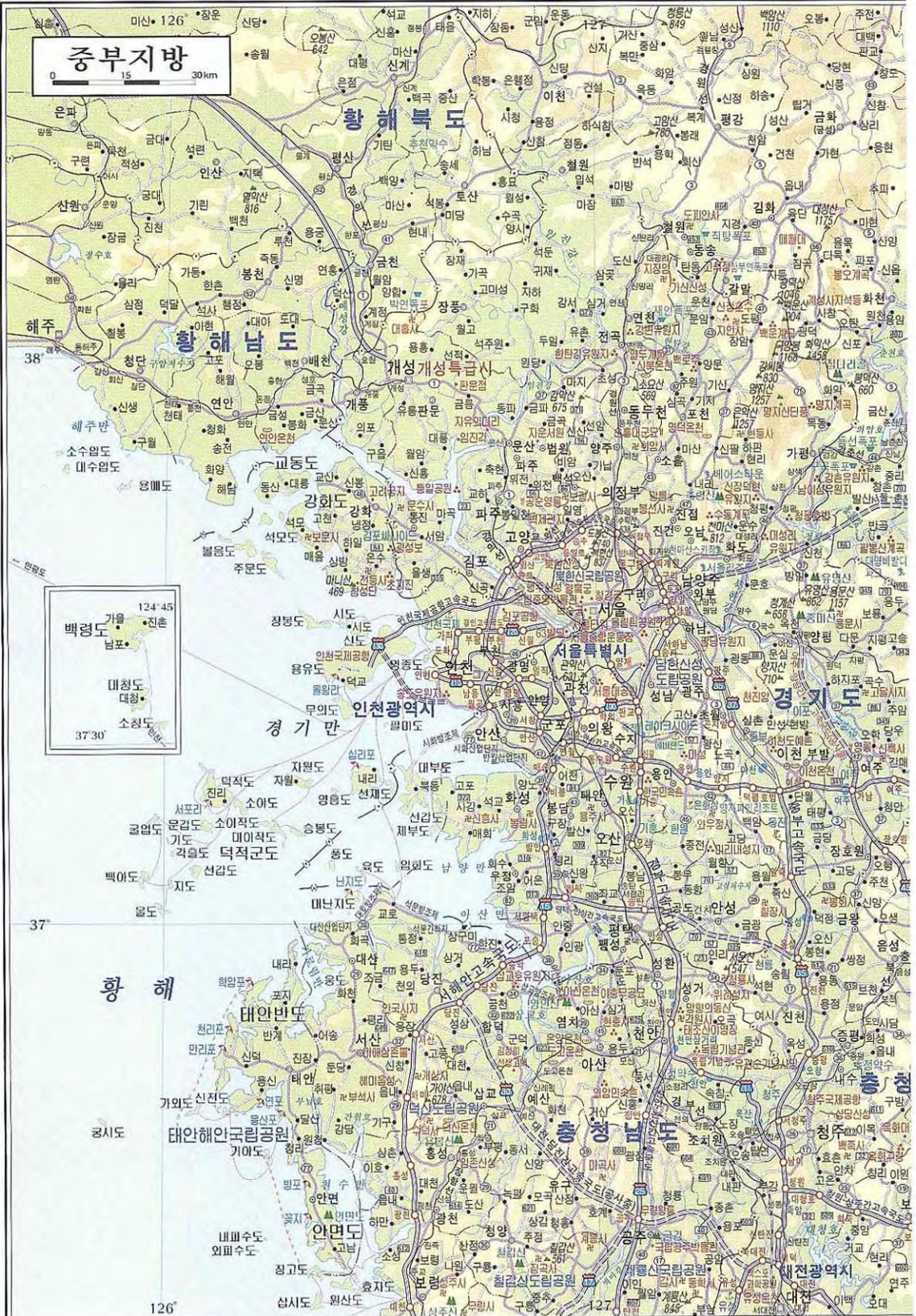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출산	배우자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 기타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출산일수	임신 8월이후 출산 전후(유산, 조산, 사산 포함)	90일
여성보건휴가	매생리기, 임신의 경우 정기검진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매월 1일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얻을 수 있음.(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1일 1시간

중부지방

0 15 30km



124 45
가을
백령도
남포
대청도
대청
소청도
37 30

황해

태안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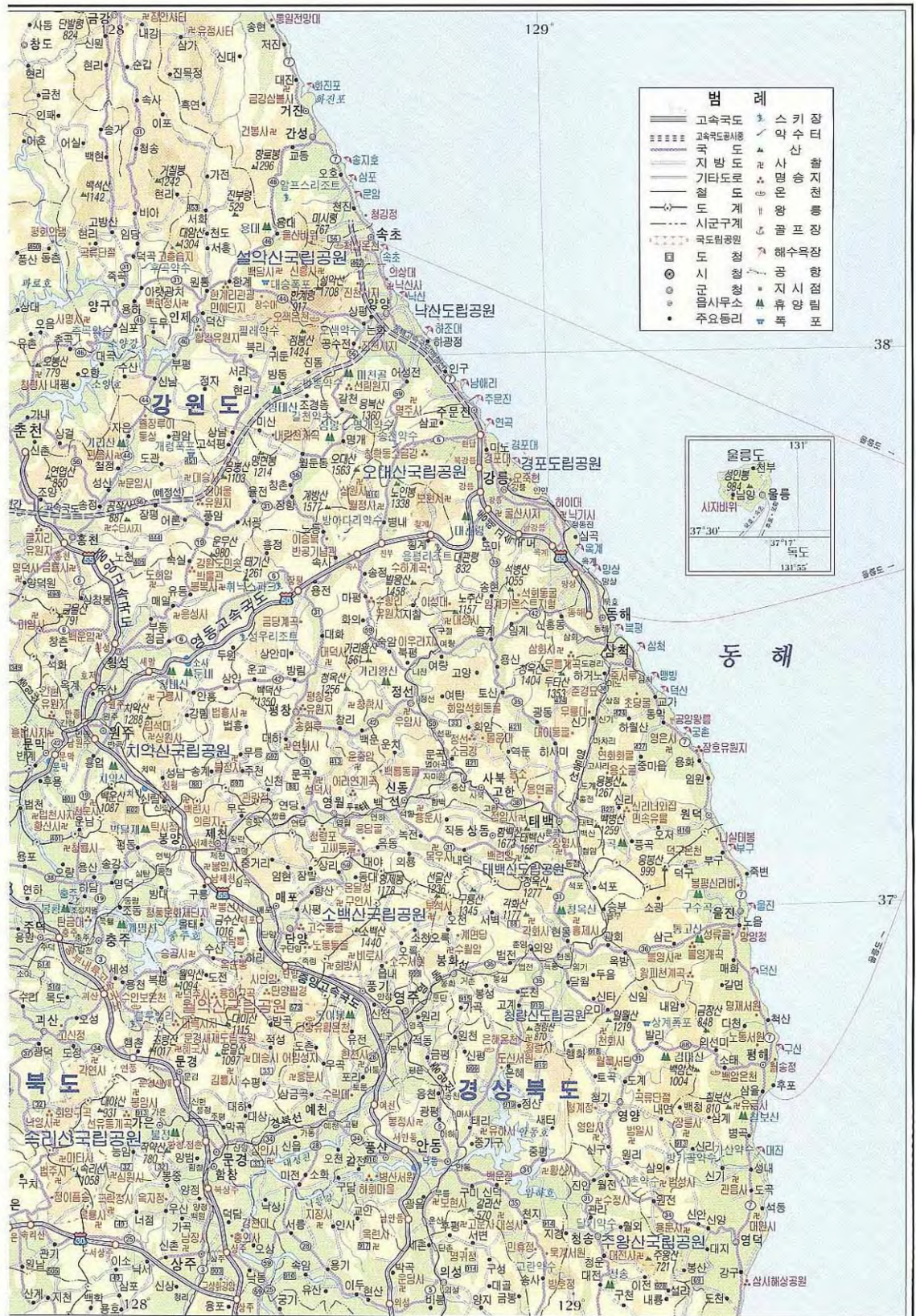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126°

127°

범례			
	고속국도		스키장
	고속도로		약수터
	국도		산
	지방도		사면
	기타도로		승전
	철도		은천
	도계		홍
	시군계		창
	국도협곡		골프장
	도청		해수욕장
	시청		합
	군청		시점
	읍사무소		점
	주요도로		포



동해

남부지방

0 15 30km

126°

126°

127°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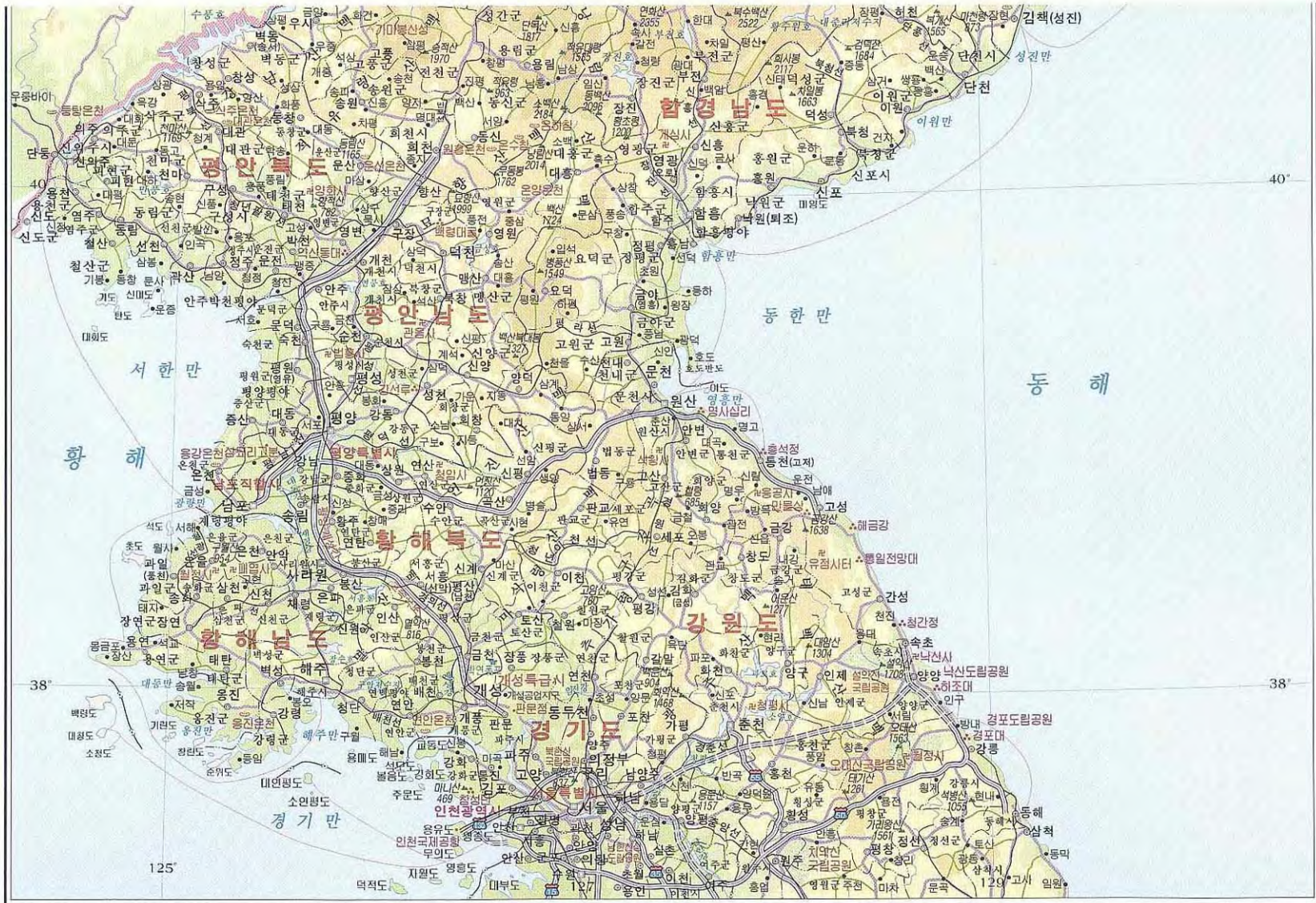
황해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도 대섬부도 상백도





북극해

그린란드

동시배리아해

보퍼트해

퀵리치세제도

베링만

르스크제도

우인경성

우코트해

북극지선

미국

캐나다

뉴펀슬랜드

아이슬란드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북대평양

북대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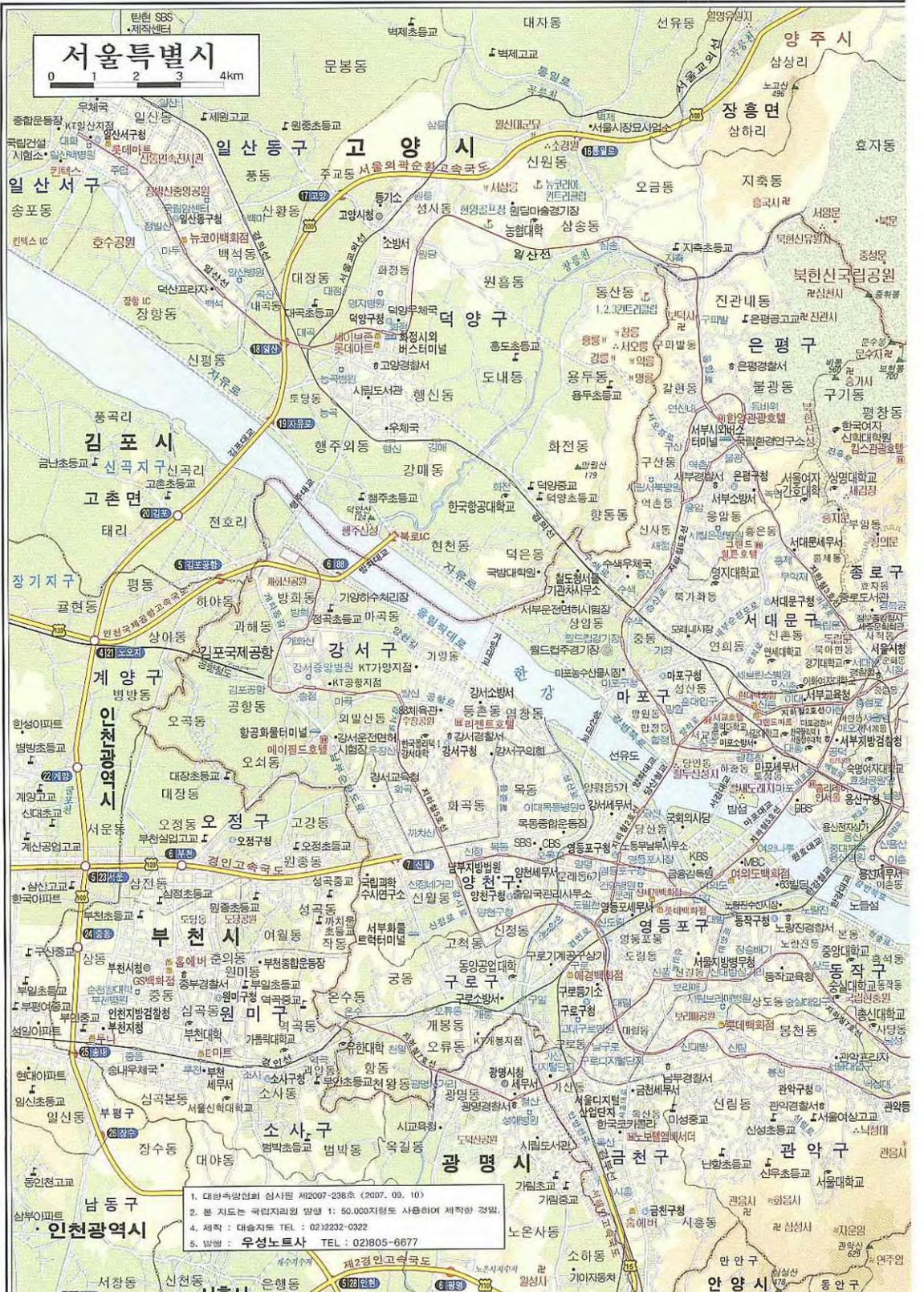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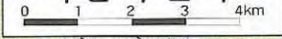
북대평양

북대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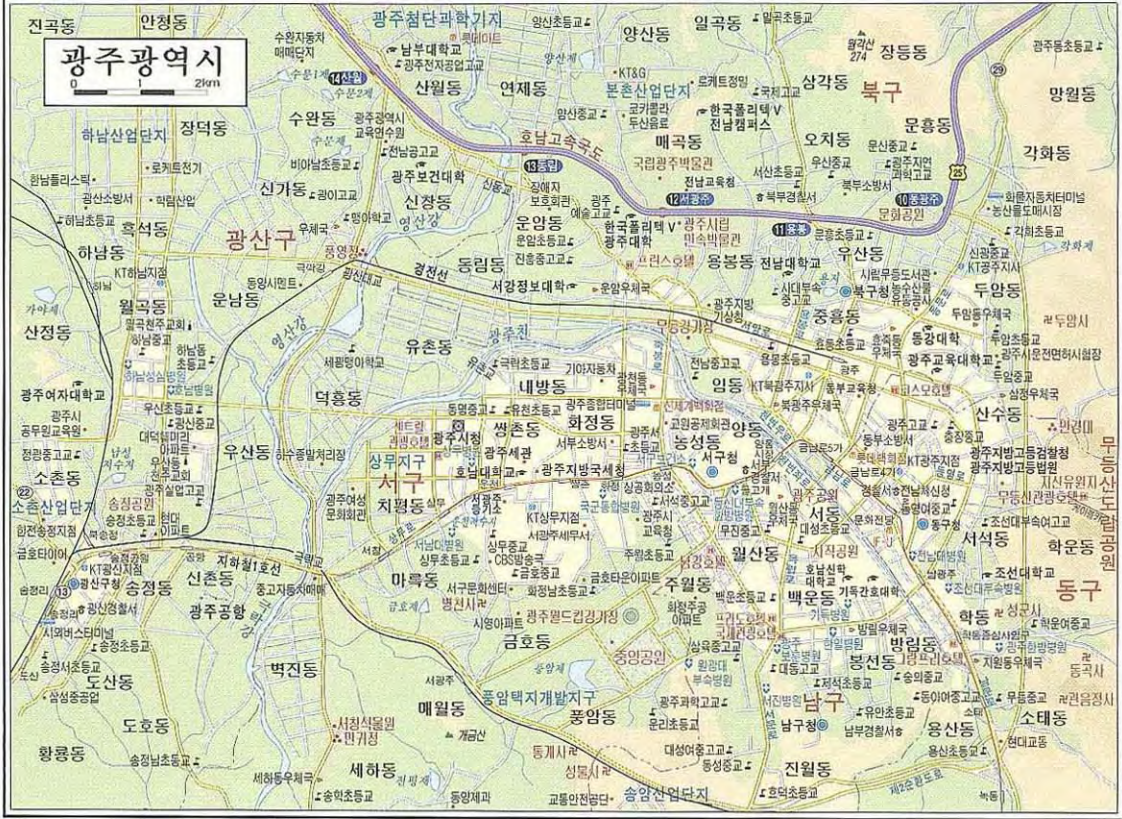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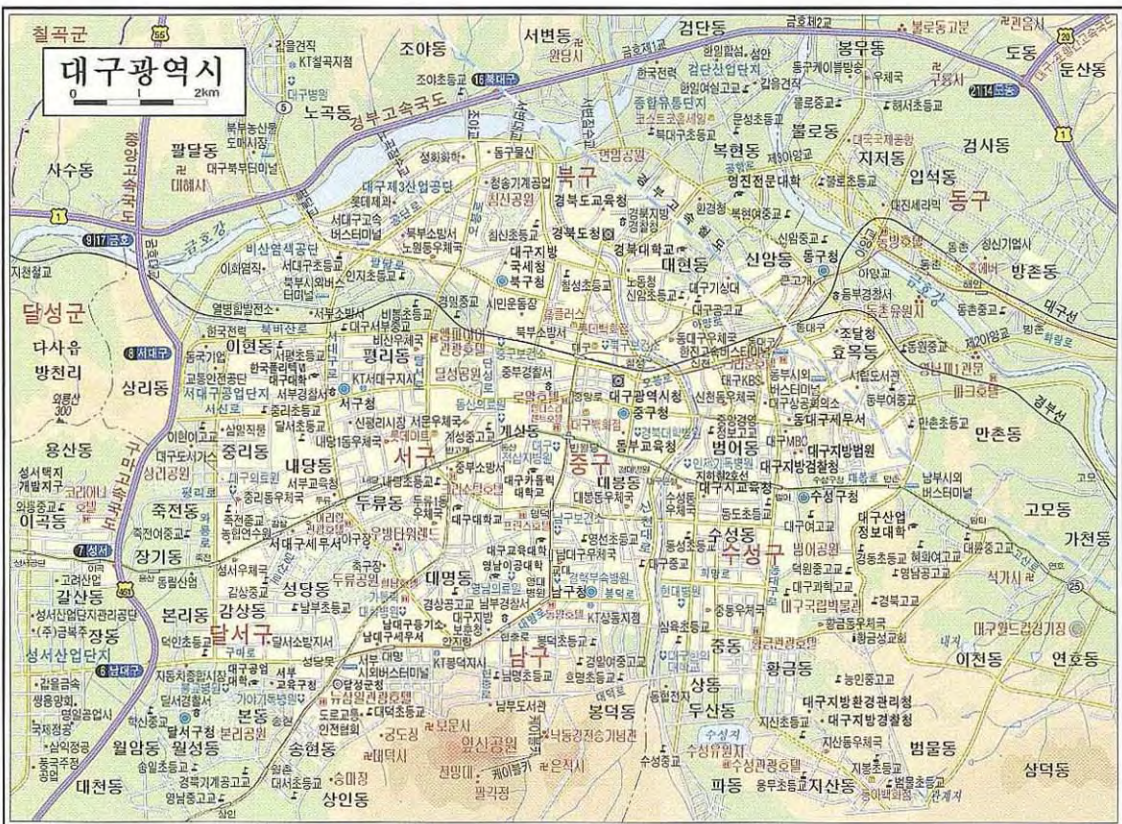
10:00 12:00 MIDNIGHT AM2:00 AM4:00 AM6:00 AM8:00



서울특별시



1. 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07-238호 (2007. 09. 10)
2. 본 지도는 국립지리원 Maßstab 1: 50,000지형도 사용하여 제작한 것임.
3. 제작 : 대송지도 TEL : 02)2232-0322
4. 발행 : 우성노트사 TEL : 02)805-6677





가축질병 현장방역지도 수첩

2007년 10월 일 인쇄

2007년 10월 일 발행

발행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발행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안양6동 480)
전화) 031-467-1941 팩스) 031-467-1729

감 수 : 손찬준

편저자 : 이오수, 장재홍, 이제용, 김석재, 박수연, 류정임

인쇄처 : 건양인쇄사

가. 주요 가축

(단위 : 천두·천수, 천호)

연도	축종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90	1,622	620	504	33	4,528	133	74,463	161		
'92	2,019	585	508	28	5,463	99	73,324	188		
'93	2,260	570	553	28	5,928	70	72,945	192		
'94	2,393	540	552	26	5,995	54	80,569	189		
'95	2,594	519	553	24	6,461	46	85,800	203		
'96	2,844	513	552	21	6,516	33	82,830	187		
'97	2,735	465	544	17	7,096	27	88,251	162		
'98	2,383	427	539	16	7,544	27	85,847	168		
'99	1,952	350	535	14	7,864	24	94,587	210		
'00	1,590	290	544	13	8,214	24	102,547	218		
'01	1,406	235	548	13	8,720	20	102,393	201		
'02	1,410	212	544	12	8,974	17	101,693	176		
'03	1,480	188	519	11	9,231	15	99,019	144		
'04	1,666	189	497	10	8,908	13	106,736	131		
'05	1,819	192	479	9	8,962	12	109,628	136		

※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6)

나. 기타 가축

구 분	'90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산양	호수	49천호	83	64	60	54	52	51	45	43	42	41
	두수	211천두	681	604	539	468	449	440	444	483	527	523
사슴	호수	5.8천호	9	10	11	11	12	13	12	12	11	10
	두수	53천두	100	128	137	141	150	156	153	145	138	126
토끼	호수	14천호	10	8	9	14	17	17	14	12	10	9
	두수	156천마리	218	197	259	462	436	416	362	376	320	331
오리	호수	14천호	9	9	9	13	13	13	12	10	8	9
	두수	717천수	2,357	2,709	3,167	4,787	5,134	6,716	7,824	9,017	8,266	8,389
꿀벌	호수	45천호	43	41	41	41	41	43	45	44	41	41
	두수	527천군	764	1,006	947	1,081	1,240	1,530	1,772	1,872	2,013	2,090
말	호수	384호	351	405	445	463	520	637	738	805	860	965
	두수	4.9천두	6.2	7.6	8.5	8.2	11	13	14	16	19	20
칠면조	호수	829호	1,074	769	837	867	989	1,206	1,153	954	994	946
	두수	5천마리	11	8	8	9	13	16	24	17	19	16
타조	호수	호	-	-	-	-	-	529	664	530	562	404
	두수	천마리	-	-	-	-	-	15	18	11	8	6
오소리	호수	호	-	-	-	-	-	153	182	176	168	160
	두수	천마리	-	-	-	-	-	4	4	5	6	8

※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6)

● 동물의 생리치

구분 단위	체온 °C ± 0.5°	심장박동수 회/분(범위)	호흡수 회/분(범위)	요배설량 (mL/Kg body wt/day)
소 Cattle	38.3~38.6	48~84	26~50	17~45
돼지 Pig	39.2	70~120	32~58	5~30
말 Horse	37.6~37.8	28~40	10~14	3~18
양 Sheep	39.1	70~80	16~34	10~40
염소 Goat	39.1	70~80	16~34	10~40
개 Dog	38.9	70~120	18~34	20~100
고양이 Cat	38.6	120~140	16~40	10~20

● 동물의 번식주기

동물	발정주기	발정의 길이	배란시기	수정란의 자궁진입시기	착상시기	자궁의 형태	임신기간
소	21일	18시간 12시간	발정종료후	3~4일	30~35일 태반	결합용모 태반	280일
돼지	21일	45시간	발정시작후 36~40시간	3~4일	14~20일	상피용모 태반	113일
말 *	21일	5~6일 마지막 날	발정기	3~4일	30~35일 태반	상피용모	345일
양 *	17일	36시간	발정시작후 30시간	3~4일	15~18일	결합용모 태반	147일
염소	20일	40시간 30~36시간	발정시작후	4일	20~25일 태반	결합용모	147일
개	7~8개월	발정전기9일 발정전기7~9일	발정첫날이나 둘째날	5~6일	15일	내피용모 태반	64일
고양이 *	16일(비임신) 36일(가임신)	5~6일	교미후 24~32시간	4일	13일	내피용모 태반	65일

* 계절번식동물

● 동물의 혈액학치

구분	Conventional (USA) Units	SI Units	소	돼지	말	양	염소	개	고양이
PCV (hematocrit)	%	×10-2L/L	24-46	36-43 (26-35) ^a	32-48 ^b	27-45	22-38	37-55 (25-34) ^a	30-45 (24-34) ^a
Hemoglobin (Hgb)	g/dL	×10g/L	8-15	9-13	10-18	9-15	8-12	12-18	8-15
Red blood cells	×106/ μ L	×1012g/L	5-10	5-7	6-12	9-15	8-18	5.5-8.5	5-10
Reticulocytes	%	%	0	0-12	0	0	0	0-1.5	0-1
Mean corpuscular volume	fL	fL	40-60	52-62	34-58	28-40	16-52	60-77	39-55
Mean corpuscular Hgb	pg	pg	11-17	17-24	13-19	8-12	5.2-8	19.5-24.5	13-17
Mean corpuscular Hgb concentration	g/dL	×10g/L	30-36	29-34	31-37	31-34	30-36	32-36	30-36
Platelets	×105/ μ L	×1011/L	1-8	2-5	1-6	2.5-7.5	3-6	2-9	3-7
White blood cells	×103/ μ L	×109/L	4-12	11-22	6-12	4-12	4-13	6-17	5.5-19.5
Neutrophils (segmented)	% ×103/ μ L	% ×109/L	15-45 0.6-4	20-70 2-15	30-75 3-6	10-50 0.7-6.0	30-48 1.2-7.2	60-70 3-11.4	35-75 2.5-12.5
Neutrophils (band)	% ×103/ μ L	% ×109/L	0-2 0-0.12	0-4 0-0.8	0-1 0-0.1	0	드물다	0-3 0-0.3	0-3 0-0.3
Lymphocytes ×103/ μ L	% ×109/L	% 2.5-7.5	45-75 3.8-16.5	35-75 1.5-5	25-60 2-9	40-75 2-9	50-70 1-4.8	12-30 1.5-7	20-55
Monocytes ×103/ μ L	% ×109/L	% 0.025-0.85	2-7 0-1	0-10 0-0.6	1-8 0-0.75	0-6 0-0.55	0-4 0.15-1.35	3-10 0-0.85	1-4
Eosinophils ×103/ μ L	% ×109/L	% 0-2.4	2-20 0-1.5	0-15 0-0.8	1-10 0-1	0-10 0.05-0.65	1-8 0.1-0.75	2-10 0-0.75	2-12
Basophils ×103/ μ L	% ×109/L	% 0-0.2	0-2 0-0.5	0-3 0-0.3	0-3 0-0.3	0-3 0-0.12	0-1	드물다	드물다
Myeloid /erythroid ratio			0.3-1.8:1	1.2-2.2:1	0.9-3.8:1	0.8-1.7:1	0.7-1.0:1	0.75-2.4:1	0.6-3.9:1
Plasma proteins ^c	g/dL	×10g/L	6-8	06-08	6-8.5	6-7.5	6-7.5	6-7.5	6-7.5
Plasma fibrinogen	g/dL	×10g/L	0.1-0.6	0.2-0.4	0.1-0.4	0.1-0.5	0.1-0.4	0.15-0.3	0.15-0.3

공무원 휴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출산	배우자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 기타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출산일수	임신 8월이후 출산 전후(유산, 조산, 사산 포함)	90일
여성보건휴가	매생리기, 임신의 경우 정기검진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매월 1일
육아시간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 얻을 수 있음.(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1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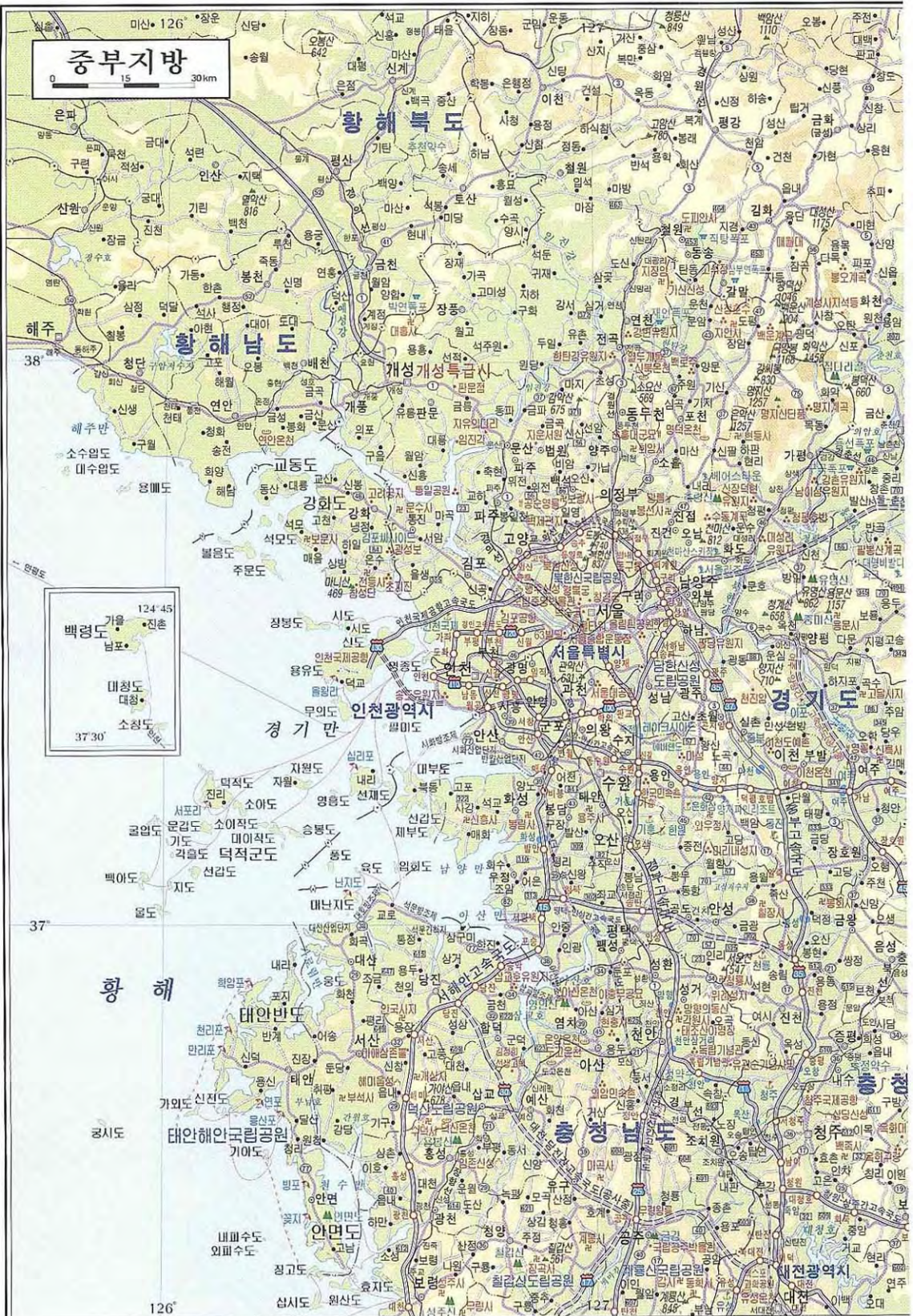
대한민국전도

0 50 100km



중부지방

0 15 30km



124 45
가을
백령도
남포
대청도
대청
소청도
37 30

황해

태안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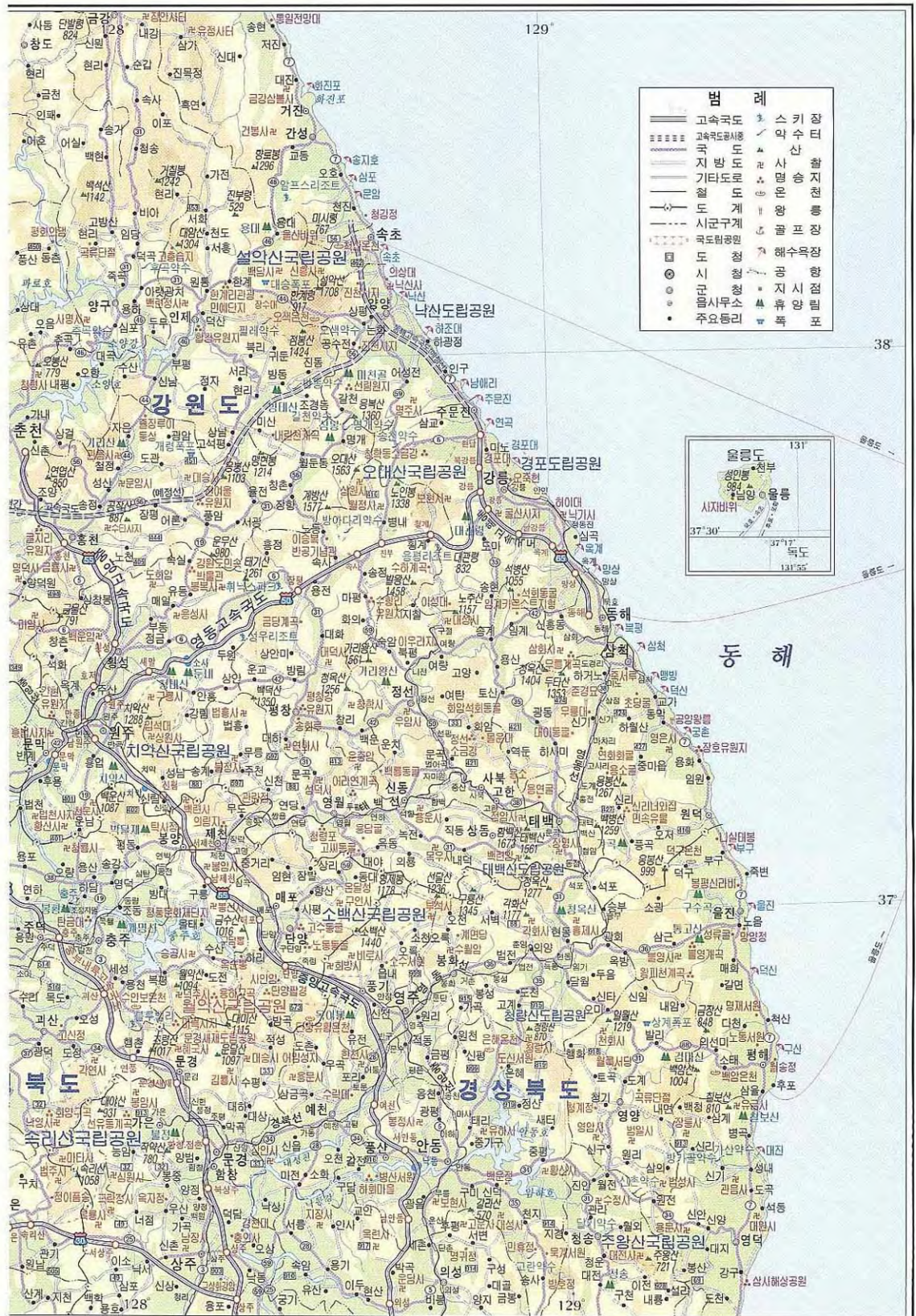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126°

127°

범례			
	고속국도		스키장
	고속도로		약수터
	국도		산
	지방도		사슴
	기타도로		은
	철도		문
	도계		천
	시군계		통
	국도협곡		계
	도청		정
	시청		장
	군청		해수욕장
	읍사무소		함
	주요도로		수
			지
			점
			포



남부지방

0 15 30km

126°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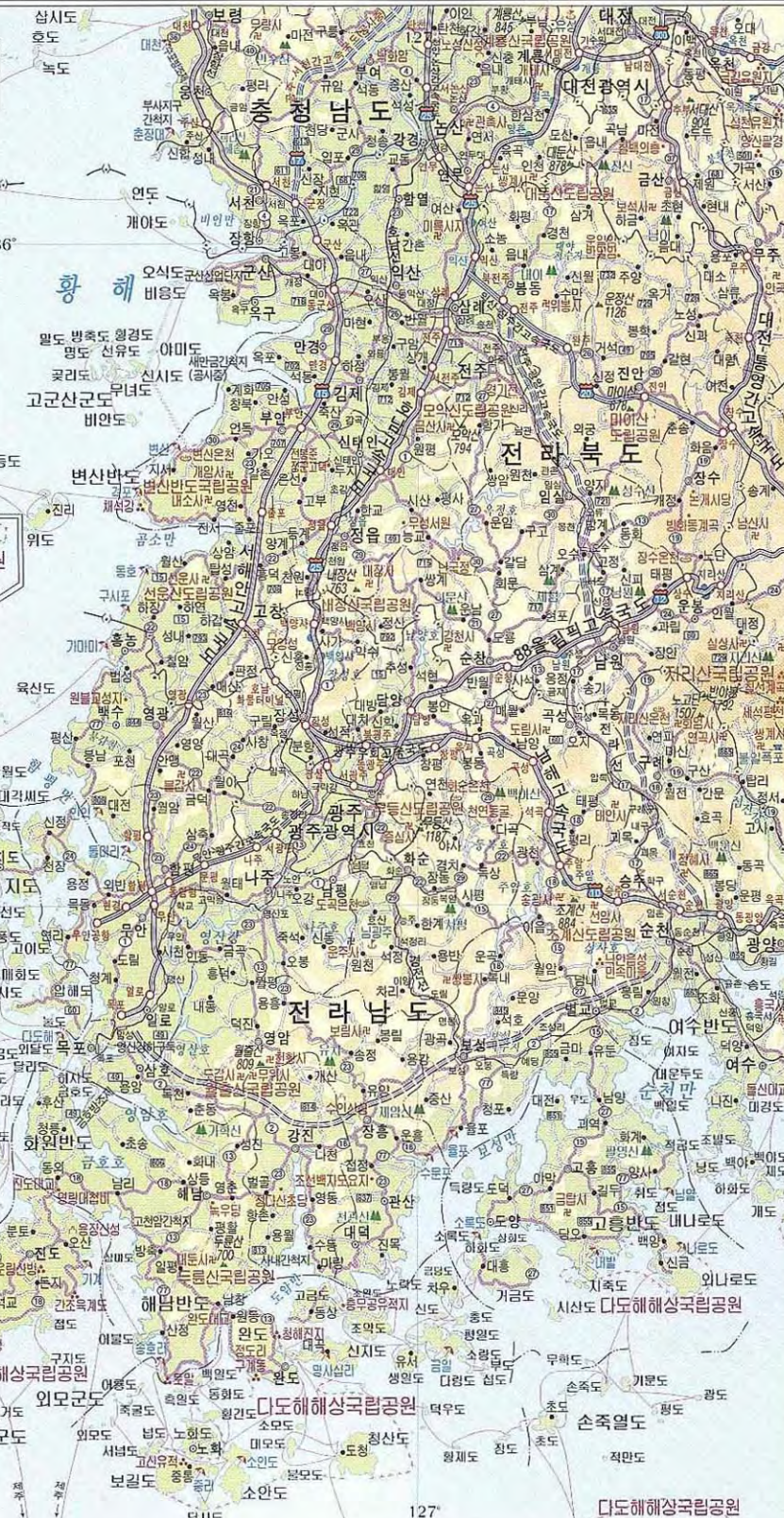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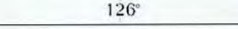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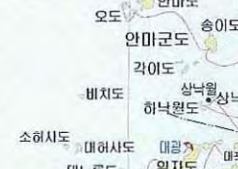
127°

충청남도

황해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도 대섬부도 상백도



128°

126°30'

남해

동해

대한해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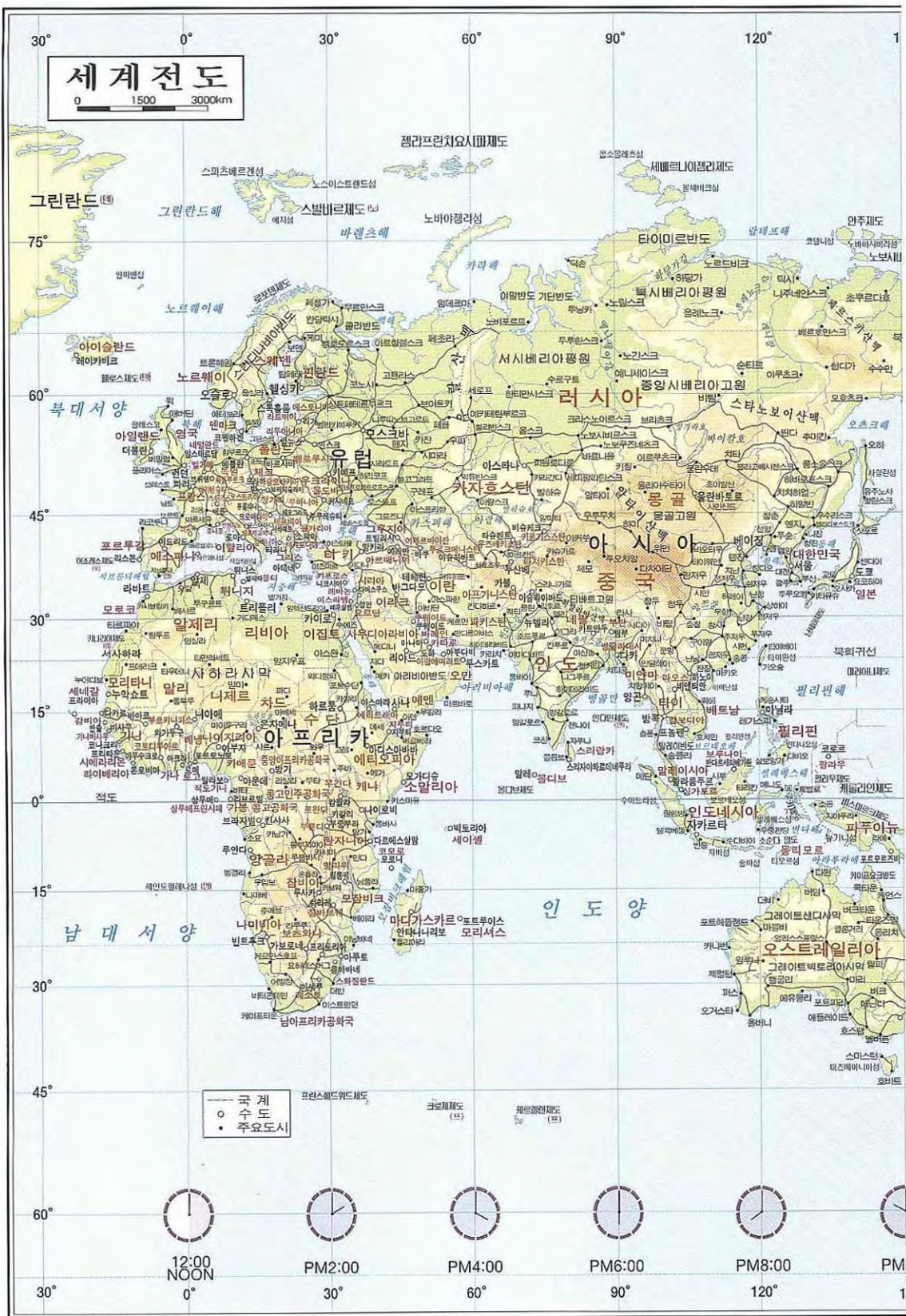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세계전도

0 1500 3000km





북극해

그린란드

북대평양

북대서양

태평양

남대평양

동시베리아해

보퍼트해

러스크해

베링해

미크로네시아

기니

멜라네시아

태즈먼해

10:00

12:00 MIDNIGHT

AM2:00

AM4:00

AM6:00

AM8:00

5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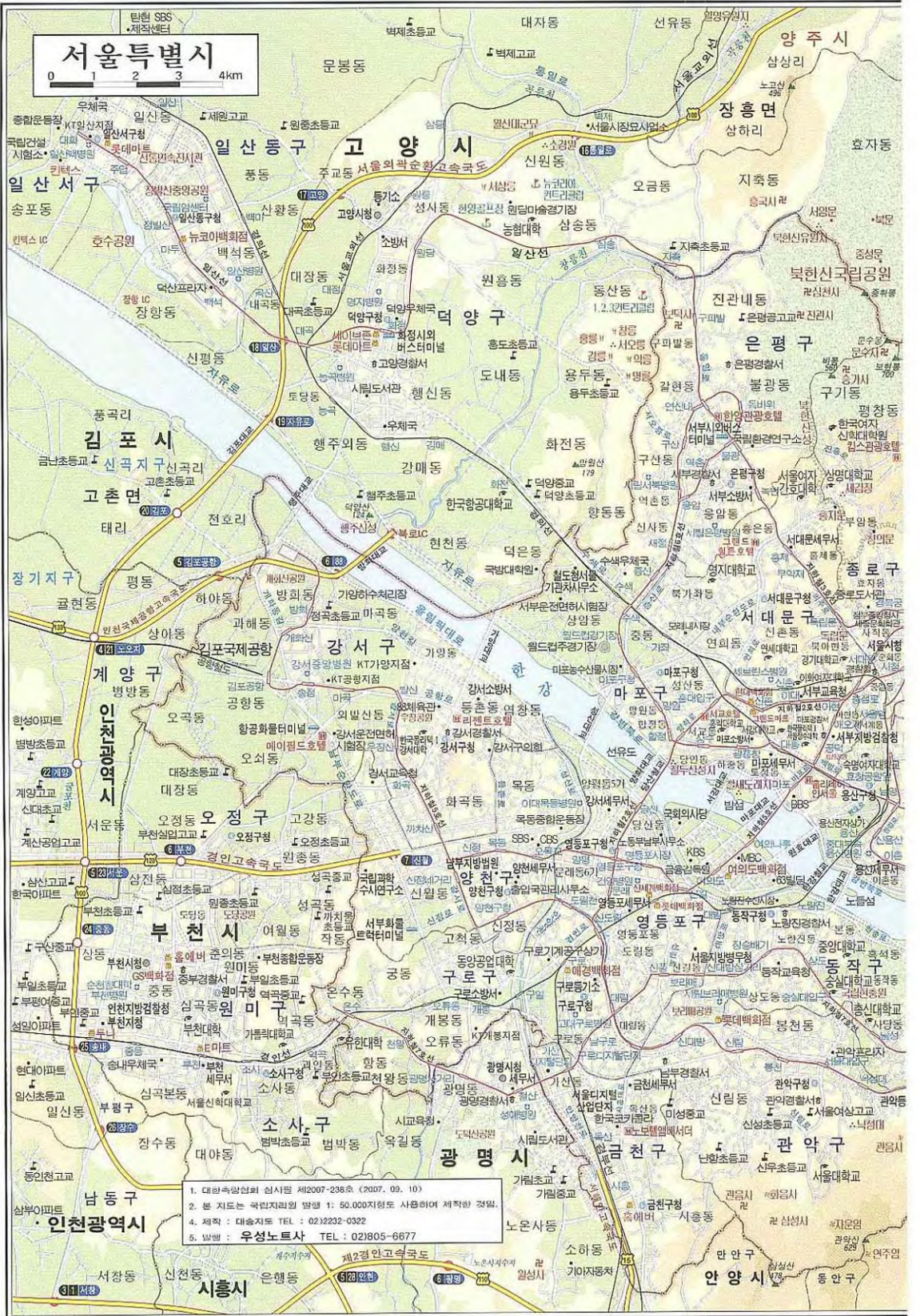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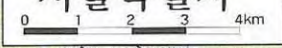
150°

120°

90°

60°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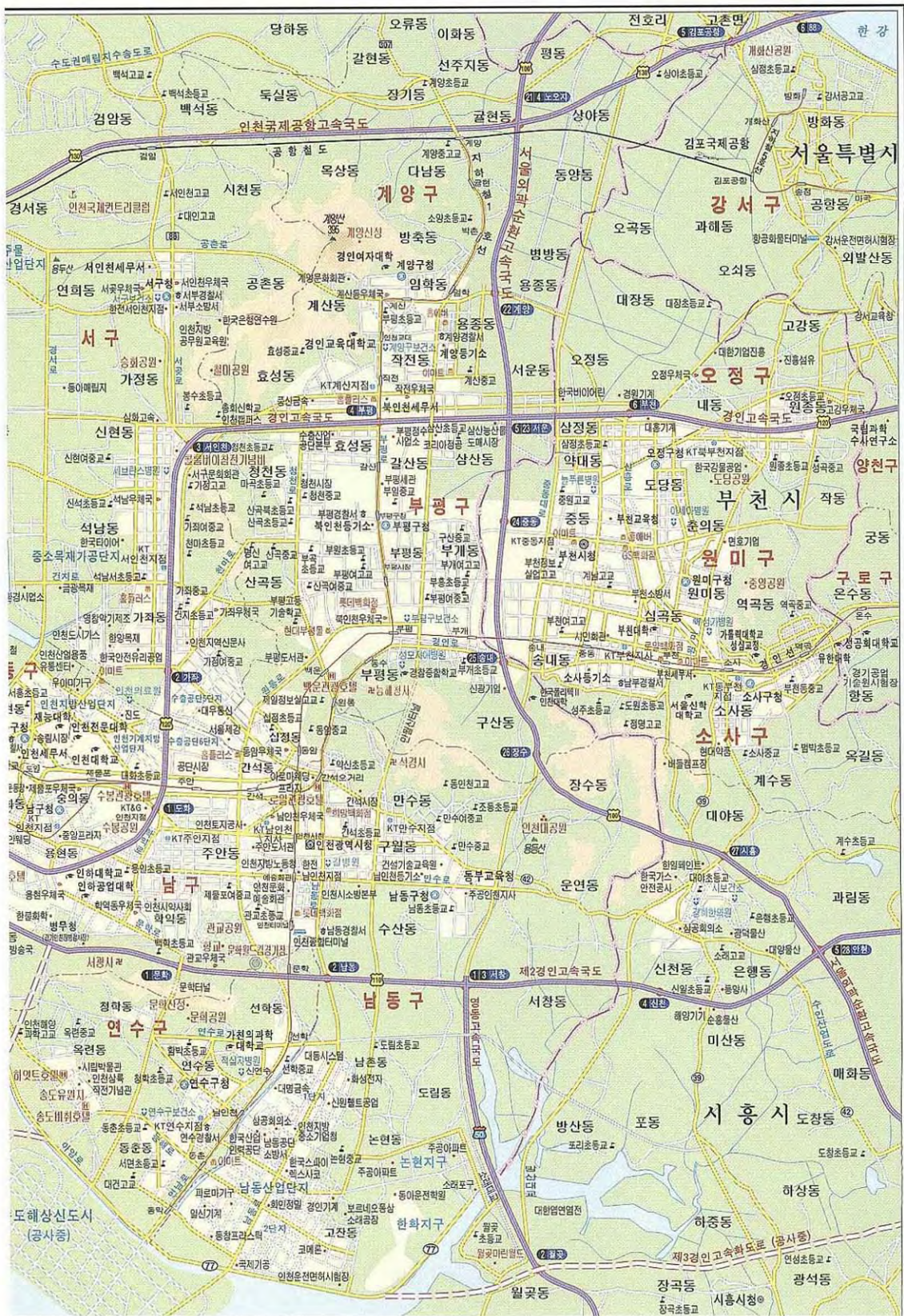


1. 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07-238호 (2007. 09. 10)
 2. 본 지도는 국립지리원 Maßstab 1: 50,000지형도 사용하여 제작한 것임.
 4. 제작 : 대송지도 TEL : 02)2232-0322
 5. 발행 : 우성노트사 TEL : 02)805-6677



범례

	고속국도		산정
	주요국도		경호병대
	기타도로		별원정교
	도로		화하교
	철도		대터교명
	지하철		사학
	특정공역시계		학교
	시군구계		지점
	읍면계		시용리
	읍성		
	공공		
	공원		
	시		
	군		
	구		
	시		
	시		
	시		



당하동

독실동

목상동

계산동

계산동

효성동

청천동

신곡동

간석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주안동

오류동

갈현동

정기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이화동

선주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계양동

평동

상아동

동양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전호리

평동

동양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고촌면

상아동

동양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개원동

상아동

동양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개원동

상아동

동양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한강

상아동

동양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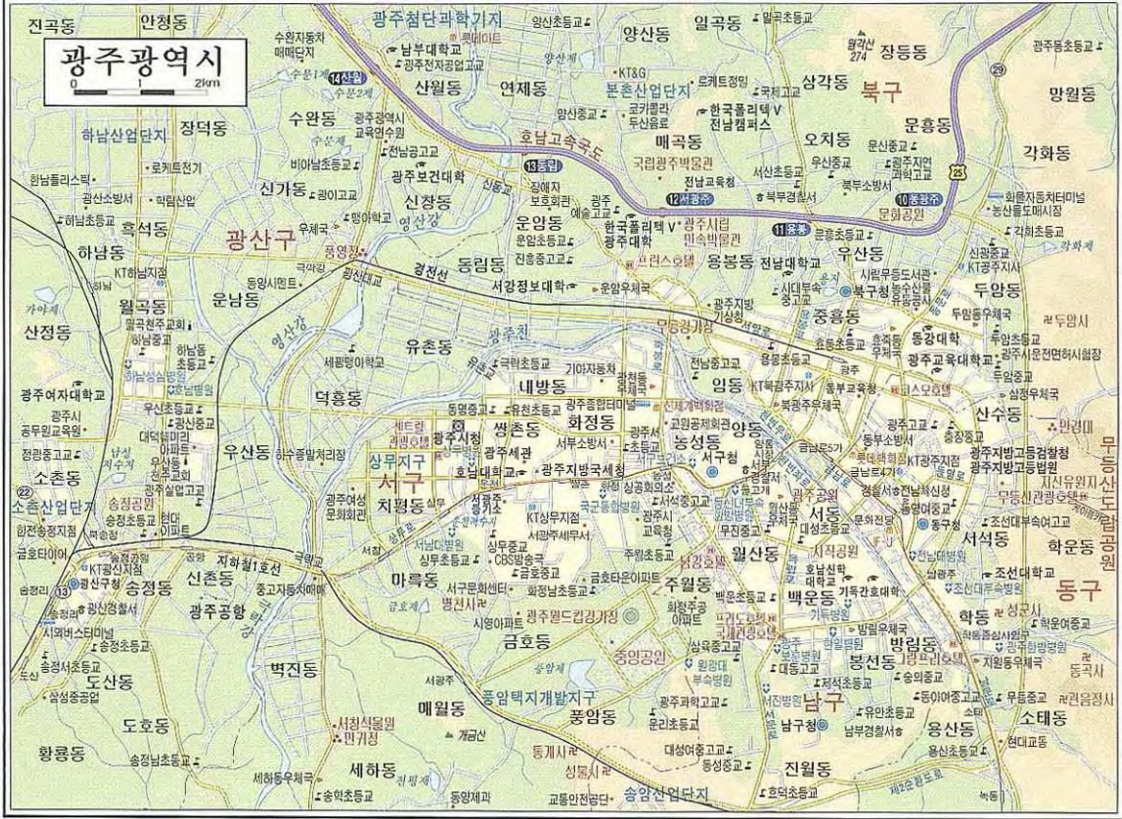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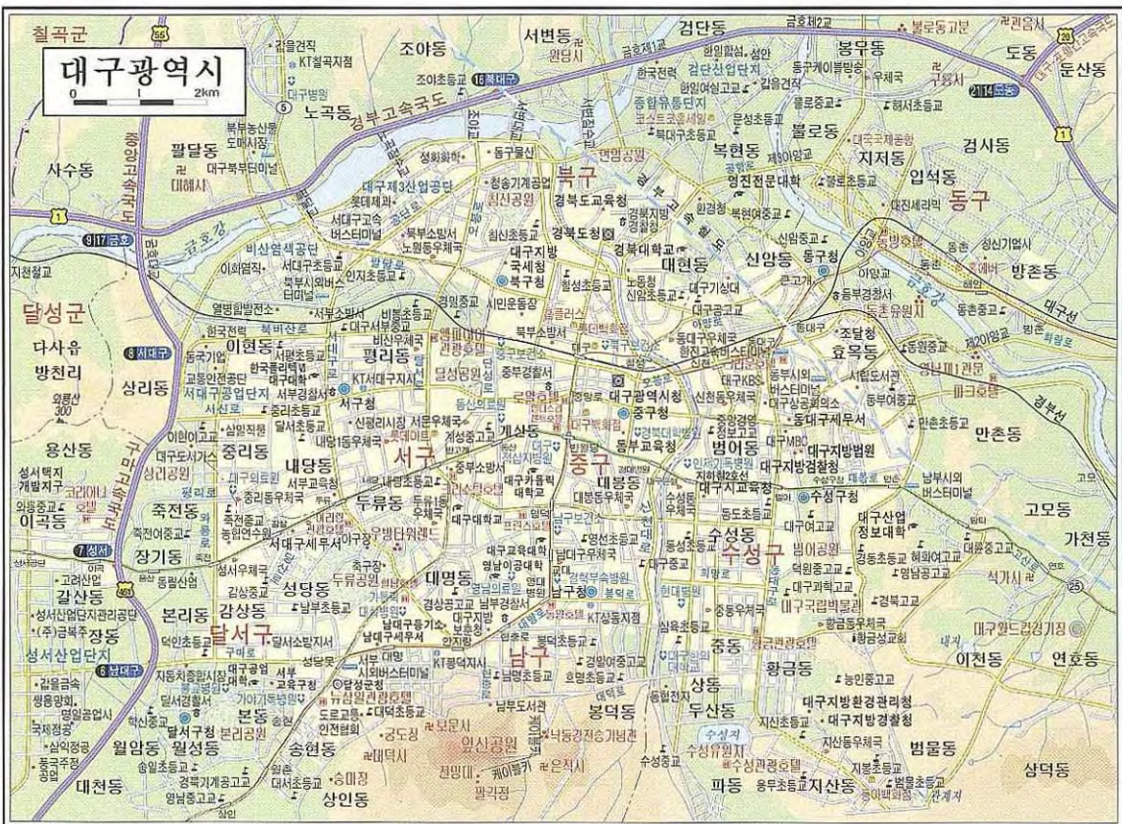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오곡동





가축질병 현장방역지도 수첩

2007년 10월 일 인쇄

2007년 10월 일 발행

발행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발행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안양6동 480)
전화) 031-467-1941 팩스) 031-467-1729

감 수 : 손찬준

편저자 : 이오수, 장재홍, 이제용, 김석재, 박수연, 류정임

인쇄처 : 건양인쇄사